

한일관계사학회 2021년 국내학술대회

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 : 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

일시 : 2021년 12월 11일(토) 오후 1~6시

방식 : ZOOM 화상회의

주최 : 한일관계사학회

후원 : 한일문화교류기금

해양 · 해역으로 본 한일관계 : 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

일시 2021년 12월 11일(토) 13:00 – 18:00

장소 ZOOM 화상회의 (주소 ID 873 6121 7216/ 암호 640727)

● 발표자료집은 학회 홈페이지(<http://hanilhis.or.kr>)를 통해 공개합니다.

13:00~13:10	개회사 및 인사말 : 김문자(회장, 상명대학교) 손승철(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제1부 주제발표		사회 : 나행주(건국대학교)
13:10~13:35	한일 역사교과서 속 고대 일본의 해역교류 담당자 서술과 그 특징 : 입당승·입송승을 중심으로	발표 : 정순일(고려대학교) 토론 : 김은정(충남대학교)
13:35~14:00	‘김보한의 왜구론’과 왜구 연구에의 제언	발표 : 윤성익(경희대학교) 토론 : 한성주(강원대학교)
14:00~14:25	조선 태조~태종대 쓰시마(對馬)·이키(壹岐)·히젠(肥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발표 : 한윤희(성균관대학교) 토론 : 한문종(전북대학교)
14:25~14:40	휴식	
제2부 주제발표		사회 : 장순순(전주대학교)
14:40~15:05	바다의 역사와 일본 근세국가론 :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발표 : 이수열(한국해양대학교) 토론 : 김연옥(육군사관학교)
15:05~15:30	한·일 간 표류민 송환과 해난구조의 법제화(1860~1960년대)	발표 : 정성일(광주여자대학교) 토론 : 현명철(서울대학교)
15:30~15:55	광복 후 한일 간 독도 논쟁의 전개 양상과 쟁점	발표 :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김수희(독도재단)
15:55~16:10	휴식	
제3부 종합토론		좌장 : 이훈(한림대학교)
16:10~18:00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18:00	폐회사	

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 : 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

▶ 목 차 ◀

제1부 주제발표

사회: 나행주(건국대학교)

- 【제1발표】 한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入唐僧·入宋僧 관련 서술과 그 특징
- | | |
|-----------------|----|
| 발표 정순일(고려대학교) | 1 |
| 토론 김은정(충남대학교) | 17 |
- 【제2발표】 ‘김보한의 왜구론’과 왜구 연구에의 제언
- | | |
|-----------------|----|
| 발표 윤성익(경희대학교) | 21 |
| 토론 한성주(강원대학교) | 49 |
- 【제3발표】 조선 태조~태종대 쓰시마(對馬)·이키(壱岐)·히젠(肥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1400년대 피로인 송환자(=일본인 통교자)의 증가 배경과 관련하여-
- | | |
|------------------|----|
| 발표 한윤희(성균관대학교) | 53 |
| 토론 한문중(전북대학교) | 69 |

제2부 주제발표

사회: 장순순(전주대학교)

- 【제4발표】 바다의 역사와 일본 근세국가론 :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 | | |
|-------------------|----|
| 발표 이수열(한국해양대학교) | 73 |
| 토론 김연옥(육군사관학교) | 93 |
- 【제5발표】 한·일간 표류민 송환과 해난구조의 법제화(1860~1960년대)
- | | |
|-------------------|-----|
| 발표 정성일(광주여자대학교) | 99 |
| 토론 현명철(서울대학교) | 129 |
- 【제6발표】 광복 후 한일 간 독도 논쟁의 전개 양상 분석
- | | |
|-------------------|-----|
| 발표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 135 |
| 토론 김수희(독도재단) | 149 |

제3부 종합토론

좌장: 이훈(한림대학교)

여 백

개회사

최근 한국 역사학계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생각할 때 ‘바다의 역사’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방법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래의 유럽중심주의와 일국사관을 비판하며 국가나 민족의 틀에서 벗어나, 사람·상품 정보가 이동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동아시아 해양·해역에 주목하는 ‘바다의 역사’는 한일관계 부분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이 분야에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해양과 해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왜구 연구와 조선시대 피로인, 표류민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 : 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라는 테마로 ‘바다의 역사’에서 벌어진 갈등과 공생 문제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6가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고대 일본의 해역 교류자는 누구였는지, 왜구론의 지금까지 연구 상황, 조선시대 피로인 및 표류민의 송환체제, 일본학계에서 바라보는 해양사·해역사 연구, 독도 논쟁 등 지역간·국가간 경계를 허무는 월경(越境), 초역성(超域性)의 문제의식, 바다로부터의 역사를 재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해역사의 새로운 단면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11일
한일관계사학회장 김문자

故 김보한 교수님 추모사

내가 김보한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2008년 1월 26일로 한겨울로 기억된다. 그 때 제2기 한일역사 공동구위원회 5차 합동회의를 오키나와 현립박물관이 있는 나하에서다. 제2기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의 주제는 왜구, 임진왜란, 통신사였는데, 공동연구원으로 왜구에 김보한, 이재범 교수, 임진왜란에 노영구 교수, 통신사에 한문종 교수와 함께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그날 김보한 교수의 발표주제는 ‘한국 내 왜구 연구의 학술사적 검토’였고, 내용은 1부에서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내에서의 연구 성과와 동향을 발표했고, 2부에서는 왜구연구를 주제별로 정리했다. 그 내용은 왜구 근거지 문제와 왜구 창궐과 소멸의 원인, 왜구 주체의 문제였다. 그야말로 왜구연구의 핵심 주제를 한국학계에서는 처음 정리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후 한국에서의 왜구 연구방향을 제시한 일종의 네비게이션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그 후 본인이 타계할 때까지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왔다고 생각된다.

귀국 후, 김보한 교수는 본격적으로 우리 한일관계사학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8년 5~6월쯤인가. 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중세의 왜구-학술성과와 고교 교과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고, 8월에 학회지 『한일관계사연구』 제30집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학회에 참석하여 2020년까지 무려 11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한일관계사연구』에 게재했다. 아마 우리 학회 회원 중에 최다 기록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회보를 검색하면 김보한 교수의 등재지논문이 총 19편이 나오는데, 그중 11편이 우리 학회지에 실렸다면 가히 학문인생의 절반 이상을 학회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런 뜻에서라도 추모학술회의의 의미를 두고 싶다.

김보한 교수와의 두 번째 추억은 2010년부터 함께한 한국연구재단의 2년간의 공동연구다. 연구주제는 ‘중근세 동아시아지역의 해륙 경계인식과 분쟁’이었다. 내가 책임연구원이었고, 강원대의 유재춘, 한성주, 신동규 교수와 민덕기, 한문종, 장순순, 김보한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2년간의 연구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일본 중국 러시아지역을 답사했다. 1차 답사가 2010년 7월에 5박 6일간 키타큐슈의 山口, 福岡, 大分, 佐賀지역, 2차 답사가 2011년 1월에 4박 5일간 北海道 전역과 아오모리, 3차 답사가 2011년 8월

에 7박 8일간 블라디보스토크부터 훈춘, 도문, 연길, 용정, 백두산, 단둥 대련까지 두만강부터 압록강까지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답사했다. 그리고 4차 답사가 2012년 1월에 4박 5일간 돛토리 시마네현 오키섬 등을 답사했다. 정말 대장정의 코스였다. 또한 인원도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항상 평균 20명이 넘었다.

김보한 교수는 주로 한문종 교수와 룸메이트를 해서 두 분이 많은 정을 쌓았는지 모르겠으나, 평소 말이 적은 두 사람이라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하다.

답사기간 중 교통편은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나는 항상 교수들에게 버스대학 강의를 시켰고, 회식할 때는 언제나 참여 인원 모두에게 1분 스피치를 시킨다. 그리고 연구가 끝나면 결과 논문과 함께 답사기를 첨가하여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때에도 경인문화사에서 한일총서 시리즈 55권, 56권으로 출간했는데, 기록을 보니, 김보한 교수는 역시 고려후기의 왜구를 강의했는데, 1차 기타큐슈 답사 때에는 『고려사』를 통해 본 왜구출몰 빈도와 왜구 발생과 주체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北海道 답사 때에는 미리 준비를 했는지 아이누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또 두만강 과 압록강 답사 때에는 녹둔도와 위화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시마네현 답사 때에는 이와미은광에 대해서 강의했다. 김교수의 관심사와 학문의 영역을 생각하면 너무 일찍 他界한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넘친다.

세 번째의 인연은 2012년 3월부터 2년간의 교학사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이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하여, 교등학교 교과과정에 한국사, 세계사 과목과는 별도로 ‘동아시아사’ 교과를 개설했다. 지금은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지만, 당시는 천재교육과 교학사 두 군데였다.

나는 집필 책임자가 되어 조법종, 한명기, 신주백, 김보한 등 7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김보한 교수는 나와 함께 ‘3단원 국제관계의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을 공동집필했다. 김교수는 주로 10세기에서 15세기의 다원적 국제관계, 일본의 무사정권, 국제질서의 재편과 왜구 등을 집필했다.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 팀은 2년간 매월 1회씩 20번 넘게 모였다. 보통 매달 마지막 토요일 2시, 마포에 있는 교학사 회의실에 모여 6시까지 격론을 벌이며 원고를 다듬었다.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아주 우수한 교과서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3년 후 교과서 개편 당시 교학사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파동에 휩쓸려 존폐의 위기에 몰리자 역사분야 교과사의 절판을 선언하여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의 집필 내용들은 타교과서에 상당부분 인용되고 있다. 김선생의 他界와 더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내가 김보한 교수와의 인연을 마무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교수는 그의 학문적 열정에 비해 아직 단행본 출간이 없다. 나와는 벌써 10년 전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오키나와 발표 때, 왜구에 관한 책 2권을 내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러나 2008년에 전임이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지, 나에게 여러 번 죄송하다고만 하다가 결국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연구영역을 보면, 전공은 일본중세사이고, 관심영역은 중세한일관계사, 왜구사, 동아시아해양사로 되어있다. 아마도 나와 2권의 저서를 약속한 것도 이 분야의 책을 내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그의 논문 12편을 모아서 현재 단행본 작업을 하고 있다. ‘중세일본과 왜구’, ‘왜구의 실체’, ‘중세일본의 왜인들’을 주제로 쓴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엮어 내년 상반기에 출판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왜구연구’에 대한 그의 학문적 열정에 답하는 우리 학회의 우정과 사랑의 증표로 삼고자 하며, 김교수의 영전에 삼가 바치고자 한다.

끝으로 김교수의 영원한 안식과 유가족의 안녕을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1일

강원대 명예교수 손승철 謹呈

제1부

【제1발표】

한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入唐僧·入宋僧 관련 서술과 그 특징

정순일(고려대학교)

-
1. 入唐僧·入宋僧에 주목하는 이유
 2.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 속의 入唐僧·入宋僧
 3. <일본사B> 교과서의 入唐僧·入宋僧 관련 서술의 특징
 4. 양국 교과서 서술의 특징 비교와 『입당오가전』 활용의 가능성

【제1발표】

한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入唐僧·入宋僧 관련 서술과 그 특징

정순일(고려대학교)

1. 入唐僧·入宋僧에 주목하는 이유

왜 이 글에서 고대 일본의 입당승(入唐僧)·입송승(入宋僧)에 주목하고자 하는지 필자의 문제의식 및 선행 연구의 동향과 관련지어 간단히 논해두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당승이란, 주로 ‘견당사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간 일본 승려를 가리킨다.¹⁾ 즉, 9세기 이후부터 동아시아 해역 세계에 등장한 사람들이다. 842년에 입당한 예운(惠運), 843년 이전에 입당한 엔슈(円修), 853년 입당한 엔진(円珍), 862년 입당한 신노(真如)와 슈에이(宗叡), 881년 이전 어느 시점에 입당한 것으로 보이는 추칸(中灌)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예운, 엔진, 슈에이는 밀교문헌 청래자를 대표하는 ‘입당 8가’에 포함되기도 한다. 입당승은 9세기 말부터 감소하며, 20~30년에 한 차례 빈도로 확인된다. 이는 일본의 조정이 승려의 입당 칙허를 내주지 않게 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같은 무렵, 당 상인의 배로 입당하여 당물(唐物)을 구입하는 입당교역사의 파견 역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조정이 일본인의 해외도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11년에 상인의 내항 빈도를 제한하는 연기제(年紀制)가 시작되었으며, 그와 같은 ‘제한 지향’이 해외에서 내항하는 국제 상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보인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입송승이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북송(960~1127년) 시기의 중국을 순례한 일본 승려를 가리킨다. 10~11세기, 오대·북송기 중국으로의 도항 칙허가 확인 내지 추측되는 사례로는, 927년 입송한 칸켄(寬建), 953년 입송한 니치엔(日延), 983년 입송한 초넨(喬然), 1003년 입송한 자쿠쇼(寂照), 1049년 입송한 케이세이(慶盛) 등을 들 수 있다. 또 초넨과 자쿠쇼의 입송과 관계가 있는 종승(從僧) 카인(嘉因, 988년 입송), 넌구(念救, 1015년 입송)도 주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유명한 조진(成尋)은 1072년에 입송한 승려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사 연구에서는 일찍부터 이국과 열도 사회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승려와 불교를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아 왔고, 그와 관련하여 방대한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다만, 이

1) 뒤에서 말하는 ‘(2)후기 구법승’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前史로서 ‘(1)전기 구법승’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와 같은 경향은 일본 학계에 국한된 것일 뿐, 입당승·입송승에 대한 한국 학계의 관심은 극히 부진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헤이안 시대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거나, 관련 기초자료의 정보(혹은 그의 공유)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상황과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2005), 정병조(2005), 김병곤(2006), 정병삼(2007), 권덕영(2007), 정병준(2011) 등 대표적인 논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학계에서는 ‘입당승’에 대한 관심이 곧 ‘西學僧’이라고도 불리던 ‘신라 구법승’ 집단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이유진(2009) 등의 연구가 웅변해주듯, 한국 학계에서 말하는 ‘일본 구법승’이란 곧 엔닌(円仁)을 지칭하는 것이다. 엔닌이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장보고와의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연구도 장보고 및 국제상인(재당 신라상인)의 교역 활동에 대해서만 집중되어왔던 경향이 있다.

한편, 일본 학계의 입당승·입송승 연구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대외관계를 중국(당·송)과 일본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중심, 한반도 도외시’의 상황이 도향승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내용의 양면에서 비판 및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장보고 연구의 연장선에 도향승 연구를 자리매김하는 방법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엔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동 시기 입당하여 구법·순례를 행한 기타 일본 승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보고와 엔닌을 동시에 상대화할 때만이 새로운 연구 시각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다소 의도적으로 엔닌 이외의 입당승에도 유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도해승과 관련한 기초자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시도해야 한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한국 학계에서는 오로지 『입당구법순례행기』만을 읽어왔으나, 고대 일본 승려가 남긴 기록물은 그 이외에도 다수 존재한다. 일본 학계의 연구성과를 참조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다양한 입당승·입송승 텍스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의 고전적 설명 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일본의 입당승·입송승 연구는 단순히 양국 관계만을 다루는 게 아니다. 동아시아 해역 세계에서 다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의 전체상에 유의하면서 도해승 연구에 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의 일본사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모색함에 있어서도 입당승·입송승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사 연구 본연의 목적이, 고립된 열도사회의 역사만을 탐구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묻는다면, 대부분 ‘열린 체계로서의 일본사’를 연구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와 관련 있는 것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패턴도 지양해야 한다. 한반도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대일본, 대중국의 양자 관계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를 조감하는 자세로 일본의 국제관계에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적 연구 시각의 확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고대 일본의 도항승을 시기별·성격별로 나누어보자면, (1)전기 구법승의 시대, (2)후기 구법승의 시대, (3)순례승의 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 구분의 전체에는 (1)·(2)의 ‘구법’에서 (3)의 ‘순례’로 전환하였다는 인식이 있다. 고대 일본불교의 시대를 가르는 전환이다. 견수사나 견당사와 함께 도향한 학문승은, 국가의 목적을 위임받아 ‘구법’하였다. 이 단계의 불교는 동아시아 정치 세계에서 적출된 열도의 고대국가가 세계를 인식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그곳과 관계 맺기 위한 사상 상의 매개이기도 했다. 고대 국가의 권력 핵심부는 중국 불교의 이식을 피하고, 이어서 그 모방 재현을 과제로 하는 적극성도 가지고 있었다. ‘구법’이란, 도향승들에게 부여된 국가 과제였던 것이다.

한편, 국서(외교문서)를 휴대한 사절단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승려만 도향하는 ‘순례’는 중국불교의 모방 재현이라는 과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렇다고는 해도, 조정으로부터 도향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고, 상륙 후에는 상대국의 행정 감독 하에서 행동해야 했다. 그 점에서 순례승에게는 본인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늘 따라다닌다고 할 수 있다.

(1)·(2)의 ‘구법’에서 (3)‘순례’로의 전환 못지않게, (1)의 ‘전기 구법승의 시대’에서 (2)의 ‘후기 구법승의 시대’로의 전환도 중요하다. 전자가 공식 사절에 동반하는 형태였다면, 후자는 9세기 이후 국제상인의 배를 이용하여 도향하였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부분은 후기 구법승의 시대가 9세기 단계에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필자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일관되게 검토해온 ‘9세기의 획기성’과 궤를 함께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9세기란, ‘긴 9세기(the long 9th century)’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력 770년대에서 930년 무렵까지를 가리키며, 일본의 연호로는 호키(寶龜)연간에서 엔초(延長)연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하한이 되는 930년 무렵은 한반도에서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로 교체되는 시기(935년)이며, 북방에서는 발해가 거란에 의해 무너진 시기(926년)이기도 하다. 또 중국에서는 당의 멸망(907년)부터 북송의 성립(960년)까지 5대 10국이 흥망한 변혁기이기도 하다. 한편, 상한이 되는 770년대도 동아시아 제국이 정치외교·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은 획기이다. 단순히 ‘700년대(8세기)’ 혹은 ‘800년대(9세기)’가 아니라-‘긴 9세기’와 같이- 그다지 맺고 끊음이 좋지 않은 기간을 하나의 분석 틀로 삼는 것은 이 시기가 가지는 동질적인 특징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10세기 이후 역사 전개에 원형을 이루는 사상(事象)이 바로 이 시기부터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중핵은 사람들의 활발한 국제이동(특히 해상이동)이다.²⁾ 물론 사람이 국경을 넘는 행위 자체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확인되며, 전혀 새로운 일이라 말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다만 왕권 이외의 세력·집단·개인이 주변 제국을 매우 빈번하게 왕래한 사례는 이전에 드물었던 새로운 국면임에 틀림없고, 이것이야말로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긴 9세기’를 다른 시대와 구별시켜주는 요소인 것이다.

사실 ‘9세기’는 열도 사회 내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사사키 케

2) 그런 의미에서 ‘(2)후기 구법승의 시대’와 ‘(3)순례승의 시대’는 단절(변화)한다기보다 연속(지속)한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스케(2014)는 최근 연구에서 ‘9세기’를 어떻게 파악하는가가 일본역사 전개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대의 최종단계, 즉 율령국가 지배가 쇠퇴하고, 지역사회에서 중세를 향한 태동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해당 시기가 가지는 고대적 성격을 조금 더 부각시키느냐, 중세적 성격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고대-중세 이행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조명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안팎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9세기’에 들어 사람들의 해상왕래가 활발해지자 그에 수반하여 등장하는 것이 (2)후기 구법승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입당승의 출현은 사람들의 활발한 국제이동(해상이동)이 전제된 문화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중요시하는 또 한 가지는 ‘입당승·입송승’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적 성격이다. 기본적으로 ‘입당승·입송승’이라 함은 일본열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승려를 가리키지만 ‘열도사회에서 외부세계로’라는 일방향성에 국한된 사람의 이동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도향승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외부세계에서 열도사회로’ 이동하는 사람·물품·정보·사상 등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때 사람·물품·정보·사상의 이동 경로 및 발착지점을 선으로 연결해나가다 보면 하나의 지역세계가 그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동아시아’의 범위와 일치하게 된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동아시아’ 범위를 훨씬 능가하는 광역의 문화현상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입당승·입송승에 주목한다는 것은 닫힌 체제로서의 일본고대사가 아니라 열린 체제로서의 동아시아사를 지향한다는 관점 및 자세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한국, 일본 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에 나타난 입당승(入唐僧)·입송승(入宋僧)을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역교류의 담당자로서 이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일본의 대외교류 관련해서는 견당사의 활약과 그로 인한 대륙 문물의 수입이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일본 고유의 ‘국풍문화’가 성립하였다는 기술 방식이 채택되어왔다. 그러다 보니 ‘사신’에 의한 교류가 강조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신 이외에도 다양한 교류의 담당자들이 존재해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9~14세기는 일본역사 상 ‘사신 왕래의 공백기’로 해당 시기는 승려와 상인 등 ‘非사신’ 집단 및 개인에 의해 교류가 추동된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승려 집단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점은 고대 일본의 해역교류사를 바라보던 종래의 연구 태도에 새로운 시점을 제공해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 속의 입당승(入唐僧)·입송승(入宋僧) 관련 서술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고등학교 <일본사B> 교과서의 입당승·입송승 서술이 가지는 특징을 지적한다. 끝으로, 양국 교과서 서술의 특징을 비교 검토하고, 다양한 승전(僧傳), 그 가운데에서도 『입당오가전』 활용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2.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 속의 入唐僧·入宋僧

(1) 〈동아시아사〉 교과서 서술 분석

	견당사	입당승	입송승	국풍문화	비고
금성출판사	○	○ (엔닌)	○ (송 상인을 따라 송으로 건너가 교류한 일본 승려들)	○	견당사 폐지
미래엔	○	○ (사이초, 구카이, 엔닌)	○ (일본은 불교 승려를 통해 송과 교류)	○	견당사 파견 중지
비상교육	○	○ (엔닌)	○ (상인과 승려를 통한 송과의 경제적·문화적 관계는 유지)	×	견당사 파견 중지
천재교육	○	○ (엔닌)	×	×	견당사 파견 중지

-견당사에 ‘사신’뿐만 아니라 ‘유학생’과 ‘승려(유학승)’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금성, 66쪽; 미래엔, 46쪽) 일본인 아베노 나카마로가 당의 과거에 합격한 후 안남 도호부에서 활동한 것을 특기하고 있다.(금성, 67쪽; 비상, 47쪽)

-당 승려 ‘감진’이 일본에 계율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데,(금성, 44쪽; 미래엔, 74쪽; 비상, 75쪽; 천재, 74~75쪽) 중국인이 일본인들에게 계율 등 신불교의 핵심 요소를 전파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일본의 불교 수용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양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은연중에 주체적이고 못한 일본(인), 나아가 남들이 가져다주는, 또는 외부인들이 심어주는 불교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당승 엔닌이 최압아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금성, 67쪽) 단, 이때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과의 관련성이라든가(금성, 66쪽), 재당 신라인의 조력을 받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금성, 67쪽; 비상, 47쪽) 이는 신라 승려 혜초(704~787)가 당으로 건너가 광저우에서 남인도 출신의 승려 금강지로부터 밀교를 배웠다는 식의 진취적 기상을 드러내는 방식(비상, 75쪽; 천재, 75쪽)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즉, 〈동아시아사〉

교과서 전반에 걸쳐서 일본 승려 엔닌은 신라 장보고의 도움을 받고, 일본의 불교는 당 승려 감진에 의해 발전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신라 승려 혜초는 스스로 뱃길로 머나먼 구법 순례 여행길에 올랐음이 강조되고 있다.

- 9세기 말 견당사 폐지되어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무역을 통한 교류는 송 상인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언급하고, 일본 승려들은 이들(송 상인)을 따라 송으로 건너가 교류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금성, 73쪽)

- “승려는 국적을 따지지 않는 국제인”(천재, 74쪽)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승려들은 종교인일 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이자 기술자”(미래엔, 74쪽)라고 서술하였다. 승려들이 불교를 배우거나 불경을 구하려고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각국 간의 인적, 지적 교류가 활발해진 것(천재, 74쪽)이라고 하며, 승려들은 동아시아 각지를 넘나들면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미래엔, 74쪽)이다.

- “헤이안 시대에 접어든 이후 점차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교류를 단절하였다”(미래 48쪽)와 같이 헤이안 시대에는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2) 〈세계사〉 교과서 서술 분석

	견당사	입당승	입송승	국풍문화	비고
금성출판사	○	×	×	○	견당사 폐지 (단, 일송 간의 민간 무역을 언급)
미래엔	○	×	×	○	견당사 폐지
비상교육	○	×	×	○	견당사 파견 중지 (단, 송의 동전 유입을 언급)
천재교육	○	×	×	○	견당사 파견 중지

- 견당사에 ‘사신’뿐만 아니라 ‘유학생’과 ‘승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금성, 46쪽; 천재, 45쪽)

- 견당사를 통해 대륙 문물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특기하고 있다.(금성 46쪽; 미래엔, 43쪽; 천재, 45쪽)

-당 승려 ‘감진’이 일본에 계율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서술함.(금성, 44쪽)

-‘견당사’와 ‘국풍문화’를 학습 요소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양자를 ‘9세기 말 견당사 폐지’가 ‘국풍 문화의 탄생(발달)’로 이어졌다는 인과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금성, 46쪽; 미래엔, 43쪽; 비상, 47쪽; 천재, 46쪽)

- 다만, 견당사 폐지 이후 일본이 중국과 정식 국교를 맺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민간 무역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 송의 동전이 일본으로 대량 유입되어 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다.(금성, 56쪽)

- 미래엔의 경우, 〈송 대 수공업과 해상 무역의 발달〉을 논하면서도 송-일본 간 교류 양상은 전혀 언급이 없다.(미래엔, 48쪽) 일부 교과서는 〈송 대의 대외 교역〉을 보여주는 지도를 게재하여 일본과 교류한 사실과 교역 물품을 표시하고 있다.(미래엔, 48쪽; 비상, 55쪽)

-입당승, 입송승에 대한 직접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다.(금성, 미래엔, 비상, 천재)

3. 〈일본사B〉 교과서의 入唐僧·入宋僧 관련 서술

- 〈일본사B〉 교과서 서술 분석

	견당사	입당승	입송승	국풍문화	비고
도쿄서적 〈신선 일본사B〉	○ (견당사 파견 계획 정지)	○ (사이초, 구카이)	×	○ (‘후지와라 문화’ 병기)	
짓쿄출판 〈고교 일본사B〉(신정판)	○ (견당사 정지)	○ (사이초, 구카이)	○ (상인의 알선으로 당, 송에 유학하는 승려)	○ (가나의 발명과 연동시켜 문화의 국풍화 설명)	
짓쿄출판 〈일본사B〉(신정판)	○ (견당사 정지)	○ (사이초[전교 대사], 구카이[홍법 대사])	○ (초넨, 조진)	○ (가나 문자의 역할 강조)	
시미즈서원 〈고등학교〉	○ (견당사)	○ (사이초[전교	×	○ (‘후지와라	집필진=아라노

일본사B>(신정판)	정지/중지/중단)	대사], 구카이[홍법 대사], 엔닌, 엔친)		문화' 병기)	야스노리, 무라이 쇼스케, 가토 토모야스 등
야마카와 출판사 <고교일본사>(개정판)	○ (견당사 파견 중지)	○ (사이초, 구카이, 엔닌, 엔친)	× (단, 송상인의 내향과 일송무역 활발을 언급)	○ (가나의 발달을 가지고 문화의 국풍화를 설명)	
야마카와 출판사 <신일본사>(개정판)	○ (견당사 중지)	○ (사이초, 구카이, 엔닌, 엔친)	○ (초넨)	○ (중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문화라는 인식)	
야마카와 출판사 <상설 일본사>(개정판)	○ (견당사 파견 중지)	○ (사이초, 구카이, 엔닌, 엔친)	○ (초넨, 조진)	○ (국제관계 서술과 모순)	
메이세이샤 <최신 일본사>	○ (견당사 중지)	○ (사이초, 구카이, 단, 동밀/태밀 그리고 엔닌, 엔친에 대한 주석 상세)	○ (송의 상선으로 승려가 구법을 위해 입승)	○ (이웃 나라와의 정식 외교 관계 끊어진 결과로 서술)	

- 입당승 관련해서는 <고닌-조간 문화>에 꽃피운 밀교. 전기 구법승에 해당하는 사이초, 구카이가 서술 내용의 중심이 되고 있다.(모든 교과서) 후기 구법승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나오는 경우 사이초의 제자로서 엔닌, 엔친 정도가 다루어진다.(예를 들어, 시미즈, 38쪽 등) 입당승 관련 자료에 대해서 상술하는 일이 없는데, 1종의 경우,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뿐 아니라, 엔친의 <행력기>와 그 초본에 해당하는 <행력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메이세이샤, 53쪽)

- ‘국풍문화’에 대해서는 <국풍문화를 낳은 동아시아의 변동>이라는 코너를 따로 설정하여 단순히 “견당사의 중단에 의해 동아시아 세계와 단절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동아시아 세계 전체의 동향과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시미즈, 35쪽)가 있음을 힘주어 서술하고 있다.또,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에서는 종래의 중국 문화의 모방에서

벗어나, 각 민족의 개성에 맞는 문화로 다시 만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시미즈, 42쪽)고 하며, 일본뿐 아니라 거란, 서하(탕구트), 여진 등에서도 독자의 문자가 고안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무렵 나타난 〈문화의 국풍화〉가 지니는 보편성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반면 일부 교과서이기는 하지만 문화의 국풍화, 국풍문화라는 설명이 앞의 〈국제관계의 변화〉 서술과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상설, 72쪽) 즉 대륙문화, 이 국문화의 일본 유입이 사실상 끊어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당사 파견 중지’라고 하는 시점(위에서 말하는 9세기 후반~10세기)을 획기로 하여 마치 외부의 문화 요소가 들어오지 않게 된 것처럼 논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같은 교과서 내에서 모순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 〈헤이안 초기의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당과 신라 상인에 의한 민간무역”이 활발화하였음을 지적하고, “규슈에서 국사를 역임한 중앙 관인과 군령 등 지방호족이 국가의 틀을 넘어 신라와의 관계를 심화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다는 사례를 들어, 9세기 당시 일본의 중앙 권력이 지니고 있던 〈두려움(畏怖, 외포)〉이 신라를 의식한 배외적, 폐쇄적 관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시미즈, 39쪽)

- “일본인의 도향은 율(律)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으나 천태산과 오대산으로의 순례를 목적으로 하는 승려에게는 허락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10세기 말 초넌(938~1016), 11세기 중엽의 조진(1011~1081) 등과 같이 송 상인의 배를 이용하여 대륙에 건너가 송의 문물을 일본으로 가져오는 승려도 있었다”고 하며, 입송승에 대한 서술을 중국 방문의 목적(천태산, 오대산 순례), 방문의 시기(각각 10세기 말, 11세기 중엽), 방문의 수단(송 상인의 배) 등으로 나누어 비교적 상세히 하고 있다. 나아가, 입송승 초넌에 대해서는, “오월국, 송과의 통교 가운데 중국의 천태산이 일본의 천태종과 교류를 재개하여 정토교를 전하였고, 983년에 도송하여 송의 태종을 알현한 도다이지(동대사) 승려 초넌(938~1016)은 중국의 성지 오대산을 순례하고 일본에 송판 대장경과 석가여래상(현재는 교토의 세이료지=청량사에 안치됨)을 가지고 돌아오는 등, 불교계에서도 교류는 컸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교과서도 존재한다.(신일본사, 73쪽)

- “당시의 승려는 종교자일뿐 아니라, 최신의 문명을 익힌 일류 지식인”이라 하여 최신 정보의 전달자, 문명 창달자로서의 면모에 착안하고 있다. (상설, 56쪽)

- 일본의 역사교과서라고 해서 모두 입당승, 입송승 관련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입당승에 대해 기술하더라도 전기 구법승에 해당하는 사이초, 구카이가 중심이 되며, 후기 구법승은 8종 가운데 5종에만 제한적으로 소개된다. 또한, 입송승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8종 가운데 3종이며, 다른 3종에는 아예 입송승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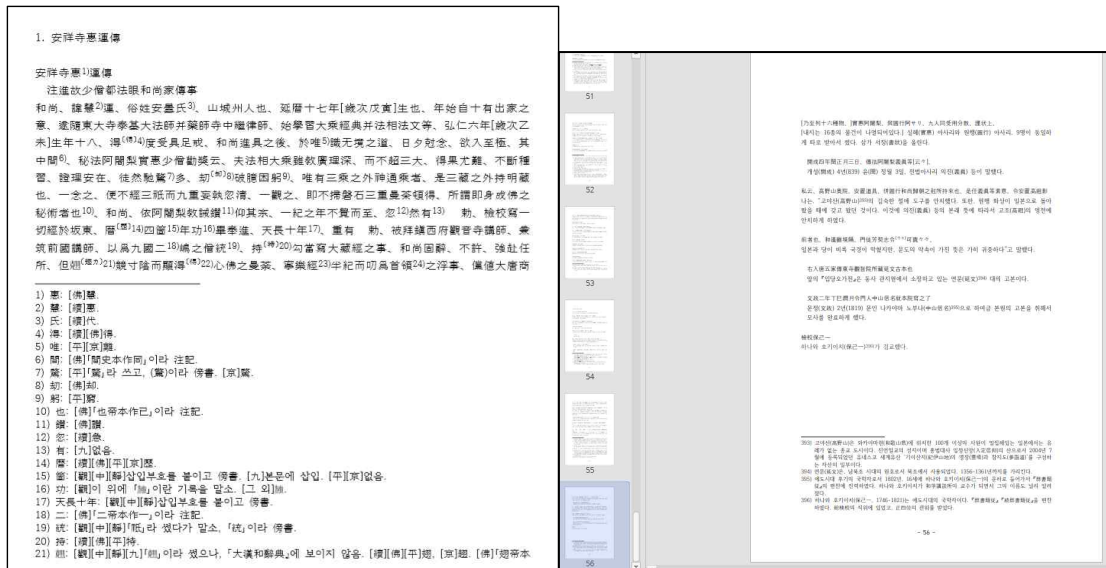
런 기술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기 구법승, 후기 구법승, 순례승의 3분법에서 전기 구법승만이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국가’ 주도의 파견이자, 왕권 차원의 사업이었던 9세기 전반까지의 입당승가 가지는 중요도가 높게 평가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양국 교과서 서술의 특징 비교와 『입당오가전』 활용의 가능성

이번 글에서는 양자를 비교하여 분석, 고찰하는 것은 생략하고, 〈입당오가전〉 활용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입당오가전』은 헤이안 전기에 입당한 밀교 승려의 전기집이다. 교토에 있는 동사(東寺) 관지원(觀智院) 승려 현보가 1357년 무렵 편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書名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1) 「安祥寺惠運傳」은 惠運이 감록한 「安祥寺伽藍緣起資財帳」을 바탕으로 901년에 찬진한 것이다. (2) 「禪林寺僧正傳」은 『일본삼대실록』 元慶8年(884)3月26日조에 보이는 宗叡傳에 해당한다. (3) 「小栗栖律師傳」은 『속일본후기』의 常曉 관계기사와 「入唐根本大師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真如親王入唐略記」는 『일본삼대실록』 元慶5年(881)10月13日조의 真如傳과 입당에 동행한 伊勢興房의 頭陀親王入唐略記 등으로 이루어진다. (5) 「靈巖寺和尚傳」은 円行의 略傳이다.

필자는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입당오가전』을 공동의 텍스트로 하여 정기적으로 강독을 실시해왔다. 그 성과의 일부로 사본의 검토, 번각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제 사본을 비교 검토하여 교정 본문을 확정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해석 및 주석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연구 논문집의 부록 형태로 출판을 앞두고 있다.



〈입당오가전(에운전)의 교정 본문과 역주 이미지〉

『입당오가전』역주 파일 이미지: 200자 원고지 515매(약 8800자 분량)

前述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를 비교해보는 한, 한국 학계(교육계)의 입당승, 입송승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깊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참고할 만한 기초 연구 및 공구서가 충분치 않은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를 비롯한 공동연구진이 참여한 『입당오가전』 역주가 공간되면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국한된 중국을 방문한 일본의 구법승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조금은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 추찰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래에 서술하는 것과 같이 고대 동아시아 해역의 교통로 구명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입당오가전』 ‘에운전’, ‘지증대사(엔친)전’, ‘두타친왕입당략기’에는 입당승의 항로 이용 실태를 보여주는 기록이 확인된다. ‘에운전’에 의하면, 입당승 에운은 842년 당상인 이처인의 배를 타고 하카타를 출항하여 히젠국 마쓰라군 오지카시마의 나루우라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船主 이처인은 그곳에서 배를 새로 만들어 大洋海(=동중국해)로 출항하였다. 그 후, 당에서 5년간의 구법순례를 마친 에운은 847년 6월 21일, 장우신 및 원정 등의 배로 귀국길에 올랐는데 그 때 도착한 항구 또한 오지카시마의 나루우라였다. 853년에 입당한 엔친은 그 이전부터 일본에 체재하고 있던 ‘대당국상인 흠량휘’의 교관선에 편승하여 당으로 향하였다. 그도 치카노시마 나루우라를 경유하여 갔다고 나온다. 귀국길에는 마쓰라군의 미미라쿠에 도착하였는데, 이 또한 고토 열도(五島列島)의 한 지역이다. 신노친왕의 행적을 통해서도 치카노시마, 즉 오늘날의 고토 열도가 하나의 기착지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고토 열도가 해상 교통로 상에서 확보하고 있는 일정한 지위를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고토 열도 경유 항로는 8세기 단계부터 활용되다가 9세기에 들어서 해역교류의 중핵이 되었으며, 사신, 승려, 상인 등 다양한 교류의 담당자가 왕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밝혀주는 것도 대외 교통로로서의 고토 경유 루트가 지니고 있는 의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入唐八家の 請來經典과 太元帥法으로 대표되는 밀교 수법의 상관성에 대한 해명에도 기여할 수 있다.

‘入唐八家’란 고대일본으로 밀교를 청래한 대표적인 승려 8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이초(最澄), 구카이(空海), 조교(常暁), 엔교(円行), 엔닌(円仁), 에운(惠運), 엔친(円珍), 슈에이(宗叡)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당에서 ‘구법순례’한 행적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왔던 부분이지만, 이 승려들이 일본으로 장래한 물품 또한 주목되는 대목이다. ‘조교화상 청래목록’을 통해서는 삼론종, 율종, 진언종, 유마경, 반야경 관계의 경전 등 부수, 권수를 알 수 있다. 그 이외의 7명도 ‘청래목록’을 모두 남기고 있어, 입당승이 귀국 시에 어떠한 물품을 열도 사회로 반입시켰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

나아가 ‘입당팔가’의 청래경전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태원수법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다. 태원수법은 입당승 조교에 의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구카이가 그 불법의 의례를 가지고 귀국

[참고문헌]

- 김상현, 「7·8세기 海東求法僧들의 중국에서의 活動과 意義 - 東亞細亞佛教의 形成과 發展에 寄與한 海東高僧을 中心으로」 (『불교연구』 23, 2005년)
- 정병조, 「求法僧 研究의 意義와 課題」 (『불교연구』 23, 2005년)
- 김병곤, 「新羅 下代 求法僧들의 行蹟과 實狀 - 新羅 中古期 및 中代 求法僧과의 比較 考察」 (『불교연구』 24, 2006년)
- 정병삼, 「신라 구법승의 구법과 전도 - 圓測과 義相, 無相과 道義를 중심으로」 (『불교연구』 27, 2007년)
- 권덕영, 「신라 ‘西化’ 구법승과 그 사회」 (『정신문화연구』 30-2, 2007년)
- 정병준, 「당(唐), 신라(新羅) 교류사(交流史)에 서 본 신라구법승」 (『중국사연구』 75, 2011년)
- 이유진, 「唐代 求法僧의 숙박시설 - 円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22, 2009년)
- 大塚紀弘, 『日宋貿易と仏教文化』 (吉川弘文館, 2017년)
- 上川通夫, 「入唐求法僧と入宋巡礼僧」 (『日本の対外関係3 通交・通商圏の拡大』 吉川弘文館, 2010년)
- 上川通夫, 「寂照入宋と摂関期仏教の転換」 (『アジア遊学134- 東アジアをめぐる金属工芸-』 勉誠出版, 2010년)
- 河野保博, 「日本古代における入唐僧の求法・巡礼-東アジア国際交流の概観と一側面-」 (『역사와 경계』 70, 2009년)
- 山内晋次, 「東アジア海域論」 (『岩波講座日本歴史20 地域論<テーマ卷1>』 岩波書店, 2014년)
- 河内春人, 「入唐僧と海外情報」 (『専修大学 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 3, 2009년)
- 手島崇裕, 「入宋僧と三国世界観-その言動における天竺と五臺山-」 (『歴史の理論と教育』 129・130, 2008년)
- 鈴木靖民, 「入唐僧円仁に関する新資料の出現-法王寺釈迦舍利蔵誌-」 (『日本歴史』 750, 2010년)
- 鈴木靖民編, 『円仁とその時代』 (高志書院, 2009년)
- 石井正敏, 「入宋巡礼僧」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V 自意識と相互理解』 東京大学出版会, 1993년)
- 佐伯有清 『円仁』 (吉川弘文館, 1989년)
- 佐伯有清, 『円珍』 (吉川弘文館, 1990년)
- 佐伯有清, 『悲運の遣唐使-円載の数奇な生涯-』 (吉川弘文館, 1999년)
- 佐伯有清, 『最後の遣唐使』 (講談社学術文庫, 2007년)
- 杉本直治郎, 『真如親王伝研究』 (吉川弘文館, 1965년)

- 東野治之, 『遣唐使』(岩波書店, 2007年)
- 橋本進吉, 「惠萼和尚伝」(『伝記・典籍研究』岩波書店, 1972年)
- 横内裕人, 『日本中世の仏教と東アジア』(塙書房, 2008年)
- 荒木計子, 「齋然将来の五台山文殊の行方」(『学苑』668, 1995年)
- 有馬嗣朗, 「入宋僧の系譜」(『文研会紀要』10, 1999年)
- 伊井春樹, 『成尋の入宋とその生涯』(吉川弘文館, 1996年)
- 伊東貴之, 「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海域交流史研究の現状と動向」(『江南文化と日本—資料・人的交流の再発掘』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11年)
-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礼行記の研究』1~4(鈴木学術財団, 1964年~1969年)
- 小野勝年, 『入唐求法行歴の研究』上・下(法蔵館, 1982年~1983年)
- 小山田和夫, 『智証大師円珍の研究』(吉川弘文館, 1990年)
- 河内春人, 『東アジア交流史のなかの遣唐使』(汲古書院, 2013年)
- 齊藤圓眞, 『渡海天台僧の史的研究』(山喜房仏書林, 2010年)
- 佐藤長門, 「太元帥法の請来とその展開—入唐根本大師常暁と第二阿闍梨寵寿—」(『史学研究集録』16, 1991年)
- 佐藤長門編, 『遣唐使と入唐僧の研究』(高志書院, 2015年)
- 篠崎敦, 「十~十一世紀の日宋交渉と入中僧: 巡礼僧成尋と通事僧仲回」(『ヒストリア』255, 2016年)
- 新川登亀男, 「入唐求法の諸相」(『日本古代の対外交渉と仏教』吉川弘文館, 1999年)
- 田島公, 「真如(高丘)親王一行の「入唐」の旅—「頭陀親王入唐略記」を読む—」(『歴史と地理』502, 1997年)
- 田中史生編, 『入唐僧惠萼と東アジア』(勉誠出版, 2014年)
- 鄭淳一, 『九世紀の来航新羅人と日本列島』(勉誠出版, 2015年)
- 手島崇裕, 『平安時代の対外関係と仏教』(校倉書房, 2014年)
- 礪波護, 「唐代の過所と公驗」(『中国中世の文物』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1993年)
- 原美和子, 「日中・日朝僧侶往来年表(838-1126)」(『8~17世紀の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人・物・情報の交流—海域と港市の形成, 民族・地域間の相互認識を中心に—上, 平成12年度~平成15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1))研究成果報告書』, 2004年)
- 平野邦雄, 「遣唐使・留学僧にあてられた国費—その種別と用途について—」(『比較文化』35-1, 1988年)
- 山内晋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吉川弘文館, 2003年)
- 山内晋次, 「前近代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航海信仰—海域祭祀・海の境界・観音信仰—」(『海域世界の環境と文化』汲古書院, 2011年)
- 森公章, 『成尋と参天台五臺山記の研究』(吉川弘文館, 2012年)

榎本 渉, 『僧侶と海商たちの東シナ海』 (講談社選書メチエ, 2010年)

佐々木 恵介, 「九世紀はどう捉えられてきたかープロローグー」 (『平安京の時代』 吉川弘文館, 2014年)

여 백

【토론문 1】

「한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入唐僧·入宋僧에 관련 서술과 특징」
에 대한 토론문

김은정(충남대학교)

구두 논평

제1부

【제2발표】

‘김보한의 왜구론’과 왜구 연구에의 제언

윤성익(경희대학교)

-
1. 머리말
 2. 「김보한의 왜구론」
 - 1) 왜구관련 논저
 - 2) 주요 내용
 - 3) 남겨진 과제
 3. 앞으로의 ‘왜구론’을 위한 문제제기
 - 1) 기존 사료(특히 ‘정사’)에서의 탈피는 가능한가?
 - 2) ‘설화’의 활용 가능성
 - 3) 사료의 해석문제 - ‘왜구의 약탈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4) ‘왜구 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4. (補) 1396년(조선, 태조 5) 제2차 쓰시마정벌의 실행여부

【제2발표】

‘김보한의 왜구론’과 왜구 연구에의 제언

윤성익(경희대학교)

1. 머리말

고 김보한 선생님께서는 여말 선초의 왜구문제에서 가장 핵심이자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 왜구의 주요 근거지와 그 주체세력을 마쓰우라(松浦) 및 마쓰우라토(松浦黨)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왜구론을 전개해왔다. 왜구활동의 추이를 마쓰우라토의 내부 사정 및 일본 정세를 통해 설명하고 그 발생과 소멸의 이유를 밝히려했던 노력 등은 충분히 평가할만하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 대한 의문·비판에서 출발해 전개되었던 독자적인 ‘김보한의 왜구론’은 왜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발표에서는 먼저 ‘김보한의 왜구론’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들을 되돌아보며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의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또한 이를 계기로 떠올리게 된 생각과 몇몇 발견을 정리해 왜구 연구에의 몇 가지 줄건(拙見)을 제언하고자 한다.

2. 「김보한의 왜구론」

1) 왜구관련 논저

김보한의 논저 가운데 왜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본 발표에서 주안을 두고자 하는 주제 및 내용에 맞추어서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보았다.

① ‘왜구론’ 전반

①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문화사학』 22, 한국문화사학회, 2004.

② 「東아시아 經濟 圈域에 있어서 약탈의 주역, 海賊과 倭寇 -10~13세기 日本의

海賊과 倭寇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29, 중국사학회, 2004.

㊤ 「東아시아 海域의 아웃로(Outlaw) -13·14세기 倭寇 활동과 그 원인」, 『일본역사연구』 24, 일본사학회, 2006.

㊦ 「해적과 약탈경제 - 중세 일본 해적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20, 동북아 시아문화학회, 2009.

㊧ 「동아시아의 재난, 해적과 왜구 -13~14세기 왜구를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63, 일본연구소, 2021.

② 왜구의 주체 및 발생 · 소멸의 원인

㉑ 「一揆와 倭寇 : 「下松浦一揆」의 성립과 관련해서」, 『일본역사연구』 10, 일본사학회, 1999.

㉒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 少貳冬資의 피살과 관련해서」, 『일본역사연구』 13, 일본사학회, 2001.

㉓ 「海洋文化와 倭寇의 소멸 -五島列島 공동어업권과 관련해서-」, 『문화사학』 16, 한국문화사학회, 2001.

㉔ 「中世 麗·日 관계와 倭寇의 발생 원인」,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2005.

㉕ 「고려 말 왜구 근거지의 일고찰 -마쓰우라(松浦)와 마쓰우라토(松浦黨)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③ 왜구의 시기구분 및 새로운 용어의 사용

㉖ 「‘전기 왜구’와 ‘후기 왜구’ 용어의 모순과 새 용어의 선택」, 『일본역사연구』 38, 일본사학회, 2013.

㉗ 「‘가마쿠라기 왜구’와 ‘무로마치기 왜구’의 비교 연구」, 『사학지』 49, 단국사학회, 2014.

㉘ 「‘가마쿠라기 왜구’와 ‘무로마치기 왜구’의 성격과 그 주체」, 『한일관계사연구』 52, 2015.

④ 왜구와 연관된 외교 · 정책사

㉙ 「고려와 조선 전기 왜인 집단거주지의 형성과 운영」, 『역사와 담론』 56, 호서사학회, 2010.

㉚ 「무로마치 왜구와 조선의 대(對)왜인 정책 -평화와 공존을 위한 조선의 선택」, 『일본연구』 18,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2.

㉛ 「중세 왜구의 경계침탈로 본 한·일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㉜ 「고려·조선의 對일본 외교와 왜구 -13~15세기 금구(禁寇) 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2014.

㉝ 「고려 · 조선의 금구외교(禁寇外交)와 일본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66, 2019.

⑤ 규슈(九州) 해상무사단의 동향

- ㉠ 「松浦黨一揆의 재고 ; 靑方氏를 중심으로」, 『사학지』 30, 단국사학회, 1997.
- ㉡ 「觀應擾亂期 「契約狀」의 자율적 성립에 관한 고찰 -松浦一族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15, 한국문화사학회, 2001.
- ㉢ 「今川了俊과 「南九州 國人一揆」의 成立 背景」, 『문화사학』 18, 한국문화사학회, 2003.
- ㉣ 「一揆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일고찰 - 남북조내란기 「下松浦 一揆」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1, 일본사학회, 2004.
- ㉤ 「일본 중세 사회의 「多分之儀」와 「平等」의 원리- 「下松浦 一揆 契約狀」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21, 한국문화사학회, 2004.
- ㉥ 「松浦氏의 성립과 松浦 一族化의 시대적 배경」, 『일본역사연구』 25, 일본사학회, 2007.

⑥ 연구 동향 · 현황 관련

- ㉦ 「중세의 왜구 : 학술 성과와 고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0, 2008.
- ㉧ 「한국 내 왜구 연구의 학술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 제2분과 한국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10.
- ㉨ 「2011년도 자유사(自由社) 역사교과서 동아시아사 서술의 변화와 특징 - 전근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0, 2011.

⑦ 기타 참조

- ㉩ 「中世 日本의 麗 · 蒙 위기론」, 『문화사학』 23, 한국문화사학회, 2005.
- ㉪ 「근대 이후 일본의 해양세력권과 동아시아 해양 인식의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 ㉫ 「중 · 근세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 ㉬ 「일본 중세사의 ‘해양인식’,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역사연구』 40, 일본사학회, 2014.

2) 주요 내용

① 「김보한 왜구론」의 핵심

「김보한 왜구론」의 핵심 내용은 본인 스스로가 작성한 「한국 내 왜구 연구의 학술사적 검토」(2001년)¹⁾에 잘 정리되어있다. 그 이후의 연구들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밝히고 있는 주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최근 발표되었던 「고려 말 왜구 근거지의

1) ㉥-㉨.

일고찰-마쓰우라(松浦)와 마쓰우라토(松浦黨)를 중심으로」(2020년)²⁾ 및 「동아시아의 재난, 해적과 왜구 -13~14세기 왜구를 중심으로」(2021년)³⁾에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이 종합적으로 함축되어있다.

왜구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왜구의 주체 및 발생 원인에 대해 그가 주목했던 것은 규슈 마쓰우라(松浦)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무사단의 동향이었다. 그는 마쓰우라 지역의 잇키(一揆) 결성과 이후의 전개에 대해 연구하며 이것이 왜구활동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왜구의 발생 및 소멸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반 사실을 규명하고자 했다.

‘왜구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일본의 기록은 왜구활동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12~13세기에 나타나는데, 이들 기록에서는 모두 마쓰우라토(松浦黨)를 실행 주체라고 적고 있는 점이 우선 그 중요한 사료적 근거로 제시되었다.⁴⁾ 왜구의 발생 원인은 바로 이 마쓰우라 지역의 소무사-해상무사단들에 의한 자의적인 해적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다.⁵⁾ 그리고 이후 왜구활동도 그들의 주 근거지였던 마쓰우라 지역 “소영주(小領主)와 주인(住人)”들의 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또한 이들을 통제·관리하는 “일본 국내 재지 세력”의 동향 역시 필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고려말 왜구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1350년 이후 ‘경인 이후의 왜구’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업권에서 소외된 부류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동아시아 해경으로 멀리 항해를 떠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선택은 家를 보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자력구체책이며 생존전략이었다. 결과적으로 혼란과 생존의 선택이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약소 무사들로 하여금 동아시아 해역의 경계를 넘어 광활한 미개척지를 대상으로 「약탈의 길」을 모색하게끔 강요하였다.”⁶⁾

고 설명하고, 1370년대 고려에서 왜구가 급등하는 것은 “규슈탐제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 무로마치 쇼군의 명령에 따라 규슈를 평정하고, 아울러 독자적인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의 산물”⁷⁾로 그 과정에서 ‘반 탐제(探題) 세력’·‘재지이

2) ②-㉠.

3) ①-㉠.

4) 예) ⑥-㉠, 259쪽 「〈표1〉 13세기 마쓰우라토의 왜구 기록」.

왜구의 근거지	왜구의 주체	시기	대상	출전사료
마쓰우라군 고토열도	기요하라 고레카네	1152년	고려 선박(고려)	『청방문서』
마쓰우라군	마쓰우라토	1226년	고려 별도	『명월기』
마쓰우라군 가라쓰시	가가미신사 주민	1232년	고려	『오치경』
마쓰우라군 고토열도	?	1263년	고려 물도	『고려사』
아오카타(靑方)	마쓰우라토	1263년(?)	고려	『청방문서』

5) ②-㉠.

6) ①-㉠ 103쪽.

7) ③-㉠ 83쪽.

탈 세력’ 및 ‘해상 무사단’ 등이 해외로의 약탈활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설명한다.⁸⁾

왜구의 소멸 원인에 대해서도 과거의 “고려의 군사 외교적 성과와 조선 초의 공무역의 전개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를 비판하고, 그 주요 원인은 마쓰우라의 재지세력이 잇키를 결성하고 그 유동성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적활동을 규제하면서 고려로의 왜구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⁹⁾ 아울러 약탈을 그만 둔 이후 마쓰우라의 포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제한된 어장에 많은 수의 해상세력의 유입이나 정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증가”의 문제는 공동어업권의 분화와 공동 어로작업을 통해서 극복해 나갔다고 주장했다.¹⁰⁾

근래 한국에서의 연구 경향 중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왜구의 발생원인과 활동의 양상이 일본 내의 정치 상황, 특히 규슈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공통된 견해¹¹⁾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보한 왜구론」의 핵심도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는 왜구의 발생부터 소멸까지를 ‘일본사’ 안에서 해석·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한일관계나 왜인에 대한 통제책, 해역관계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제를 확장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왜구의 발생과 창궐, 그리고 소멸 등의 이유가 주로 고려의 사정에 있었다는 종래의 주장·설명에 대해, 일본의 왜구근거지에서 “왜구 발생의 원인 → 창궐의 원인 → 감소의 원인”이라는 순환 고리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설명¹²⁾은 부정할 수 없는 매우 타당한 논지라고 여겨진다.

이하 ‘김보한 왜구론’ 중 몇 가지 중요한, 아울러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주제별로 간략하게 적어보겠다.

② 왜구의 주체로서 마쓰우라(松浦)의 재발견과 ‘13세기 왜구’의 소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보한은 고려말 왜구의 주요 근거지 및 주체를 마쓰우라와 마쓰우라토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런 설명은 과거에도 있었다. ‘삼도(三島)의 왜구’에서 ‘삼도’라고 지목되는 지역 중 하나에 보통 마쓰우라 지역이 포함된다고도 생각되어왔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에 출몰했던 왜구의 주요 근거지를 절대적으로 대마도라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이제까지 한국학계에서 마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¹³⁾고 그에 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구를 일본사에서 설명’하려는 접근 역시 쓰시마 및 그와 관련된 세력-대표적으로 쇼니(少弐)씨-의 동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많다.

이런 가운데 김보한은 앞서 소개한 13세기 왜구의 주체=마쓰우라토라는 일본의 사료를 토대로 마쓰우라 지역이 왜구의 가장 주요한 근거지였으며 이는 14세기 이후에도

8) ①-㉔ 및 ②-㉔.

9) ②-㉔.

10) ②-㉔ 및 ⑤-㉔.

11) ⑥-㉔ 188쪽.

12) ⑥-㉔ 190쪽.

13) ②-㉔ 251쪽.

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록 경인이후의 왜구시기에는 마쓰우라 지역에서 왜구 혹은 해적의 약탈과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서 해적적 약탈이 완전히 사라지고 왜구의 근거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¹⁴⁾ 그 증거, 혹은 논증에서 근거 자료로 이용되는 것이 마쓰우라토 내부에서 맺어진, ‘해적 금지’ 조항이 들어있는 잇키계약장이다. 예를 들어 1384년(2월 23일)에 맺어진 계약은 “고려사를 기반으로 조사된 왜구 출몰 빈도수가 1384년부터 1388년까지 줄어들고 있어서 왜구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고려사에서 1384년 2월 왜인이 포로로 잡아갔던 부녀25인을 진포(鎭浦)에서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⁵⁾ 왜구가 소멸해가는 시기에 마쓰우라토 내부에서 일어났던 변화를 일종의 정황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왜구의 주체를 마쓰우라토로 설명하면서 또 다른 주안점이 두어진 것은 ‘왜구의 시기’를 13세기로 소급하는 문제였다. 비록 기록의 수는 적지만 ‘경인이후의 왜구’ 이전, 특히 13세기에는 일본의 사료에도 기록되어있는 것처럼 왜구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렇지만 이 13세기의 왜구는 그동안 왜구의 논의에서 거의 제외되었었다. 특히,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는 ‘광의의 왜구’에는 포함시키면서도 ‘본격적인 왜구’로는 취급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가 ‘전기왜구’, ‘후기왜구’라는 기존의 용어에 대해 새롭게 제시한 용어는 ‘14·5세기 왜구’·‘16세기 왜구’로 ‘왜구’에서 아예 제외해버리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¹⁶⁾

이에 대해 김보한은 13세기 왜구를 적극적으로 그것도 왜구사의 중심으로 다시 부각시켰다. 그리고 시기와 지역을 더욱 확대해 10~13세기 동아시아의 질서 속에서 일본의 해적이 왜구로 전환되어가는 변화 과정을 교역과 약탈이라는 측면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¹⁷⁾ 이런 흐름은 중국의 원대(元代) 왜구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즉, ‘본격적인 왜구’로는 취급되지 않았던 14세기 초 ‘경원(慶元)의 왜구’도 고려에서의 왜구와 같은 성질의 것 혹은 같은 주체에 의해 발생한 사건¹⁸⁾으로 포용하였다.

③ 새로운 용어의 제안 - ‘가마쿠라기 왜구’·‘무로마치기 왜구’·‘센고쿠기 왜구’

‘13세기 왜구’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루어진 것이 왜구의 시대구분 및 시기별 명칭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었다. ‘왜구의 호칭’은 보통 일본에서 사용되어온 ‘전기왜구’, ‘후기왜구’라는, 시기구분을 겸한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이에 대해 김보한은 특히 ‘전기왜구’에 13세기 왜구가 사실상 제외되어있는 점을 비판하며 ‘일본사’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였다.¹⁹⁾

14) ②-㉔ 260쪽.

15) ②-㉔ 276쪽.

16) 김보한은 이에 대해 일본인과 고려 조선인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왜구상을 만들고자 했던 다나카에게 왜구의 주체가 명백하게 ‘왜인’이었던 13세기 왜구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③-㉔ 105~107쪽)

17) ①-㉔ 168쪽.

18) ①-㉔ 229쪽.

김보한 제안 - 시기별 왜구 용어 대조표²⁰⁾

시기	구 용어	신 용어	일본사 시기 구분법
13세기	전기왜구 (14-15세기 왜구)	가마쿠라기(鎌倉期) 왜구	가마쿠라 시대
14세기		무로마치기(室町期) 왜구 (남북조내란기 왜구)	무로마치 시대
15세기			
16세기	후기왜구 (16세기 왜구)	센고쿠기(戰國期) 왜구	센고쿠 시대

이것은 왜구의 주요문제를 ‘일본사의 시점’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자세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일단, ‘전기’, ‘후기’라는 용법으로는 모호한 느낌도 많고 ‘전기’의 경우 한국사에서는 고려말·조선초, 중국사에서는 원말·명초라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시기구분 상에서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서는 각각 자국사를 기준으로 왜구 명칭을 붙이는 경우도 많은데, -중국사를 예로 들면 ‘원대 왜구’, ‘명초 왜구’, ‘가정왜구’- 왜구가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문제였던 만큼 그 논의도 동아시아 전반을 아울러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의 현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용법의 사용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구의 근본 발생 원인이 일본 내부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지역인 한국사나 중국사에 맞춰 시기를 구분하고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많다. 이런 점에서 김보한이 제안하고 사용했던 ‘일본사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용어의 가치 및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김보한이 비판했던 다나카 다케오도 기존의 ‘전기왜구’, ‘후기왜구’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며 ‘14·5세기 왜구’, ‘16세기 왜구’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고²¹⁾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용어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전기왜구’, ‘후기왜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용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음에도 계속 사용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보한이 지적한 부분이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만큼 왜구의 시기구분 및 용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 ③-㉔.

20) ③-㉔ 114쪽.

21) 田中健夫, 「『前期倭寇』『後期倭寇』というよび方について」, 『日本歴史』 404, 1982.

④ 고려말 왜구의 약탈 및 조선의 「평화비용」에 대한 계량화 시도

주지의 사실처럼 고려말 왜구는 많은 곡물(식량)을 약탈해갔다. 여기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의문은 그렇게 많은 곡물이 어떻게 일본에서 유통되거나 소비되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왜구가 대량의 곡물을 약탈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의견이 갈리지만, 앞서 보았던 것처럼 김보한은 기본적으로 ‘왜구의 목적’을 생존권 확보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 약탈한 곡물이 그들의 근거 지역에서 모두 소비되었을 가능성을 왜구의 침구 패턴과 관련시키며 그 증거로 삼고 있다.

“1354년 40여척의 조운선을 약탈하고 난 다음 약 1년 동안... 이상 4건에서 대량의 조운선의 약탈품과 대마도의 하사품이 확보된 다음에는 대략 9개월에서 1년간 고려 조운선의 약탈이나 고려 민가의 약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려에서 다량의 미곡이 왜구 손에 넘어가 그들의 근거지에서 모두 소모할 때까지 고려에서는 새로운 약탈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들이다... 만약에 약탈한 미곡을 일본 내의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량의 약탈이 수시로 반복해서 일어났어야 했다. 그런데 대규모 약탈이 일어난 이후에 수개월에서 1년간 고려에서 왜구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왜구집단 안에서 약탈품이 소비될 때까지 재차 약탈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이 같은 사례는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미곡을 약탈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가족과 그 구성원들의 생존을 목적으로 약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²²⁾

고려에서 약탈한 곡물의 수량은 약탈한 지역에서 충분히 소비할만한 양이었고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는 전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왜구의 목적’ 나아가 왜구의 성격이나 그들의 주체(정체)까지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보한은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고려에서 약탈당한 곡물의 총량을 추산하고, 『해동제국기』·『경국대전』, 『성종실록』 등에 수록된 왜인에의 곡물제공 및 접대비용 등의 총량을 추산해 양자가 거의 비슷한 수량이라고 결론 내렸다.²³⁾ 그리고 이를 근거로 조선은 왜구가 고려에서 약탈해 간 수량만큼을 왜인에게 재정 지원하는 정책의 변용을 시도한 것으로, 결국 ‘조선의 평화 유지 정책’은 왜구에게 빼앗기던 약탈품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조선이 떠안고서 수용되었던 정책이었으며, 조선이 부담했던 비용은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유지와 공존을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평화유지 비용’이었다고 주장한다.²⁴⁾

조선 초 왜인에 대한 정책이 조선에게 큰 부담이었지만, 이를 통해 왜구 방지의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은 과거에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계량화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마도 김보한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수치나 해석에

22) ①-㉠ 20~23쪽.

23) ①-㉠

24) ④-㉠ 281쪽.

는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시각과 도전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남겨진 과제

「김보한 왜구론」이 다루고 있는 주된 시기는 13~14세기까지이다. 많은 논저에서 그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14~5세기, 16세기의 변화나 그 이전시기와의 차이, 특징 등의 많은 문제는 과제로 남겨졌다. 본인이 직접 언급한 ‘남은 과제’와 함께 「김보한 왜구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겠다.

① 다양한 한국의 ‘왜구론’

현재 한국의 왜구연구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영은 “왜구의 문제를 일본의 정치상황에 맞추어서 일본사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보한의 접근방식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왜구론’에서는 상당한 차이-전혀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가 있다. ‘왜구론’의 핵심이랄 수 있는 왜구의 주체(근거지) 및 활동목적은 예로 들면, 두 사람 모두 큰 틀에서 주체를 일본인(왜인), 목적은 약탈(주로 곡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일본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약탈이라도 그 근본 동기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영은 지속적으로 고려 말 대규모 왜구를 남조 측 세력(영주층)이 주로 병량미 확보를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 김보한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영주(小領主)와 주인(住人)”과 같은 비영주층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존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⁵⁾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견해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료, 동일한 사건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고려 조정에 보내온 편지 중 왜구의 주체를 말하고 있는 다음의 문구가 있다.

惟我西海道一路九州，亂臣割據，不納貢賦，且二十餘年矣。西邊海道頑民，觀釁出寇，非我所爲。²⁶⁾

日本國遣僧信弘來報聘，書云，“草竊之賊，是逋逃輩，不遵我令，未易禁焉。”²⁷⁾

25) 김보한은 일본에서의 ‘고려인·조선인 왜구 참여설’에는 강하게 부정했지만, 왜구의 주체를 ‘비영주층’, 목적을 ‘생존확보’에 있었다고 보는 점에서는 일본의 주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참고, “왜구의 中核에 쓰시마·잇키·마쓰우라의 「三島」 住인이 있었던 것은 당시의 일·조 쌍방의 지배층이 인식한 바로, 그 사회적 실체는 「배를 가지고 집으로 삼은」 듯과 같은 流動性이 강한 「住人層」이었다. 소우(宗)·오우치(大内)·쇼니(少弐)·소쇼(宗像)·오토모(大友)씨나 잇키의 마쓰우라토(松浦党) 제씨 등의 「領主層」은, 「住人層」에의 통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해적행위를 금압하고, 때로는 사주(使倭)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왜구 그 자체라고는 말할 수 없다.”(村井 章介, 「倭寇と日本・アジアの交流史」, 『2009年度春期東洋學講座講演要旨』·『東洋學報』 91-2, 東洋文庫, 2009)

아울러 김보한이 사용했던 ‘주인(住人)’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므로, ‘주민(住民)’ 등의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6)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2년 10월.

27)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3년 8월.

위에서 ‘西邊海道頑民’, ‘逋逃輩’가 왜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이영은 일본 측(구체적으로는 북조 측 혹은 이마가와 료순)이 왜구가 남조 세력에 의한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김보한은 “규슈의 북서부, 상하송포지역(고토열도를 포함)과 그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주인을 포함하는 재지세력”, “九州探題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세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본의 기록²⁸⁾ 중 “當國惡黨人等渡高麗致狼藉由事”에서의 “악당”도 이영은 “남조 세력”을 가리키는 것²⁹⁾이라고 하는 반면, 김보한은 “반탐제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³⁰⁾

동일한 사료, 동일한 상황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전혀 다른 왜구론이 전개되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양한 시각이나 주장이 공존하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그 내용에 차이가 많은 만큼 언젠가는 충분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왜구의 시작은 언제부터? → ‘왜구’는 무엇인가?

김보한이 13세기 왜구 및 마쓰우라를 재소환하며, ‘왜구’의 출발점과 관련해 자주 언급했던 사건은 『청방문서』에 기록된 1152년 고토(五島) 열도에서 고려 선박이 탈취당한 일이다. 김보한은 이에 대해 “『고려사』에 처음 왜구가 등장하는 시기와 약 70여 년의 시차”가 있지만 “『해상 무사단』의 활동 대상이 열도 내해(內海)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려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사건”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이 사건을 고려 영토에서 자행된 약탈이 아니고... 왜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약탈 행위의 대상국이 고려이고 대상물이 고려 선박이므로 왜구의 출발로 보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³¹⁾

즉, 왜구의 시작을 12세기 중반까지 올라가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김보한은 일본 국내의 해적, 혹은 해상무사단이 왜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더욱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논의를 시작하기도 한다.³²⁾

한편,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원대의 왜구에 대해서는 “경원의 왜구”를 그 이후의 왜구 및 고려에서의 왜구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고 파악했다. 여기에는 1152년의 사건을 말하면서 근본적으로 ‘왜구’란 “倭”가 “도적질(寇)”한 것을 의미했었다는

28) 1381년 8월, 관령(管領) 시바 요시마사(斯波義將)가 오스미(大隅)의 슈고(守護)에게 보낸 문서.(『永徳元年八月六日室町幕府御教書案』, 『大隅祢寝文書』, 『南北朝遺文 九州編』, 5권.) 당시 오스미 슈고는 이마가와 료순.

29) 이영, 「고려 말 왜구와 남조-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1, 2008.

30) ②-㉔.

31) ①-㉔ 226쪽의 주)10.

32) ①-㉔.

인식이 깔려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은 과거 일본에서 왜구를 ‘일본인(倭)’의 ‘해외활동(寇)’ 전반을 아우르며 그 시작시기를 12세기 송대(宋代)까지로 올려 잡았던 일이다.³³⁾ ‘왜’가 ‘도적질’을 한 것은 모두 아울러 ‘왜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신라시대 ‘왜’의 침입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라는 점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물론 김보한이 제기하는 “왜”가 무조건적으로 일본열도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칭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12세기 중반의 사건이나 경원의 왜구에 대해 그는 일본의 ‘해상무사단’ 혹은 ‘해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시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이나 근대 일본의 침략, 혹은 신라시대의 ‘왜병(倭兵)’ 등과는 다른 개념의 것이 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명확하게 서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분명한 점도 남아있다.

왜구의 시작을 언제부터라고 해야 할지 그리고 이와 함께 ‘왜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③ 쓰시마(對馬島)와 이키(壹岐島)는?

김보한은 왜구의 주체나 주 근거지, 원인 및 소멸의 이유 등 왜구의 주요 문제를 마쓰우라 지역 중심으로 설명했다. “고려와 조선에 출몰했던 왜구의 주요 근거지를 절대적으로 대마도라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전의 태도에 대한 그의 비판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쓰시마·이키가 왜구의 주요 근거지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김보한 본인도 왜구와 관련된 일본과의 외교 교섭 및 그 성과에 대해 ‘쓰시마와의 교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고려에서의 약탈 곡물이 약탈지역에서 전부 소비되었다는 논리도 쓰시마의 경우를 통해 설명했다. 이것은 14세기 이후에도 왜구의 주 근거지가 마쓰우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과 다소 모순된다. 그것은 고려와 조선의 많은 기록이 왜구의 주 근거지가 쓰시마나 이키라고 지목하고 또한 그 지역과 관련된 많은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쓰우라는 왜구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마쓰우라 지역에만 너무 국한해 왜구에의 의문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왜구의 소멸과 관련해 김보한은 마쓰우라 지역의 어업권문제나 잇키계약을 통해 이를 설명하지만 그런 환경변화는 다른 왜구 근거지와는 무관하다. 1384년의 잇키계약장의 효과에 대해서 “1384년부터 1388년까지는 총 59회(평균 11.8회)로 줄고 있으며, 1389년 이후에는 왜구의 출현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³⁴⁾고 설명하지만, ‘본체를 같이하는’ 중국에서는 꾸준히 활동이 지속되고 있었고 1389년에는 박위의 쓰시마정벌이 이루어졌다. 즉, 효과의 유무나 왜구의 감소원인에

33) 예를 들어 후지타(藤田元春)는 “물론 왜구는 원구(元寇) 이후의 것이 아니라...건구(建久) 2년(1191) 2월...”이라고 쓰고 있다.(藤田元春, 『日支交通の研究』, 富山房, 1938, 12쪽)

34) ①-④ 239쪽.

대해서는 다른 설명도 가능해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보한 왜구론이 전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왜구의 최대 특징이 ‘왜구의 다양성’에 있다고 주창해왔는데, 김보한 왜구론도 그 다양한 왜구의 한 모습을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하며 그 타당성 역시 이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④ 고려의 ‘왜구상황’이 규슈의 정치·지역상황에 미친 영향은?

김보한과는 입장을 달리하지만 이영은 규슈의 정치·군사적 동향과 고려에서의 왜구 활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왜구의 주체가 남조 세력이고 병량미 확보가 목적이었다는 그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규슈에서 남조세력의 동향과 고려에서의 왜구활동을 거의 월단위로 분석하는 치밀한 연구방법이다.³⁵⁾ 연구자 간에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반도에서 활동한 왜구가 일본(규슈)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김보한의 지적처럼 “앞으로도 왜구의 문제를 일본의 정치상황에 맞추어서 일본사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³⁶⁾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에서 왜구에게 일어났던 일이 규슈의 정치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라는 의문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대규모 왜구는 고려에서 종종 전멸에 가깝게 패배했다. 대표적으로 1380년(우왕 6)의 황산대첩에서는 고려군이 노획한 말이 1,600여 필이고 왜구의 숫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10,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때의 왜구가 일본(남조)의 정규군이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이 당연하지만 규슈의 정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³⁷⁾

그때의 왜구가 ‘정규군’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이 큰 문제가 남아있다. 10,000여 명이, 더군다나 청장년층이 다수였을 남성들이 죽었다면 이들의 출신지역에 미친 영향은 상상이상의 재난이었을 것이다. 왜구의 최대 근거지로 생각되는 쓰시마의 당시 인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후대의 인구통계³⁸⁾를 고려했을 때 만약 한정된 지역 출신자로만 왜구가 구성되었다면 이런 손실을 만회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35) 이영,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 - 쇼니 요리히사(少貳賴尙)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26, 한국중세사학회, 2009;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제3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공민왕 원년(1352)의 동아시아 삼국의 국내 정세와 왜구 -〈고려 해도민(高麗海島民)=왜구의 일원(一員)〉설에 관한 한 고찰」, 『일본연구』 35,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등등.

36) ㉞-㉟ 190쪽.

37) 1377년 규슈의 북조와 남조 세력이 맞붙은 「니나우찌(鰐打)의 전투」에서 기쿠치(菊地)씨가 중심이 된 남조의 군세는 5천기 정도였다. 그리고 1411년부터 1435년까지의 기록인 『만제준후일기(萬濟准后日記)』에는 당시 일본의 유력 영주가 거느린 군대의 규모가 평균 잡아 기병 300여 기, 보병 2,500여 명이라는 기술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황산대첩으로 1,800기 이상의 기병, 10,000명 이상의 병력이 일순간에 사라졌다면 세력 기반을 흔들 정도의 막대한 피해였을 것이다.

38) 『해동제국기』에는 부정확한 면이 많지만 쓰시마 전체의 호수가 8,600여 호(戶)로 되어있는데, 근세 쓰시마의 최대인구가 32,200명(元祿12, 1699년), 2009년의 통계에서는 36,22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동제국기』가 작성된 시점에서는 30,000명을 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황산대첩 외에도 많은 왜구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돌아가지 못한 왜구의 전체 숫자는 『고려사』 등의 기록을 통해 면밀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수 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이들을 고려에서 죽게 한 것이 일본의 정치동향이나 국내사정에서 기인했다면, 이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그런 동향·사정에 다시 영향을 미쳤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한반도나 중국대륙에서 활동했던 왜구의 소장(消長)을 일본의 정치동향으로만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나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구의 소멸’과 관련해 생각해보면 특히 그렇다.

김보한의 지적처럼 “일본 내의 왜구근거지에서 왜구 발생의 원인 → 창궐의 원인 → 감소의 원인이라는 순환 고리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외부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소원해질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적절치 못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결국 내부적·외부적 요인을 충분히, 그리고 균형 있게 고려하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3. 앞으로의 ‘왜구론’을 위한 문제제기

1) 기존 사료(특히 ‘정사’)에서의 탈피는 가능한가?

고려 말·조선 초 왜구연구의 기본사료는 『고려사』·『고려사절요』³⁹⁾, 『조선왕조실록』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고려시대 왜구의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고려사』의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일본의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14세기 이후의 것들은 직접 증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왜구의 발생부터 소멸까지의 원인을 일본사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에서도 왜구의 활동에 관한 사실은 『고려사』를 통해 논할 수밖에 없다. 규슈의 정세와 왜구활동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주장도 『고려사』의 왜구활동기록을 통해 분석되고 증명되어왔다.

여기서 생각해봐야하는 점은 『고려사』의 왜구기록이 완벽한가? 라는 문제이다. 이것은 『고려사』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사료, 특히 문헌사료가 과거의 모든 사실을 전부 기록할 수 있는가? 라는 가장 기초적인 의문일 뿐이다.⁴⁰⁾

나는 이와 관련해 「제주 地誌의 왜구 관련 기사」⁴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고려사』 및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이외에도 더 많은 왜구의 침구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제주 『지지』의 기록은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17세기 초에 남겨져있던 것이지만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

39) 이하 『고려사』로 일괄해 호칭.

40)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김보한도 “일반적으로 『고려사』에는 왜인과 관련해서 침략과 약탈만을 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고려사』에 기록되지 않은 투항왜인이 상당히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하고 있다.(㉔-㉕ 64쪽.)

41) 윤성익, 「제주 地誌의 왜구 관련 기사-그 사료적 가치와 활용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71, 2021.

순번	왕대년	서기	침구지역	관련내용	‘정사’에 기록된 전체 왜구 침구
1	충혜 후2	1341	旌義		0
2	충혜 후3	1342	旌義(?)	왜선 7백여 척	0
3	충정 3	1351	貴日		4
4	공민 1	1352	友浦		10
5	공민 8	1359	大村		4
6	우왕 2	1376		대거 침입	15
7	태종 1	1401	郭支		4
8	태종 4*	1404	高內 · 明月		6
9	태종 6*	1406	竹島	7월, 왜선이 정의~죽도까지 열을 지을 정도의 규모. 안무사 李元恒 · 판관 陳遵이 격퇴.	12
10	태종 8	1408	朝貢川		7
11	태종 18	1418	牛屯 · 友浦 · 遮歸 등		1
12	문종 1	1451		안무사 李鳴謙이 격퇴.	0
※	충정 2	1350	왜적이 자주 침략해 추자도의 주민을 제주도(朝貢浦邊; 都近川里)로 옮김 ⁴²⁾		

〈이원진의 『탐라지』 중 ‘제주도에서의 왜구침구’ 기사〉

제주 『지지』의 기록은 『고려사』·『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숨어있는 왜구의 기록’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원말 왜구에 대해 그동안 이용되지 않았던 원대 인물들의 문집 내용을 통해 『원사』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이나 종래의 통념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한 점⁴³⁾을 생각하면 고려말 왜구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발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정영현은 權近의 『陽村集』에서 『고려사』에 기록되지 않은 세 건의 왜구를 발견하고 있는데,⁴⁴⁾ 이런 기록의 재발견은 시각의 전환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 및 출처	내용	연도	『고려사』의 관련 내용
李穡, 『牧隱詩藁』	九月十六日入直, 復用前韻. 是夜, 倭賊犯興天寺.	1357년(공민왕6)	9월 무술(戊戌, 26일), 왜구가 흥천사에 침입해 충선왕 부부의 영정을 탈취.
鄭樞, 『東文選』	聞倭賊破江華郡達旦不寐作蛙夜鳴以叙懷. “倭櫓又集花山城 ⁴⁵⁾ ”	1360년(공민왕9)?	윤5월, 왜적이 강화를 침략
白文寶, 『淡庵逸集』의	“丁未, 倭犯西江, 京城鼎沸... 遣元帥	1367년(공민왕16)	관련 내용 없음 ⁴⁶⁾

42) “舊有人居, 高麗忠定王二年庚寅, 倭賊迭侵, 移居朝貢浦邊.”(이주처인 ‘朝貢浦邊’은 김상헌의 『南槎錄』에는 ‘都近川里’로 되어있는데, 동일한 지역이다.)

43) 윤성익, 앞의 논문, 「서론」 참조.

44)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早田氏」, 『한국민족문화』 6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18, 203~204쪽. 1380년(우왕 6) 여름, 1383년(우왕 9) 6월, 1388년(우왕 14) 10월.

45) 황해남도 청단군 화산리에 있던 고려시대의 성.

행장	泛海追捕, 己酉亂定.”	및 1369년(공민왕 18)	
鄭道傳, 『三峯集』의 「鄭沈傳」 ⁴⁷⁾	“洪武四年春, 以全羅道按廉使命, 奉濟州山川祝幣, 航海而去. 與倭賊相遇.”	1371년(공민왕 20)	관련 내용 없음 ⁴⁸⁾
鄭以吾, 「星主高氏家傳」	“丙辰丁巳, 倭船六百許艘, 周迴而入. 臣傑中箭, 盡心禦之, 受職賞. 甲子, 加星主.”	병진: 1376년(우왕 2) · 정사: 1377년(우왕 3)	1377년(우왕 3) 6월, 왜구가 배 200여 척으로 제주(濟州)를 노략질 ⁴⁹⁾
『潭陽郡邑誌』 ⁵⁰⁾ 의 「秋月山」	“前朝末, 倭賊阿只拔都圍金城, 守將積空石于都廳峯, 賊望見謂其積糧多, 解圍而去, 守城將得全. 云故至今人稱露積峯.”	1380년(우왕 6)	인월역에 주둔한 왜구가 “장차 光(州)의 金城에서 말을 먹인 후 북쪽으로 진격할 것이다.”라고 하니 온 나라가 크게 떨었다.
『響山集』의 「高麗中郎將麗隱李公墓碣銘 并序」 ⁵¹⁾	“(李思之의) 父希慶, 麗朝元帥. 征阿只拔都, 還爲零賊所害. 人皆曰死於國忠也.”	1380년(우왕 6)	관련 내용 없음 ⁵²⁾
『谷城郡邑誌』 ⁵³⁾ 의 「건치연혁」	“辛昌末年, 爲倭寇所陷, 移邑於動樂山下爲一隅.”	1389년(창왕 1)?	관련 내용 없음 ⁵⁴⁾
* 이문탁(1109~1181)의 묘지명(李文鐸墓誌銘)	이문탁이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로 있을 때 쓰시마의 관인이 변방의 일로 동남해도부서(東南海都部署)에 문서를 보내음. (『고려사』에는 12세기에 쓰시마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음)		

『고려사』에는 없는 『문집』·『읍지』에서의 왜구관련 내용

위의 내용은 미력하나마 『문집』과 『읍지』를 살펴보면 『고려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극히 적고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겠지만, 왜구기록의 재발견에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46) 『고려사』에는 1367년(공민왕 16) 서강에 왜구가 침입했다는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월 강화부를 약탈했다는 1건 뿐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그 다음해에도 왜구가 발생하지 않았을뿐더러 1369년까지 왜구로 인한 급박해 보이는 정세가 보이지 않는다. 개경의 인근지역인 서강은 자주 침범당하고 그럴 때마다 고려조정에서 긴박하게 이에 대처했던 경우가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내용이 완전히 허구라기보다는 시기에 착오가 있는 것일까?

47) 鄭道傳, 『三峯集』 권4, 「題跋」, “鄭沈傳”.

48) 1372년(공민왕 20) 『고려사』에 기록된 왜구사건은 4건 뿐인데, 그 중 봄에 발생한 사건은 3월 海州에서였고 전라도와 관련한 사건은 10월에 있었지만 이것은 왜선을 나포했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東史綱目』에는 「정침전」의 내용을 반영한 듯 이해 춘2월에 왜구가 나주에 침구하여 정침이 죽었다고 되어있다.(『동사강목』 제15下, 신해년 공민왕 20년(명 태조 홍무 4, 1371), 춘2월.)

49) ‘병진년’에 왜구가 제주도에 침입했다는 것은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1433) 윤8월 27일(정축)의 “倭寇가 병진년부터 을미년에 이르기까지 틈을 타서 돌입하여, 인구를 노략질해 가고 그 부모처자들을 죽이고 가산을 남김없이 쓸어가 버리니, 우리들에게 不共戴天의 원수입니다.”라는 제주도민들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50) 『潭陽郡邑誌』(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 奎10784), 光武3년(1899) 간행 필사본.

51) 이만도(李晩燾, 1842~1910), 『響山集』 권13, 「墓碣銘」, “高麗中郎將麗隱李公墓碣銘 并序”.

52) 『고려사』에 이희경의 이름은 조일신(趙日新, ? ~1352)의 반란사건과 관련해 1번 등장한다. 아울러 황산대첩 이후부터 이성계가 개경에 귀환할 때까지의 왜구활동 기록은 없다.

53) 『谷城郡邑誌』(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 奎10785), 光武 3년(1899) 간행의 필사본.

54) 왜구의 곡성 침구 기록은 『고려사』 권134, 「열전」 권47, 우왕 5년(1379) 3월의 기록뿐이다.

있을 것이다.

2) '설화'의 활용 가능성

문헌사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종 설화가 이용되곤 한다. 특히 세간에서 말로 전승되는 설화는 지배층에 의해 기록된 문헌사료와는 다른 시각이 담겨있기도 하다. 설화는 허구성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변용되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써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특정 내용은 사실을 담고 있다.

문헌사료에 한계가 있는 왜구의 연구에도 설화의 활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민간(海民)의 교류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왜구를 파악하려는 시각도 있는 만큼 '민중의 기록'⁵⁵⁾인 설화를 조사해보는 것은 여러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최근 제주도의 왜구관련 설화를 조사해 그 특징 및 의의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⁵⁶⁾ 처음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관련 설화(지명유래를 포함)를 꽤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나름의 성과로는 설화의 분포 지역 및 앞서 보았던 제주 『지지』의 침구지역을 토대로 제주도에의 왜구 침구는 북쪽 향로와 남쪽 향로가 모두 이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름의 성과라고 하는 이유는 북쪽 향로가 한반도 남부로의 왜구침구와 관련성이 깊지만, 남쪽 향로는 일본열도에서 중국대륙으로 직접 통행하던 길이었고, 이 남쪽 향로를 이용한 왜구는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왜구와는 출신 지역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제주도민과 일본(인)·중국(인)과의 교류, 제주도민의 해외활동(해적 등)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제주도민이 왜구의 주체라든지 일본이나 중국의 해상세력과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일본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이 주장에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민중의 기록'에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찾아봤는데 없었다'는 것도 이런 점에서는 충분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한국에 전해지는 설화를 전부 찾아보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겠지만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아울러 이 작업은 왜구에 대한 문헌기록이 거의 없는 일본을 대상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다. 왜구의 근거지로 특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해보는다면 의미가 있는 결과(만약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우연히 발견한 일본의 옛날이야기 중에 「오구라고젠(小倉御前)의 묘(墓)」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것이 있다.⁵⁷⁾ 이 이야기에는 1441년 가길(嘉吉)의 난 이후 아카마쓰(赤松) 일족의 슬픈 운명이 담겨있는데, 난을 일으킨 아카마쓰 미쓰스케(赤松満祐)가 막부의 공

55) 임재해, 「설화의 사료적 성격과 새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 『역사민속학』 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255쪽.

56) 윤성익, 「설화를 통해 본 '제주도의 왜구」, 『도서문화』 5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0.

57) 「小倉御前の墓」, 赤穂民俗研究会 編, 『赤穂の昔話 第2集』(赤穂市教委, 1986) 所收.

격으로 사망한 이후 일족인 노리시게(則繁)는 “조선으로 탈출해 시미즈장군(清水將軍)이라고 자칭하는 유명한 해적이 되었습니다.”라고 되어있다.(則繁

사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문헌기록』이 있다. 먼저 조선으로의 탈출은 『大日本史料』에서의 “則繁, 朝鮮ニ奔リ”⁵⁸⁾라는 것인데, 『대일본사료』에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建内記』의 1443년(世宗 25 · 嘉吉 3) 6월 23일조의 내용이다. 『건내기』에 따르면 조선(원문에는 고려) 사절이 장군 아시카가 요시가쓰(足利義勝)를 접견하면서, 노리시게(赤松左馬助)가 기쿠치(菊池)씨와 협력해 조선으로 건너와 한 지역(一カ国, 일본에서는 보통 ‘1州’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다.)을 쳐서 취했다고 말했다고 한다.⁵⁹⁾

아카마쓰 노리시게가 조선으로 건너가서 해적-왜구가 되어 활약했다는 내용은 아카마쓰씨와 관련된 서적⁶⁰⁾이나 사전⁶¹⁾ 등에도 반영되어있다. 「오구라고젠의 묘」에서의 내용도 『문헌사료』의 내용이 이야기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카마쓰 노리시게와 관련된 기록이 조선에는 전혀 없으며, ‘一カ国’이 점령당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이 무렵에는 왜구가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던 때였다. 앞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조선 사절이 전했다는 것은 오우치씨의 외교공작에 의해 이루어졌었을 가능성이 높다.⁶²⁾ 이 때문에 나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노리시게는 그로부터 5년 뒤인 1448년(文安 5) 1월, ‘일본에 돌아와’ 쇼니씨와 함께 오우치씨와 싸웠지만 패배하고 막부에 쫓기다가 결국 그 해에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노리시게가 이미 그 이전에 사망했다는 설도 있지만, 문헌상으로는 1441년부터 그는 일본 국외(조선)에 있던 게 된다. 정치공작이라고는 해도 그가 조선으로 건너갔다는 오우치씨 측의 주장 혹은 정보에도 뭔가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닐까? 노리시게가 조선으로 갔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온 것에는 어느 정도의 사실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建内記』에서는 기쿠치씨가 노리시게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노리시게를 도운 것은 쇼니씨(少弐教頼)였고 이 내용도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는 견해가 있다.⁶³⁾ 당시 쇼니씨와 쓰시마의 소우씨, 그리고 소우씨와 조선의 삼포를 연결하면, 쇼니씨가 노리시게를 도와 조선으로 피난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노리시게가 조선에서 7년 가까이 안전하게 머물렀다면 그 장소는 소우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삼포의 왜

58) 『大日本史料』 7編, 907冊, 718쪽.

59) 『大日本古記録(建内記 六)自嘉吉三年五月至文安元年三年』, 東京大学史料編纂所, 岩波書店, 1987, 95쪽.
嘉吉 3년(1443) 6월 23일조, “高麗国朝貢使来朝、先日参室町殿奉拝云々。伝聞赤松左馬助〈故満祐法師弟也、謀反人也〉去々年没落播州不知行方之处、菊地被相憑、越于高麗国、打取一カ国及難儀之由、今度高麗人嘆申云々。仍可被退治之由、有沙汰云々。”

60) 高坂 好, 『赤松円心・満祐』, 吉川弘文館(人物叢書), 1970, 251쪽.

61)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朝日新聞社, 1994년 발행), 『デジタル版 日本人人名大辞典+Plus』(講談社).

62) 윤성익, 「『正統年間』의 倭寇와 對馬島 -倭寇 발생구조에 대한 일고찰」,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416~417쪽.

63) 高坂好, 『赤松円心・満祐』, 吉川弘文館(人物叢書), 1970, 266쪽.

秦野裕介, 「『倭寇』と海洋史観 - 『倭寇』は『日本人』だったのか - 」,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紀要』 81, 2002-12, 95쪽.

인거류지 외에는 없다. 쓰시마의 입장에서 삼포의 왜관 및 왜인거류지는 경제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기능도 기대되었던 것은 아닐까?

3) 사료의 해석문제 - ‘왜구의 약탈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은 주로 『고려사』에 기록된 왜구의 약탈대상물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왜구의 발생 원인이나 주체 등을 역추적해 설명하기도 한다. 생존권 유지나 병량미 확보와 같은 ‘왜구의 목적’에 대한 주장도 대량의 곡물(식량)이 자주 약탈당했던 사료상의 근거에 의한다.

주지의 사실처럼 고려 말·조선 초 왜구의 주 약탈대상은 곡물과 사람이었다. 특히 고려 말에는 조운선과 곡물창고를 습격해 대량의 쌀을 약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구가 1360년(공민왕 9) 강화에 침입해 쌀 4만여 석을 약탈한 사건⁶⁴⁾이나,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면서 쌀이 땅에 버려진 것이 한 자나 쌓였다.”⁶⁵⁾는 것은 왜구가 훔쳤던 대량의 쌀을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벼가 익기를 기다렸다가 추수해서 가져가는 일도 있었던 만큼, 왜구에게 쌀(곡물)은 매우 중요했던 물건이었다.

그런데, 앞서 쌀을 약탈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지만 실제 『고려사』에서 조운선 및 창고가 약탈되었다는 기록은 전체 왜구의 약탈 기록을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기록 자체가 ‘많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조운선이 약탈되었다는 기사는 8건⁶⁶⁾에 불과(?)하다.⁶⁷⁾ 다만 1369년 이후에도 조운이 통하지 않는다거나 조운을 육로로 바꾸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조운선의 약탈이 더 있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조운’에 대한 중앙정부(고려 조정)에서의 ‘관심’이다. 당시의 조운 및 조창은 관리의 녹봉 등 국가를 운영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생명줄’이었다. 조운이 약탈당해 그 생명줄이 끊기는 문제는 당연하지만 중앙정부가 크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수많은 왜구의 약탈 기사 중 특정 대상물이 『고려사』에 명기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 가운데 주목을 끌만한 것으로 왕릉과 보제사에 침입해 왕실의 초상화를 탈취해 갔던 일이 있다.⁶⁸⁾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무라이(村井章介)는 이런 왜구의 행동이 ‘의도된 정치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며, “일본으로부터 도향한 일본인만의 집단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⁶⁹⁾라고 말하고 있다. 고려·조선인이 왜구에 참여했다

64) 『고려사』 권39, 「세가」 권39, 공민왕 9년 윤5월 병진.

65) 『고려사절요』 권31, 우왕 6년 8월.

66) 1323년 6월·1350년 4월·1354년 4월·1355년 4월·1358년 7월·1364년 3월·1366년 9월·1369년 11월.

67) ①-④ 18쪽의 「〈표 1〉 고려 침탈 왜구 빈도수와 대규모 약탈」 참조.

68) 『고려사』 권39, 「세가」 권39, 공민왕 6년 9월 무술.
『고려사』 권41, 「세가」 권41, 공민왕 14년 3월 기사.

는 그의 주장을 반증하는 증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을까? 왜구가 왕릉을 약탈했다는 것은 1건 뿐이지만, 사찰이 약탈당한 것은 다수 기록되어있다.⁷⁰⁾ 왜구가 사찰에 침입한 것은 일종의 주둔지로서 이용한 경우도 있지만 이들 사찰이 좋은 약탈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흥천사에서 왕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도 왜구에게 약탈당했을 것이라는 연구⁷¹⁾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여러 많은 가치 있는 물건이 왜구에게 약탈당했음이 자명하다. 왕의 초상화와 같은 ‘옛날 그림(古畵)’은 후기왜구 때에도 왜구가 좋아하던 약탈 대상이었다.

약탈당한 물건 가운데 『고려사』에 ‘왕의 초상화’가 기록된 이유는 이 물건이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최영이 (비록 모함을 받았다고는 해도) 창릉의 세조 어진을 약탈당한 책임으로 파직되거나⁷²⁾ 왜구 때문에 태조(太祖)의 영정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기록⁷³⁾ 등은 고려 조정(왕실)이 왕실의 초상화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관심이 많았는지를 보여준다. 무라이의 해석은 자신의 왜구론에 입각해 왜구의 약탈품에 너무나도 지나친 의미부여를 한 것에 불과하다.

쌀(곡물)의 경우는 어떨까? 왜구가 목적으로 했던 것이 반드시 쌀(곡물)이었을까?

권근의 『양촌집』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의 시가 실려 있다.⁷⁴⁾

철주(鐵州)를 지나다가 지주(知州)의 아내가 절사(節死)했다는 말을 들었다. 왜적이 침략해 들어와 지주의 아내가 사로잡혔는데, 강물에 몸을 던지니 왜적들이 건져내고 공경하고 탄복하면서 감히 접근을 못하고 돈으로써 데려가라고 하자 지주가 사람에게 백금(白金)을 꾸어서 주고 데려와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런데 또 적에게 사로잡히자 금이 없어 데려 오지 못하니 아내는 절개를 굽히지 않다가 마침내 살해당하였다.

권근은 시구에서 “금이 없어 슬픔만 남겼구나(無金慟有餘)”라고 읊고 있는데, 납치한 사람을 왜구가 ‘금’을 대가로 돌려줬다는 부분이 흥미롭다. 『고려사』의 열전에도 왜구에 잡혀간 부친을 은덩이로 교환(?)해왔다⁷⁵⁾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납치된 ‘사람’보다는 ‘금품’에 왜구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구가 쌀 이외에도 ‘금품’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술은 1377년(우왕 3) 왜구가 강화도를 도륙했을 때, 태후가 제안한 방안에서도 나타난다. 그녀는 왜구에게 사람을 파견해 “너희들이 금은(金銀)이나 곡식·비단(粟帛)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찌

69) 村井章介, 앞의 논문.

70) 『고려사』 기록 중, 왜구에게 침해를 입은 사찰은 다음과 같다. 興天寺, 강화도의 龍藏寺, 開泰寺, 歸信寺, 東林寺, 彌羅寺, 松廣寺, 盤龍寺, 圭峯寺, 加耶寺. 이 가운데 특히 개태사는 여러 차례 약탈당한 것으로 되어있다.

71) 이영, 「가라쓰(唐津) 카가미신사(鏡神社) 소재 고려 수월관음도의 유래」, 『한일관계사연구』 34, 2009.

72)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4년 5월.

73) 『고려사』 권134, 「열전」 권47, 우왕 6년 7월.

74) 『陽村先生文集』 권6, 「奉使錄」, 「過鐵州」. 권근이 명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것은 1389년(공양왕 1) 9월이다.

75) 『고려사』 권121, 「열전」 권34, 효우(孝友) ‘반전(潘腆)」.

아끼겠는가? 비록 땅이라도 또한 마땅히 줄 것이니 다만 사람만은 죽이지 말도록 하라.”고 타이르면 어떻겠는가?⁷⁶⁾ 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정충(鄭攄, 1358~1397)은 시에서 왜구가 ‘가옥을 분탕질하고 전곡을 빼앗는다(焚蕩室廬奪錢穀)’라고 읊고 있다.⁷⁷⁾ 설장수(偲長壽)는 왜구가 “미리 간첩을 보내어 어느 집이 부유한 지를 정탐하였다가 몰래 약탈하는데, 관군이 알고서 추격해오면 왜적은 이미 가득 싣고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⁷⁸⁾고 말하고 있는데, 왜구의 약탈 대상이었던 부유한 집(富實之家)에서 왜구가 약탈해 간 물건이 쌀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고려사』의 조운과 조창에 대한 기록은 고려 조정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쌀(곡물)이 왜구의 주요 약탈물품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니다. 화폐경제가 발달하기 이전의 동아시아 사회에서 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쌀(곡물)이었다. 따라서 약탈의 주 대상이었던 점은 확실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점을 가지고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해적들은** 그 뜻이 미선(米船)을 겁략(劫掠)하여 그 양식을 풍부히 하고, 무역선(番船)을 겁략(劫掠)하여 그 재화를 늘리고, 장정(丁壯)·주선(舟船)을 포획하여 그 세력을 더욱 크게 하는 데 있습니다.”⁷⁹⁾

약탈의 대상을 보면 왜구의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왜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위의 글은 남송 후반기의 인물인 진덕수(眞德秀, 1178~1235)가 해적을 격퇴한 뒤에 쓴 것이다. 진덕수는 남송시대 해적들의 활동양상에 대해 미곡선 약탈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그리고 위의 문장 뒤에 그는 해적들의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연안지대에 상륙하여 양식을 약탈해가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런 행동방식은 고려 말 왜구와 큰 차이가 없다. 쌀(양식)은 화폐경제로 이행하기 이전 사회에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해적들의 가장 중요한 약탈 대상이었던 것이다.

왜구가 스스로 그들의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밝히기 위해 그들이 약탈한 물건을 토대로 추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접근방식이기는 하지만, 앞에서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면, 단순히 생각해도 되는 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거나 집착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후기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후기왜구의 중요한 사료인 『주해도편(籌海圖編)』에는 “왜호(倭好)”라는 물품이 적혀 있다. 그 중에는 중국과 일본에서의 가치 차이를 은(銀)을 기준으로 설명해놓은 경우도 있다. 『주해도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그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나카(田中健夫)는 다음과 같이 말

76) 『고려사』 권89, 「열전」 권2, 후비(后妃), ‘명덕태후 홍씨(明德太后洪氏)’.

77) 『復齋先生集』 上, 「詩」, “聞倭賊侵楊廣道州郡”.

78) 『고려사』 권112, 「열전」 권25, 「제신(諸臣)」 ‘설장수(偲長壽)’.

79) 眞德秀, 『西山集』 권15, 「申尙書省乞措置收捕海盜」.

하고 있다.

「왜호(倭好)」란 말할 것까지도 없이 당시 수요가 많았던 무역품으로 열기(列記)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이 왜구활동을 통해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되었던 물자의 주요한 것이다. 가격 등이 적혀있는 것에서도 왜구의 활동이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사무역·밀무역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⁸⁰⁾

‘왜호’를 왜 무역품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일까? 『주해도편』은 ‘왜호’를 시작하며, 가의(賈誼)의 ‘삼표오이(三表五餌)의 책(策)’을 먼저 거론한다. 그리고 왜국(倭國)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그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왜호’를 적는다고 말하고 있다. 단순히 중국과 비교해 일본에서 더 가치가 많은 물건들이라는 것이지 이런 물건들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무역’을 통해 수입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적혀있는 것도 왜구가 약탈을 통해 이런 물건들을 일본으로 가져가면 그만큼의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 왜구들이 (약탈 중) “창고에서 견사(絹紗)를 발견하면 춤추며 기뻐한다.”⁸¹⁾는 등 ‘왜호’에 적혀있는 물건들을 왜구가 약탈했다는 기록도 적지 않다.

무라이의 경우처럼 다나카의 단정은 후기왜구의 기본성격이 ‘사(밀)무역’에 있다는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4) ‘왜구 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후기왜구와 관련해 근래의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면 ‘왜구그림(倭寇圖)’과 관련한 것을 들 수 있다. 도쿄대 사료편찬소를 중심으로 『왜구도권(倭寇図巻)』(도쿄대학사료편찬소장)과 『항왜도권(抗倭図巻)』(중국국가박물관장)에 관한 일본과 중국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다수의 결과물이 발표된 것이다.⁸²⁾ 아무래도 그림은 대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에서의 ‘왜구도’와 그것이 일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해 갔는지에 대해서는 다나카가 꽤 이전에 논한 적이 있다.⁸³⁾

『왜구도권』과 『항왜도권』은 모두 명말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통 왜구를 묘사한 가장 오래된 회화작품으로 칭해진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구를 묘사한 가장 오래된 그림은 아니다. ‘왜구도’로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 세종 때 그려진 『삼강행실도(三綱

80) 田中健夫, 『倭寇—海の歴史』(教育社歴史新書 日本史66), 教育社, 1982, 169~172쪽.

81) 采九德, 『倭變事略』, 91쪽.

82) 東京大学史料編纂所 編, 『描かれた倭寇: 「倭寇図巻」と「抗倭図巻」』, 吉川弘文館, 2014.

須田牧子 編, 『「倭寇図巻」「抗倭図巻」を読む』, 勉誠出版, 2016.

陈履生 主编, 『抗倭図巻考』, 孔学堂书局出版社, 2020.

83) 田中健夫, 「倭寇図雑考—明代中国人の日本人像」, 『東洋大学文学部紀要—史学科篇』13, 1987.

田中健夫, 「倭寇図追考—清代中国人の日本人像」, 『東洋大学文学部紀要—史学科篇』18, 1992.

行實圖)』 안에 있다. 『삼강행실도』와 그 이후의 『행실도』를 통해 조선인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밝힌 손승철의 연구⁸⁴⁾가 있는데, ‘왜구도’ 자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손승철은 『삼강행실도』의 왜구그림에 대해 “왜구가 소지한 무기는 활·창·칼이 등장하는데, 활과 창은 일본 중세 무사들이 소지했던 활과 흡사하고, 창은 길이가 2미터 이상에 치도(薙刀)의 길이만 1미터 이상이 되는 大薙刀(오오나키나타)였다. 좀더 고증되어야 하지만,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그림이 ‘사실적’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왜구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던 게 된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 묘사된 ‘왜구’를 통해 그만큼 ‘왜구의 실체’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이렇게 그려진 왜구를 바탕으로 조선인들에게 ‘왜구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행실도』에 그려진 왜구의 이미지는 한눈에도 현재 우리들이 떠올리는 왜구와는 차이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의 변용은 왜? 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흥미로운 문제가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오른쪽 그림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왜구 그림일 것이다. 이 그림은 전전시기 일본의 역사교과서 등에도 종종 실려 있던 것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해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왜구의 이미지’가 정착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떠올리는 왜구의 모습이 상당히 달랐을 수도 있다. (그림 2)의 왼쪽)

84) 손승철, 「朝鮮時代 『行實圖』에 나타난 日本의 表象」, 『한일관계사연구』 37, 2010.

『삼강행실도』 「崔氏奮罵」	『삼강행실도』 「烈婦入江」	『속삼강행실도』 「藥哥貞信」	『속삼강행실도』 「崔氏守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文氏墜崖」	『동국신속삼강행실도』 「安氏死賊」	『오륜행실도』 「烈婦入江」	『오륜행실도』 「최씨단족」
			

그림 1) 『행실도』에 묘사된 왜구

『初等大韓歷史』(1908)	『중학교 국사』(1차 교육과정:1954~1963)
	홍건적과 왜구의 북새질 홍건적이란 원 나라 말년에 중원이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일어난 도적의 무리로서, 명 나라가 일어난 후에 그 세력은 준지 아니 하며, 명(明)에서도 홍건적을 치게 되어 몰려 나온 도적 떼는 고려에 넘어 들어왔다. 그 세력이 만주 지방까지 흘러와 공민왕 3년(1359) 겨울에는 압록강을 넘어 고려에까지 들어오고 개성에까지 침입하니, 정세운(鄭世雲) 장군이 수차례 걸쳐 이를 몰아내었다(1361). 홍건적의 난리를 누르고 나자, 남쪽의 왜구가 북새질을 하여 말뼉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왜구는 섬 나라 일본에서 살기가 곤란하 

그림 2) 과거 역사교과서 중의 ‘왜구도’

‘왜구 이미지’와 관련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문학’ 작품 속의 왜구에 대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명·청시대의 소설 및 희곡작품에 왜구와 관련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왜구문학’이라는 호칭이 있을 정도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적지 않다.⁸⁵⁾ 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문학’, 특히 소설이나 희곡은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런 문학 작품 속의 왜구도 ‘왜구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틀림없다.

나는 조선시대의 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지만, 미천한 지식수준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金鰲新話)』임과 그 가운데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라는 작품이 있음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의 배경이 되는 사건, 즉 ‘왜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소설의 무대는 남원이고 만복사는 고려시대 남원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만복사에 왜구가 침입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김시습이 만복사를 무대로 삼았던 것은 그가 남원을 왜구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아울러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은 배경 사건이 홍건적의 침입이었는데, 이를 통해 『금오신화』가 창작된 15세기 중반의 조선인에서는 민간인이 희생되는 대규모의 전란으로 보통 인식되던 것이 ‘홍건적’과 ‘왜구’였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다른 문학 작품 속에서 왜구가 등장하는 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탐색해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발견된다면 그것을 통해 새로운 연구가 가능할 것이고 만약 없다면 “왜 없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또 다른 주제의 연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4. (補) 1396년(조선, 태조 5) 제2차 쓰시마정벌의 실행여부

1396년(태조 5)의 제2차 쓰시마 정벌은 『조선왕조실록』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일본의 사료에서도 조선군의 침공을 기록한 것은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정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내지는 시도단계에 그쳤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⁸⁶⁾

이런 부정적 시각에 대해 일찍이 손홍렬은 이를 비판하며, “(이 때의 정벌이) 조선 최초의 정벌이었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⁸⁷⁾이라고 단정했다. 손홍렬이 확신한 근거는 원정군의 총책임자였던 김사형(金士衡)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태조가 흥인문 밖까지 나가서 그를 맞았다는 기록에 있다. 이것은 김사형의 원정군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85) 참고로 최근 유사(遊佐 徹)는 명청시대의 희곡작품을 다수 발굴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遊佐 徹, 「倭寇戯曲作品あらすじー明清古典戯曲版ー」, 『文化共生学研究』 19, 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 2020.

遊佐 徹, 「明清倭寇戯曲目録(補)およびあらすじ」, 『文化共生学研究』 20, 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 2021.

86) 예를 들면,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吉川弘文館, 1970, 229쪽.

87) 손홍렬, 「麗末・鮮初의 對馬島征伐」, 『역사와 담론』 6, 호서사학회, 1978, 127~129쪽.

때문에 태조가 그렇게 기뻐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제2차 쓰시마 정벌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⁸⁸⁾

그런데, 원정군이 서울을 출발한 뒤부터 김사형이 돌아올 때까지의 약 두 달간 왜구와 관련한 중대한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했다.(이하 아래의 표를 참조) 원정군이 서울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동해안에서 활동하던 왜구가 갑작스럽게 투항해온 것이다. 왜구가 항복을 청해온 것을 조선의 장수들이 믿으려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매우 뜻밖의 일이었다.

연도	월/일(음력)	주요 사건
1396년(태조5)	12월 3일	태조, 김사형(金士衡)을 5도도통사에 임명하고 5도의 병선을 모아 이키와 쓰시마를 정벌토록 함. 원정군 서울에서 출발.
	12월 9일	나가온(羅可溫, 林溫) 등이 이끄는 왜구가 축산도에서 투항.
	12월 13일	원정에 자원한 장수들을 원정군에 합류하게 함.
	12월 22일	김사형에게 궁온(宮醢)을 하사.
1397년(태조6)	1월 3일	울주포(蔚州浦)로 들어온 왜구에의 접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왜구가 지주사(知州事) 이은(李殷) 등을 포로로 잡아 대마도 ⁸⁹⁾ 로 돌아감.
	1월 28일	울주포 사건의 책임자들을 김사형이 잡아서 경산부(京山府, 경북 성주군에 위치)에 가두고, 이들의 죄상을 긴급 보고하며 죄를 청했기 때문에, 조정에 이들의 죄를 논의토록 함.
	1월 30일	김사형이 서울로 돌아옴. 태조가 흥인문 밖까지 나가서 그를 맞이함.
	2월 9일	왜인이 이은 등을 돌려보냄.
	2월 10일	나가온의 아들 등에게 관직을 제수.

1396년(태조5), 쓰시마 원정군의 출발부터 귀환까지의 경과

태조는 이들의 항복을 받아들였고 왜구들의 조선 투항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런데 해를 넘겨 1월 3일 문제가 터졌다. 울주포로 들어온 왜구에의 접대 과정에서 조선 관리들의 의도를 의심한 왜구가 지주사(知蔚州事) 이은(李殷) 등을 납치해 쓰시마로 도망가 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김사형 등 원정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12월 22일, 태조가 사람을 보내 김사형에게 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때 김사형은 아직 국내(아마도 경상도)에 머물고 있었다. 1월 3일의 사건이 터졌을 때도 원정군이 바다를 건넌을 가능성은 낮다. 김사형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1월 28일이다. 그 내용을 보면 김사형은 울주포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사형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체포한 뒤에 조정에 보고했으므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88) 예를 들어 나종우, 「[왜?] 조선은 왜 대마도를 정벌했나?」(『내일을 여는 역사』 10,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02), 장준혁, 「麗末鮮初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의 대마도 정벌」(『역사와 실학』, 53, 2014)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실행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김보한도 일단 긍정했던 것 같다.(④-㉔ 24~25쪽) 『두산백과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의 백과사전에서도 원정이 이루어졌다고 쓰고 있다.

89) “이은이 왜구에게 잡혀가서 대마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박인귀(仁貴) 등이 자청하여 대마도에 가서 은혜와 신의로 타일러 이은 등과 더불어 돌아왔다.”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2월 27일(경술).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결국 바다를 건너 원정이 실행되었다면 잘 해야 20여 일 사이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물론, 1419년(세종 1)의 원정 기간이 14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원정이 실행되었을 수는 있다. 문제는 이은 등이 납치되었던 곳이 쓰시마였다는 점이다. 납치된 사람들은 2월 9일에 석방되어 돌아왔는데, 이들과 함께 왔던 왜구들은 그 다음날 조정에서 관직을 수여받았다. 이은의 쓰시마 억류와 석방 과정을 보면 그의 억류 기간 중 조선군이 쓰시마를 공격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그런데, 원정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었다. 1397년(태조 6) 12월,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에의 회례사로 박돈지(朴惇之)가 파견되는데, 이때 권근(權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이 바다 가운데 있어 우리와 더불어 서로 바라보는 이웃이므로 사신의 왕래가 예로부터 서로 통하였다. 고려 말엽에 문신(文臣)과 무장(武將)이 안일한 데 기울어져 변방에 대한 방비가 없으니, 조그마한 섬나라 백성이 감히 노략질을 자행하여 우리 땅에 들어와 침략한 것이 50년이였다... 왜적이 두려워 복종하여 저절로 항복하고 우리 백성이 되겠다고 청원하는 자까지 있으므로... 그러나 그 남은 도적이 아직도 다 제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장사(壯士)들이 누차 군사를 일으켜 분명하게 토벌을 가해서 영원히 바닷길을 깨끗이 하자고 여러 번 청하였으나, 우리 전하가 문덕(文德)을 넓히고자 하여 선뜻 군사를 내지 아니하였다. 금년 가을에 일본이 사신을 보내어 예방하고, 또 적의 무리를 효유하여 침범을 금단하니...”⁹⁰⁾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은 박돈지를 파견하며 오우치 요시히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보인다.⁹¹⁾ 또한 변계량(卞季良)이 작성해 쓰시마에 보낸 교서에서는 “우리 태조 강현대 왕께서는... 이런 시기에 한 편장(編將)을 명하여 대마도의 조그마한 무리를 섬멸하는 것은, 이는 마치 태산(泰山)으로 계란을 누르고,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이 어린아이를 치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도 우리 태조께서 문덕(文德)을 펴고 무위(武威)를 거둬들여 은혜와 신의로 회유하는 도를 보여 주었다.”⁹²⁾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들 모두 쓰시마 공격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태종실록』의 김사형 졸기(卒記)에도 쓰시마 정벌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⁹³⁾

그렇다면 태조가 크게 기뻐하며 김사형을 환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권근은 김사형을 축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정(東征)할 적에는 위덕(威德)이 닿는 곳마다 싸우지 않고 스스로 굴복하며 투항하는 자가 잇달아 해구(海寇)가 영원히 소탕되었으니, 공은 참으로 편안하게 웃고 즐기면서 정

90) 『동문선』 권90 「序」, “送密陽朴先生敦之奉使日本 序”, “故我將士屢請興師, 明致天討, 求清海道, 恭惟我聖上, 欲廣文德, 不即用兵.”

91)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2월 25일(계묘), “故我水軍將士, 靡不憤惋, 再三申請, 大備戰艦, 將欲往問厥罪, 掃清海島, 永絕亂源. 聖上欲以文德綏遠, 而貴國亦遣使來聘, 諭以禁賊, 故姑寢其事.”

92) 『동문선』 권24, 「教書」, “諭對馬州書”.

93)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7월 30일(신사).

신으로 적을 막아 내는 사람이라 하겠다.”⁹⁴⁾

권근의 이 문구도 김사형이 쓰시마로 원정해 싸우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의 표현처럼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구가 항복해온 사실과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김사형이 잘 처리했기 때문에 태조가 그만큼 기뻐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제2차 쓰시마 정벌은 실행단계에서 중단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이미 오래전 정약용도 이은이 쓰시마로 납치되었던 사실을 들며 ‘정벌’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단정했다.⁹⁵⁾

손흥렬 선생님께서는 제2차 쓰시마 정벌과 관련된 기록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며 “언젠가 병자년 정벌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면 다시 한번 고찰할까 한다.”⁹⁶⁾는 말을 남기셨는데, 나 역시 앞으로 왜구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발견되고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기를 고대하겠다.

94) 『양촌선생문집』 권18, 「序類」, “賀金侍中詩序(士衡)”, “其東征也, 威德所加, 不戰自屈, 降附相繼, 海寇永清. 公可謂偃息談笑精神折衝者矣.”

95) 『여유당전서』 『附 雜纂集』 1, 『文獻備考刊誤』 권19, 「輿地考」, “全號: 太祖五年, 遣金士衡·南在征一岐·對馬等島. 案, 太祖乙亥十一月, 倭寇蔚州, 遣金士衡·南在等討逐之, 知蔚州事李殷被俘, 拘囚至對馬島而還. 此云征一岐·對馬者, 全非實事. 嘗見『南氏家乘』有此說, 蓋其子孫之夸語也.”

96) 손흥렬, 앞의 논문, 129쪽.

여 백

【토론문 2】

「‘김보한의 왜구론’과 왜구 연구에의 제언」에 대한 토론문

한성주(강원대학교)

먼저 윤성익 선생님이 발표한 고 김보한 선생님의 ‘왜구론’과 왜구 연구에의 제언에 대해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구 전공자는 아니지만, 평소 김보한 선생님께서 쓴 몇 편의 왜구 관련 논문을 읽고, 몇 번의 국내외 답사와 학술대회를 함께 한 인연이 있어서 토론을 맡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김보한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왜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많은 이해와 공부 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 발전된 왜구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윤성익 선생님의 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보한 선생님의 왜구론에 대한 것으로, 그의 총 31편에 대한 왜구 관련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동시에 논평을 통해 한계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왜구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기존 연구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왜구 관련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보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윤성익 선생님의 분류와 논평, 제언들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김보한의 왜구론’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와 느낀점을 말씀드리며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김보한 선생님의 왜구론의 핵심은 역시 ‘13세기 왜구’를 소환하여, 그 주체가 마쓰우라와 마쓰우라토라고 주장하고, 가마쿠라기·무로마치기·센코쿠기 왜구로 부르는 새로운 시기 구분과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3세기 왜구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왜구의 발생과 소멸까지 ‘일본사’ 안에서 해석·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보한 선생님께서 탁월한 견해와 안목이 있으셨다고 생각되지만, 왜구의 주체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일본사의 전개 과정에 따른 시기 구분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즉 가마쿠라기와 무로마치기 왜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발표자 선생님께서 보충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와 연관해서 전기왜구 전체를 13세기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지, 보다 익숙한 용어로 ‘13세기, 14~15세기, 16세기 왜구’라는 시기 구분으로 분류해도 좋은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김보한 선생님의 연구 결과로 보면 왜구(전기)가 13세기에 발생하여 15세기까지 약 3백년 간 지속된 것인데, 이 기간 동안 왜구의 주체나 발생 원인이 변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큐슈의 마쓰우라에서 한반도에 오려면 이키나 쓰시마를 거쳐야 하므로 이들 모든 지역이 왜구의 발생지라고 보는 것은 당연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왜구의 목적에 대해서 ‘생존권 확보’에 있었다고만 하기에는 역시 전체 왜구에 대해서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산대첩에서의 1만여 명에 가까운 왜구들이 단순히 생존권을 위해 고려를 침입했다고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생존권 확보’였다면 굳이 험한 먼바다를 통해 한반도, 중국으로 갈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면 타국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침해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왜구의 활동에 대해 정당성을 심어줄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김보한 선생님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김보한 선생님의 연구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타계로 연구가 더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후학들과 동료 연구자들이 선생님의 연구를 비판적·발전적으로 계승해 나아가기를 염원합니다.

제1부

【제3발표】

조선 태조~태종대 쓰시마(對馬)·이키(壱岐)·히젠(肥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1400년대 피로인 송환자(=일본인 통교자)의 증가 배경과 관련하여-

한윤희(성균관대학교)

서론

1. 기존 연구의 문제점
2. 쓰시마(對馬)·이키(壱岐)·히젠(肥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의 특징
3. 1400년대 피로인 송환자의 증가 배경

결론

【제3발표】

조선 태조~태종대 쓰시마(対馬)·이키(壱岐)·히젠(肥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1400년대 피로인 송환자(=일본인 통교자)의 증가 배경과 관련하여-

한윤희(성균관대학교)

서론

여말선초 피로인(被擄人) 송환에 관한 연구는 왜구(倭寇) 연구의 일환으로 주로 일본 학계의 대외관계사에서 연구가 되어 왔다.¹⁾ 그러나 왜구 연구와 함께 1세기 이상의 연구 기간을 갖고 있음에도 2002년 세키 슈이치(関周一)의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²⁾가 나온 후로는 이렇다 할 연구³⁾가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국내에서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왜구 연구에서 획기적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⁴⁾ 기존의 일본학계에서는 일국사(一國史)적인 관점에서 한국 측 사료인 『고려사(高麗史)』·『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만 의존하여 왜구의 발생 배경 및 그 실체를 쓰시마(対馬)·이키(壱岐) 등과 같은 일본 변경 지역의 기근으로 인한 식량 약탈로 축소·주장해 왔다.⁵⁾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왜구 문제를 고려와 일본과의 관계,

- 1) 14세기~15세기의 피로인 및 피로인 송환에 관한 연구는 関周一, 「第一章 被虜人の境遇と送還」(『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참조. 국내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로는 손홍렬, 「麗末鮮初被倭俘虜의 刷還」, 『사충』 19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75; 한윤희, 「여말선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고찰 -〈今川了俊의 송환 배경=경제적 수익 목적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일본연구』 제36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정영현, 「여말선초 倭寇 被虜人の 쇄환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39권, 부경역사연구소, 2016; 한윤희, 「조선 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의 〈해구(海寇)에서 해상(海商, =평화로운 통교자)으로의 전환〉설을 중심으로-」, 『군사』, 제11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등이 있다.
- 2) 세키 슈이치의 연구(위의 책)는 피로인 송환 사례를 열거한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송환 사례를 표로 작성하고, 송환자의 지역적 분포와 송환 건수에 대한 표를 만드는 등 구체적으로 송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한윤희, 『여말·선초 피로인(被虜人) 송환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 2002년 세키 슈이치의 연구 성과 이후 피로인 송환에 관한 연구는 주(1)에서 언급한 국내에서의 연구 논문 정도가 있다.
- 4) 국내의 왜구 연구사와 일본학계 왜구 연구와의 차이점 등에 관해서는 박경남, 「이영(李頴)의 왜구 주제 논쟁과 현재적 과제」, 『역사와 비평』, 통권 제122호, 역사비평사, 2018. 및 이수열, 「왜구론의 행방: '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제21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에 잘 정리되어 있다.
- 5) 일본 대외관계사 학계의 이와 같은 주장의 중심에는 전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선구자인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영, 「제1부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2015)을 참조.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연구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된 것이다.⁶⁾ 따라서 왜구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피로인 송환에 관한 연구도 고려·조선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현재까지 피로인 송환에 관한 연구가 어떠한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해 검토해본다. 2장에서는 최근의 왜구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고려 말 왜구의 실체로 밝혀진 쇼니씨(少弐氏)⁷⁾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지역들, 즉 쓰시마·이키·히젠 지역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특징에 대해 검토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1400년대에 쓰시마·이키·히젠 지역에서 피로인 송환이 일제히 시작되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는데, 일본 규슈(九州)의 정세를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검토를 통해 피로인 송환을 연구함에 있어 송환의 목적과 배경 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의 당시 국내외적 상황을 모두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示唆)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기존 연구의 문제점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피로인 송환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세키 슈이치의 연구 이후로 주목할만한 연구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연구는 대체 어떠한 시각에서 피로인 송환 문제를 다루어 왔을까? 현재 피로인 송환 연구가 답보 상태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표1] 피로인 송환에 관한 기존연구의 공통적 시각¹³⁾

	주 제	내 용	연구자(시기)
①	송환자의 실체	송환자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키야마 겐조(1939) ⁸⁾ ·손홍렬(1975) ⁹⁾ ·세키 슈이치(2002) ¹⁰⁾ 등
②	송환의 목적	‘경제적인 목적’ 일변도로 보고 있다.	아키야마 겐조(1939)·이시하라 미치히로(1956) ¹¹⁾ ·손홍렬(1975)·다나카 다케오(1997) ¹²⁾ 등

6) 주(4)의 글들 참조.

7) 이영,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우왕 2년(1377)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24집, 일본사학회, 2006; 同, 「고려 말 왜구와 남조-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31집, 한일관계사학회, 2008; 同,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쇼니 요리히사(少弐頼尚)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제2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9. 등.

8) 秋山謙蔵, 「朝鮮人及び支那人の送還と貿易の展開」,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1939.

9) 손홍렬, 위의 글.

10) 関周一, 위의 책.

11) 石原道博, 「倭寇と朝鮮人俘虜の送還問題(一)·(二)」, 『朝鮮學報』 10, 1956.

12) 田中健夫, 「第一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東アジア通交圏と國際認識』, 吉川弘文館, 1997.

13) 필자는 석사학위논문에서 이미 이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다(한윤희, 위의 석사학위논문). 그러나 기존 연구의 이러한 시각이 왜 현재 문제가 되는지, 이러한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피로인 송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로인 송환에 관한 기존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위의 두 가지 점이다. 하나는 ①송환자의 실체에 대해서다. 아키야마 겐조(秋山謙蔵)·손홍렬·세키 슈이치 등 피로인 송환에 관한 기존 연구자들은 피로인 송환자에 대해 왜구의 배후세력이거나, 모두 왜구, 왜구이거나 왜구가 아닌 경우, 왜구일 수도 있는 경우 등 그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¹⁴⁾ 이것은 왜구 연구가 1세기 이상에 걸쳐 연구되어 왔음에도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②피로인 송환의 목적에 대해서다. 아키야마 겐조·이시하라 미치히로(石原道博)·손홍렬·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등 연구자들 대부분이 송환자의 송환 목적을 ‘경제적인 목적’ 일변도로 보고 있다.¹⁵⁾ 그들의 주장은 송환자들이 처한 당시 일본의 정치·군사·외교적 상황에 대해 일일이 고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송환자가 고려(조선) 정부에 피로인을 송환하고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아갔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다. 따라서 송환 목적을 경제적 목적 일변도로 보는 기존 연구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시각은 고려 말 왜구 침구의 목적에 대한 현재 학계의 통설(通說)¹⁶⁾과도 관련이 있다. 즉, 왜구 침구의 목적이 쓰시마·이키와 같은 일본 변경 지역의 식량 약탈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에 있었다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피로인을 고려·조선으로 송환한 자들의 송환 목적 역시 경제적인 목적에 있었다는 논리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현재 피로인 송환에 관한 연구는 이처럼 왜구 연구와 마찬가지로 ‘왜구 침구의 목적·피로인 송환의 목적=경제적인 목적’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갇혀 새로운 연구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피로인 송환에 관한 새로운 연구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연구 시각이란 어떤 시각인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의 왜구 연구는 일국사적인 시각을 넘어, 고려·일본과의 관계, 고려·명과의 관계, 명과 일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왜구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피로인 송환 연구도 피로인 송환 문제를 고려(조선)와 일본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⁷⁾ 구체적으로 최근의 왜구 연구는 고려 말 왜구의 실체가 쇼니씨(少弐氏) 휘하의 대마도 소씨(宗氏), 북규슈(北九州)의 쇼니씨 일족과 기쿠치씨(菊池氏) 주축의 남조 수군과 같이 남북조 내란에 있어 직접적으로 그 내란의 선봉에 서 있던 규슈의 유력 호족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¹⁸⁾ 필자는 고려 말 왜구의 실

14) 한윤희, 위의 석사학위논문.

15) 한윤희, 위의 석사학위논문.

16) 고려 말 왜구 침구의 목적은 쓰시마·이키와 같은 일본 변경 도서 지역의 기근으로 인한 식량 약탈이며, 따라서 왜구의 실체는 당시 일본의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논리가 현재 일본학계에서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를 최초로 주장한 나카무라 히데다가가 황국사관론자임이 밝혀졌으며(이영, 주(5)의 글), 따라서 그가 구축한 왜구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가 촉구되고 있다(이영, 주(5)의 글 및 한윤희, 위의 주(1) 2021년의 글).

17)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피로인 송환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한윤희, 주(1)의 2014년의 글).

18) 이영, 위의 주(7) 참조.

체인 쇼니씨의 지배하에 있던 쓰시마·이키·히젠 지역이 피로인 송환 지역들 중 눈에 띄게 피로인을 많이 송환하고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¹⁹⁾ 그러나 이들 지역이 쇼니씨의 휘하 세력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로인 송환에 관해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우선 이들 세 지역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특징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2. 쓰시마(對馬)·이키(壹岐)·히젠(肥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의 특징

피로인 송환은 고려 공민왕 12년(1363)부터 조선 세종 25년(1443)까지 약 80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²⁰⁾ 다음 표는 어떤 지역에서 몇 회의 피로인을 송환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2] 송환지역과 송환횟수

송환지역	치쿠젠 (筑前)	이키 (壹岐)	사쓰마 (薩摩)	쓰시마 (對馬)	교토 (京都)	히젠 (肥前)	스오 (周防)	휴가 (日向)
송환횟수	19	21 ²¹⁾	8	13 ²²⁾	4	9	1	1

피로인을 많이 송환한 순으로 열거하면 〈이키(21)–치쿠젠(19)–쓰시마(13)–히젠(9)–사쓰마(8)–교토(4)–스오·휴가(1)〉 순으로 열거할 수 있다. 피로인을 가장 많이 송환한 지역이 바로 이키 지역으로 21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치쿠젠이 19회로 두 번째로 많은 피로인 송환 횟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14회가 규슈탐다이(九州探題)의 송환이다.²³⁾ 치쿠젠에 이어 세 번째로 피로인을 많이 송환한 지역이 쓰시마로 13회의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치쿠젠을 제외한 이키·쓰시마·히젠 지역, 즉 쇼니씨 세력 하에 있던 지역들이 피로인 송환을 많이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의 피로인 송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을까? 이를 표시하면 [표3]과 같다.

19) 한윤희, 위의 석사학위논문.

20) 関周一, 위의 책 및 한윤희, 위의 석사학위논문 참조.

21) 필자는 석사학위논문에서 이키 지역의 송환횟수를 22회로 표기하였으나, ‘〈표2〉 피로인 송환표’의 97번의 경우(한윤희, 위의 석사학위논문), 엄밀히 말하면 송환보다는 쇄환(刷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송환 횟수에서 제외하였다.

22) 필자는 석사학위논문에서 쓰시마 지역의 송환횟수를 14회로 표기하였으나, ‘〈표2〉 피로인 송환표’의 25번의 경우(한윤희, 위의 석사학위논문), 사료에 따르면 “對馬島被擄人八名, 與倭人九名來, 使各還其家; 分處倭人于州縣, 各賜衣糧.”(『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신미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로인 스스로 조선에 온 것인지 누군가 송환해서 온 것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송환 횟수에서 제외하였다.

23) 이마가와 료순 이후 규슈탐다이가 된 시부가와 미쓰요리(渋川満頼)와 요시토시(義俊) 부자(父子)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이마가와 료순 이후 규슈탐다이가 된 시부가와씨가 점차 규슈 내에서 정치적으로 힘을 잃어 수십 차례에 걸쳐 조선과 무역을 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秋山謙蔵, 「室町初期に於ける九州探題の朝鮮との通交」, 『史学雑誌』 42-4, 1931. 및 川添昭二, 「九州探題渋川満頼・義俊と日朝交渉」, 『対外関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1996. 등).

[표3] 쓰시마(対馬)·이키(壱岐)·히젠(肥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 일람표

no.	쓰시마(対馬)		이키(壱岐)		히젠(肥前)	
	연월일	송환자	연월일	송환자	연월일	송환자
1	태종원(1401).윤3	沙彌靈鑑	태조2(1393).6.경인	僧 建哲	정종2(1400).8	駿州太守 源定
2	태종원(1401).4.정해	對馬島守護 宗貞茂	태종2(1402).7.기유	一岐島知主	태종3(1403).10.갑술	駿州太守 源圓珪
3	태종5(1405).12	宗貞茂	태종2(1402).9.기유	一岐州知主 源良喜	태종7(1407).9.신해	肥前州平戸島代官 金藤貞
4	태종7(1407).3.경오	對馬島守護 宗貞茂	태종3(1403).5.병오	一岐州知主 源良喜	태종7(1407).9.신해	駿州太守 源圓珪
5	태종8(1408).11.경신	宗貞茂	태종6(1406).8.임진	一岐州知主 源良喜	태종8(1408).3.계해	仇沙殿
6	태종14(1414).윤9.임술	兵衛三甫羅	태종6(1406).9.임오	呼子遠江守 源瑞芳	태종8(1408).7.을해	駿州太守 源圓珪
7	세종원(1419).2.경인	宗祐馬	태종6(1406).9.임오	鴨打三川守 源傳	태종8(1408).11.경술	丹州守 源延
8	세종원(1419).2.경자	對馬島 宗貞茂子都都熊瓦	태종6(1406).9.임오	一岐州守護代 源賴廣	태종10(1410).6	肥前州 松浦 宇久源銳
9	세종5(1423).4.신유	波知羅沙門	태종6(1406).9.임오	一岐州守護代 源舉	태종10(1410).6	肥前州 土官 藤滿通
10	세종6(1424).10.정미	早田左衛門大郎	태종7(1407).3.경진	志佐殿		
11	세종12(1430).5.갑인	井大郎兵衛	태종7(1407).5.기묘	一岐州知主 源良喜		
12	세종16(1434).1.계묘	興利倭人 兵衛四郎	태종7(1407).12.을미	志佐殿		
13	세종16(1434).3.임인	三末三甫羅	태종7(1407).12.을미	一岐州世官源良喜		
14			태종8(1408).5.경신	志佐殿		
15			태종8(1408).6	一岐州太守 源良喜		
16			태종10(1410).4.경술	志佐殿 源秋高		
17			태종12(1412).6.갑자	一岐州上萬戶		
18			태종13(1413)	志佐殿		
19			태종15(1415).5.신유	一岐上萬戶 道永		
20			태종18(1418).5.을해	一岐上萬戶 道永		
21			세종2(1420).11.병술	多羅古羅		

※ 위의 표는 『朝鮮王朝實錄』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

위의 표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세 지역 모두 140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피로인 송환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⁴⁾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쓰시마 지역이 태종대부터 세종대에 걸쳐 송환하고 있는 것에 반해, 히젠 지역은 오로지 정종 원년(1400)부터 태종 10년(1410)까지, 단 10년간만 피로인을 송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키 지역은 이 세 지역 중 총 21회로 가장 많은 피로인을 송환하고,²⁵⁾ 특히 태종 6년에서 8년에 걸쳐 총 21회 중 절반 가까이 되는 11회를 송환하고 있다. 히젠 지역도 역시 태종 7~8년에 걸쳐 총 11회 중 5회를 송환하고 있다. 이 세 지역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 쓰시마(対馬)·이키(壱岐)·히젠(肥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의 특징

no.	특징	내용
1	쓰시마·이키·히젠 지역의 피로인 송환의 공통점	①모두 태종 7~8년에 피로인을 송환하고 있다. 특히, 이키 지역은 태종 6년~8년에 절반 이상(21회 중 11회)을, 히젠 지역은 태종 7~8년에 절반 이상(총 9회 중 5회)을 송환하고 있다.
		②모두 1400년대에 들어와 피로인 송환을 시작하고 있다.
2	이키·히젠 지역의 피로인 송환의 공통점	·1400년대에 집중적으로 피로인 송환을 하였다.

1-①의 특징을 보면 태종 6~8년이 피로인 송환의 피크기(peak period)라 할 수 있다.²⁶⁾ 왜 해당 시기에 피로인 송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를 전후로 하여 당시 조선이 여진, 명(明), 일본과 외교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논하기로 한다. 또한 2의 특징 역시 이키·히젠 지역의 당시 정치·군사적 상황이나 조선과의 통교 정황 등 지면관계상 본고에서 모두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1-②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

24) 다만 이키 지역의 첫 송환이 태조 2년(1393) 승려 건철(建哲)이라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자가 누구인지, 왜 이 시점에서 피로인을 송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어쨌든 이키 지역 역시 쓰시마·히젠 지역과 같이 14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피로인을 송환하고 있다.

25) 세키 슈이치는 이키 지역이 피로인을 송환하고 조선에 피로인 쇄환을 위한 통신관 파견을 요청하여, 조선과 독자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고 보고 있다(関周一, 위의 책, 「第五章 第二節 壱岐の領主と朝鮮王朝」). 그러나 왜 이키가 조선과 그러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26) 이에 대해서도 필자는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한윤희, 위의 석사학위논문). 이와 관련하여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行)는 태종 6~8년에 이상하게 송환이 격증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당시의 왜구 침구 상황과 결부시켜 “이 시기는 역시 조선왜구가 종언(終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田村洋行,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6, 75쪽)라고 말하고 있다. 즉, ‘피로인 송환의 횟수 감소=왜구 침구의 횟수 감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왜 태종 6~8년에 피로인 송환이 격증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 세키 슈이치는 1401년~14010년이 송환 건수(件數)의 피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역시 다무라처럼 왜구 침구의 감소(関周一, 위의 책, 32쪽)로 보고 있다. 물론 왜구의 침구 상황과 피로인 송환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만으로 피로인 송환의 피크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태종 6~8년을 전후로 하여 조선이 여진, 명, 일본과 어떠한 외교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당시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사절이 단순히 한일관계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것이 피로인 송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하기로 한다.

보고자 한다. 왜 피로인 송환이 1400년대에 들어와 대거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²⁷⁾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 1395년에 갑자기 규슈탐다이(九州探題)에서 해임된 이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당시 규슈의 정세와 연관 지어 검토하기로 한다.

3. 1400년대 피로인 송환자(=일본의 통교자)의 증가 배경

피로인 송환자는 당시 조선과 통교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피로인 송환을 계기로 조선과 통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²⁸⁾ 그렇다면 당시 쓰시마, 이키, 히젠 지역은 언제부터 몇 회에 걸쳐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였을까? 이를 140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²⁹⁾

[표5] 쓰시마(對馬)·이키(壱岐)·히젠(肥前)의 조선으로의 사절 파견(조선 태조~태종대)

시기(년)	쓰시마(對馬)	이키(壱岐)	히젠(肥前)	시기(년)	쓰시마(對馬)	이키(壱岐)	히젠(肥前)
태조원(1392)	0	0	0	태종6(1406)	2	6(5)	3
태조2(1393)	0	1(1)	0	태종7(1407)	2(1)	11(4)	3(2)
태조3(1394)	0	0	0	태종8(1408)	2(1)	4(2)	2(2)
태조4(1395)	0	0	0	태종9(1409)	3	7	4
태조5(1396)	0	0	0	태종10(1410)	2	5(1)	4(2)
태조6(1397)	1	1	0	태종11(1411)	4	3	1
태조7(1398)	1	0	1	태종12(1412)	11	2(1)	2
정종원(1399)	2	1	1(1)	태종13(1413)	15	5(1)	1
정종2(1400)	4	0	1	태종14(1414)	12(1)	2	1
태종원(1401)	6(2)	1	0	태종15(1415)	15	2(1)	1
태종2(1402)	1	3(2)	0	태종16(1416)	19	2	3
태종3(1403)	3	2(1)	1(1)	태종17(1417)	13	3	2
태종4(1404)	1	1	1	태종18(1418)	3	1(1)	1
태종5(1405)	3(1)	2	2	총 횟수	125(6)	65(20)	36(8)

※ 위의 표는 『朝鮮王朝實錄』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

※ () 안의 숫자는 피로인 송환 횟수를 가리킴.

쓰시마 지역은 태조 6년부터, 이키 지역은 태조 2년부터, 히젠 지역은 태조 7년부터 조선과 통교를 시작하고 있다. 조선과의 통교 시작 시기는 이렇게 제각각이지만 세 지

27) 이 특징에 대해서도 필자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한윤희, 위의 석사학위논문). 그러나 필자 역시 이러한 의문에 대해 기존 연구와 같이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규슈탐다이 이마가와 료순을 모방한 자들이 대거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한윤희, 위의 석사학위논문).

28) 関周一, 위의 책.

29) 본고에서는 '1400년대에 피로인 송환자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1400년을 중심으로 한 전후의 시기인 조선 태조(1392년)~태종대(1418년)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이후 세종대에 피로인 송환이 감소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고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역 모두 정종 원년(1399)을 전후로 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에 사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400년대에 들어와 이들 세 지역이 모두 피로인 송환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1399년을 전후로 하여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료에 주목하고 싶다.

(1) 정종 원년(1399) 7월 1일 소 사다시게(宗貞茂)의 서간과 쇼니 사다요리(少貳貞頼)의 치쿠젠(筑前) 슈고(守護) 환보(還補)

첫 번째 사료는 정종 원년(1399) 7월 1일 기사일에 대마도주(對馬島主) 소 사다시게(宗貞茂)가 쓰시마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음을 조선에 알리는 서간(書簡)이다. 서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료1]

일본국(日本國) 대마도(對馬島) 도총관(都總管) 종정무(宗貞茂)가 사자를 보내어 방물(方物)과 말 6필을 바쳤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중략)...바다와 육지에 관(官)의 법(法)이 미치지 못하여, 변방 백성들이 해마다 마음대로 적선(賊船)을 놓아 귀국(貴國) 연해(沿海)의 남녀를 노략질하고, 불사(佛寺)와 인가(人家)를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국조(國朝)에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토가 통일되어 바다와 육지가 평온하고 조용하여, 조정의 명령으로 엄하게 금하고, 인민들이 법을 두려워합니다. ㉡금후로는 귀국 사람의 배가 거리낌 없이 내왕하고, 연해의 사찰과 인가가 전처럼 아무 탈 없이 경영하게 되는 것이, 배신의 마음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이하 생략)"³⁰⁾

(※ 밑줄과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위 사료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고려 말 왜구의 실체에 대해 밝히고 있지만,³¹⁾ 왜 이 시기에 사다시게가 이 서간을 조선에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것은 국조(國朝)에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토가 통일되어 바다와 육지가 평온하고 조용하여, 조정의 명령으로 엄하게 금하고, 인민들이 법을 두려워합니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싶다. 사다시게는 고려 말에 침구한 왜구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데, 그는 공권력(公權力), 즉 막부(幕府)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그렇다면 소씨(宗氏)와 그의 상관인 쇼니씨는 언제부터 막부 편에 서게 된 것일까?³³⁾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마가와 료순은 1395년 윤7월 갑자기 규슈탄다이직에서 해임되

30) 『정종실록』 2권, 정종 원년 7월 1일 기사조.

31) 長節子, 「第一部 第二章 十四世紀後半の二度の政変」, 『中世日朝関係と対馬』, 吉川弘文館, 1987. 및 이영, 「여말 - 선초 왜구(倭寇)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쇼니씨(少貳氏)」, 『동북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등.

32) 이영, 위의 글, 168쪽.

33) 본고에서 살펴보는 것은 오에이 초기이고, 남북조기 쇼니씨의 군사활동, 특히 경인년 이후의 왜구의 침구와 관련해서는 이영,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제3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를 참조.

었다.³⁴⁾ 소 사다시게의 주군(主君)인 쇼니 사다요리(少弐貞頼)는 료순이 규슈탄다이에 서 해임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료순의 아래에서 치쿠젠(筑前) 슈고(守護)³⁵⁾로 활동하고 있었다.³⁶⁾ 즉 이때까지만 해도 쇼니씨는 막부 측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료순이 갑자기 규슈탄다이직에서 해임되자, 그를 따르던 규슈의 호족들이 다시 반(反) 막부 측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규슈의 내전(内戰)으로 이어지게 된다.³⁷⁾ 쇼니씨도 역시 이때부터 정치적 입장이 달라지게 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6] 시부가와 미쓰요리의 하카타 입성 이후 쇼니 사다요리의 정치적 입장³⁸⁾

기호	시기	내용	정치적 입장
㉠	1397년 9월 ~ 1399년 6월 7일	신(新) 탄다이 시부가와 미쓰요리의 하카타 입성으로 기쿠치씨와 함께 봉기	반(反) 막부
㉡	1401년 ~ 1403년	시부가와 미쓰요리 아래에서 치쿠젠(筑前) 슈고(守護)로 환보(還補)되어 활동	막부
㉢	1404년 1월 ~ 1404년 6월	차바씨(千葉氏) 내분에 개입하여 탄다이 측과 다시 격전	반(反) 막부

오에이(応永) 3년(1396) 새로운 탄다이인 시부가와 미쓰요리(渋川満頼)가 하카타(博多)에 입성하자, 다음 해인 오에이 4년(1397) 9월 쇼니 사다요리·기쿠치 다케토모(菊地武朝)가 이에 봉기(蜂起)하였다.³⁹⁾ 즉, 1397년 9월을 기점으로 쇼니씨는 반 막부 측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시기가 [표6]의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기인 1401년부터 1403년까지는 막부 세력으로서 시부가와 미쓰요리 아래에서 치쿠젠 슈고로 환보(還補)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후 1404년 1월부터 그가 줄거(卒去)하는 6월까지의 다시 반 막부 측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렇다면 사다요리는 ①언제, ②어떤 이유로 치쿠젠 슈고로 환보된 것일까? 우선 ‘②어떤 이유’에서 사다요리가 치쿠젠 슈고로 환보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에이의 난(応永の乱)’⁴⁰⁾이다. 다음의 두 번째 사료를 살펴보자.

34) 이마가와 료순의 규슈탄다이 해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川添昭二, 「第五 九州探題解任以後」, 『今川了俊』, 吉川弘文館, 1964.을 참조.

35) 쇼니씨는 삼전이도(三前二島)라 하여, 치쿠젠(筑前)·부젠(豊前)·히젠(肥前)과 쓰시마·이키 섬 지역의 슈고(守護)·지토(地頭)였고, 그의 부하인 소씨는 쓰시마의 슈고다이(守護代)였다(山口隼正, 『南北朝期九州守護の研究』, 文献出版, 1989).

36) 쇼니 사다요리(少弐貞頼)가 료순의 아래에서 치쿠젠(筑前)의 슈고(守護)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확실한 것만 시토쿠(至徳) 4년(1387) ~ 고오(康応) 원년(1390), 오에이(応永) 2년(1395)으로, 료순이 규슈탄다이직에서 해임되는 해까지는 명확히 막부 세력에 편입되어 있었다(本田美穂, 「室町時代における少弐氏の動向-貞頼・満貞期」, 『九州史学』 91, 1988).

37) 本田美穂, 위의 글.

38) 본 표는 『北肥前誌』 및 本田美穂, 위의 글에 의거한 것임.

39) 本田美穂, 위의 글.

40) ‘오에이의 난(応永の乱)’이란 남북조 시기부터 쇼군(將軍)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를 따르며 막부에 대해 여러 공을 가지고 있던 6개국(國)의 대(大) 다이묘(大名)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가 오에이 6년(1399)에 막부에 대해 일으킨 난이다. 난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松岡久人の 「応永の乱」(『大内義弘』, 人物往来社, 1966)을 참조.

(2) 정종 원년(1399) 7월 10일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의 서간과 오에이의 난(応永の乱)

오에이의 난이 일어난 것은 정종 원년(1399) 10월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전인 7월에, 그것도 위의 소 사다시게의 서간이 조선에 도착한지 9일이 지난 시점인 7월 10일 무인일에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가 조선에 서간⁴¹⁾을 보낸다. 필자는 요시히로가 왜 하필 이 시기에 조선에 서간을 보냈는지 주목하고 싶다. 또 사다시게와 비슷한 시기에 서간을 보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싶다. 요시히로 서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⁴²⁾

[사료2]

일본 좌경 대부(左京大夫) 육주목(六州牧) 의홍(義弘)이 구주(九州)를 쳐서 이기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또 그 공적을 말하였다. 임금이 의홍(義弘)에게 토전(土田)을 하사하고자 하다가,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권근(權近)과 간관(諫官)의 의논으로 그만두었다. ㉔의홍이 청하기를, "나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일본 나라 사람들이 나의 세계(世系)와 나의 성씨(姓氏)를 알지 못하니, 갖추어 써서 주시기를 청합니다."하고, 또 백제(百濟)의 토전(土田)을 청하였다...(이하 생략)⁴³⁾

(※ 밑줄과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오우치 요시히로는 ㉔과 같이 조선에 백제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세계(世系)와 토전(土田)을 요청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기존 연구는 몇 가지 추정을 했지만, 왜 이 시점에 요시히로가 갑자기 이와 같은 요청을 조선에 한 것인지, 특히 오에이의 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⁴⁴⁾ 필자는 이것이 바로 오에이의 난이 일어나

41) 『정종실록』 2권, 정종 원년 7월 10일 무인조.

42) 본 사료에 대해 기존 연구는 주로 오우치씨의 백제 선조 전승으로서의 초견(初見)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언급해 왔다(金羅喜, 「大内義弘の百濟先祖伝承の意義」, 『国文学研究ノート』 56, 神戸大学「研究ノート」の会, 2017. 주(2) 참조).

43) 위의 (41) 사료.

44) 스다 마키코는 이때 요시히로가 이러한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오에이의 난과의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조선으로부터 조선계(朝鮮系)의 일족(一族)임을 증명받음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경합할 세력(규슈탄다이 및 자신과 동등한 입장(=슈고(守護))에 있던 쇼니씨나 시마즈씨·오토모씨 등)에게 설명시켜 납득시키려고 한 의의를 갖고 있던 것이다.”(須田牧子, 「第四章 大内氏の先祖観の形成とその意義」, 『中世日朝関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2011.)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왜 하필 요시히로가 이 시점에, 그것도 막부 측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조선 정부로부터 자신이 조선계의 일족임을 증명받아 그것을 배후로, 내 배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명시하며 난을 위한 준비로 자신의 편에 다른 호족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삼거나, 적으로 하여금 함부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난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인 이 시점에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또 스다는 서계 요청의 추측으로 앞과 같이 주장한 것이고, 토전의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요시히로의 서간이 조선에 보내진 것이 오에이의 난 직전이라는 시점에 주목한 연구로는 金羅喜의 연구가 있다. 그는 요시히로가 외부(조선)의 권위를 이용해 쇼군 요시미쓰나 미나모토씨(源氏) 출신의 제 다이묘(諸大名)를 상대화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金羅喜, 위의 글). 그 예로 들고 있는 사료가 1398년 7월 및 1394년(金羅喜가 예로 든 사료 『難太平記』의 글에 나타난 오토모 치카요(大友親世)와 이마가와 료순의

기 3개월 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이 시기에 요시히로는 조만간 막부 측과 대결할 것임을 이미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다.⁴⁵⁾ 따라서 혹시나 모를 도피처 내지는 배후를 준비하기 위해 조선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요시히로가 이렇게 난의 준비를 하는 동안, 막부 역시 요시히로 토벌을 위한 준비를 했을 것이다.⁴⁶⁾ 그 준비를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막부에 적대 세력이었던 쇼니씨를 막부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막부는 ‘㉠언제’ 쇼니씨를 막부편, 즉 치쿠젠 슈고로 환보시킨 것일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쇼니씨는 이 오에이의 난을 계기로 치쿠젠 슈고로 환보된 것임은 확실하다.⁴⁷⁾ 그 환보 시기에 대해 혼다 미호(本田美穂)는 난이 끝난 1400년 이전, 1399년 말까지로 보고 있다.⁴⁸⁾ 그러나 필자는 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막부가 쇼니씨를 치쿠젠 슈고로 환보시켰을 것이라 생각한다.⁴⁹⁾ 이는 [사료1]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전술하였듯이 [사료1]에서 소 사다시게는 막부 측에 서서 왜구의 실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다시게의 주군인 쇼니씨가 치쿠젠 슈고로 복귀된 시점이 [사료1]의 서간이 조선에 도착한 정종 원년(1399) 7월 1일 이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좀 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표6]의 ㉠시기에 해당하는 1399년 6월 7일까지는 쇼니 사다요리가 확실히 반 막부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아, 6월 7일 이후부터 서간이 도착한 7월 1일 이전인 6월경에 치쿠젠 슈고로 환보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쇼니 사다요리는 정종 원년(1399) 7월 1일 이전인 6월경에 오에이의 난을 계기로 치쿠젠 슈고로 환보되었고, 자신의 상관과 함께 막부 세력 하에 들어가게 된 소 사다시게는 [사료1]과 같이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자신이 왜구를 금지할 것임을 조선 정부에 맹세하고 있다. 그리고 ㉠과 같이 앞으로 조선과 일본 간의 안전한 통교가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이 서간을 조선에 보낸 이후부터 [표5]와 같이 쇼니씨의 세력 하에 있는 쓰시마·이키·히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절을 파견하고 있다. 이처럼 공권력에 편입하게 된 이후의 자신만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사다시게의 서간과 대비적으로 [사료2]의 요시히로의 서간에서는 그 공권력에 토벌당할 위기감으로 인한 긴박감이 갑작스러운 세계와 토전의 요청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토 소환[上洛] 시기에 대해서는 堀川康史가 오에이 4년(1394) 중순으로 보고 있다(堀川康史, 「今川了俊の探題解任と九州情勢」, 『史学雑誌』 125-12, 2016.)인데, 이 예들은 요시히로가 조선에 서간을 보낸 시점과 1~5년이라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오에이의 난 직전 요시히로가 조선에 세계와 토전을 요청한 이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45) 이미 오에이의 난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398년 10월부터 쇼군 요시미쓰 측에서 ‘요시미쓰는 쇼니씨에게 요시히로 토벌을 명했다.’ 등의 소문을 유포시켰다(松岡久人, 위의 책).

46) 松岡久人, 위의 책.

47) 本田美穂, 위의 글.

48) 本田美穂, 위의 글.

49) 막부는 막부의 명(命)을 거스른 것(=반 막부)을 명분으로 삼아 요시히로를 토벌해야 했기에(요시미쓰가 오에이 4년(1397) 기타야마테이(北山第) 조영을 위한 토목공사에 제 다이묘의 무사를 사역시키려고 하였으나 요시히로가 이를 거절, 이후 요시미쓰의 상경[上洛]의 명을 채차 거부 등(위의 松岡久人の 책).), 반 막부였던 쇼니 사다요리를 미리 막부 세력으로 끌어들이 ‘막부(쇼니씨)가 반 막부(오우치씨)를 토벌’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쇼니 사다요리의 치쿠젠 슈고 환보는 오에이의 난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하며, [사료1]은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1]과 [자료2]는 동시기 급변하는 규슈의 정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1399년을 전후로 한 일본 규슈의 정세와 조선 통교의 추이(推移)에 대해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7]과 같다.

[표7] 1399년을 전후로 한 일본 규슈의 정세와 조선 통교의 추이(推移)

시 기	내 용
1395년 윤7월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 해임
1396년 4월	신 규슈탄다이 시부가와 미쓰요리(渋川満頼) 규슈(九州) 입성
1397년 9월	쇼니 사다요리(少弐貞頼)·기쿠치 다케토모(菊池武朝) 봉기
1398년 10월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 토벌 풍설(風說) 유포
1399년 6월경	쇼군 요시미쓰, 반(反) 막부였던 쇼니씨를 치쿠젠(筑前) 슈고(守護)로 환보(還補)시킴.
1399년 7월 1일	소 사다시게(宗貞茂), 조선에 서간 보내 왜구 금지 맹세
1399년 7월 10일	오우치 요시히로, 조선에 서간 보내 세계(世系)와 토전(土田) 요구
1399년 9월	쓰시마(對馬)·이키(壹岐)에서 조선에 사절 파견
1399년 11월	히젠(肥前)에서 조선에 사절 파견
1399년 10월~12월	일본에서 오에이의 난(応永の乱) 발생
1400년~	쓰시마·이키·히젠 등 일본에서 다수의 일본 통교자 도래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00년대부터 피로인 송환자=일본의 통교자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본장에서는 규슈의 정세 변화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두 가지 사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정종 원년(1399) 7월 1일, 새로운 쓰시마의 지배자가 된 소 사다시게는 왜구의 실체를 해명함에 있어 자신이 막부의 세력 하에 있음을 표명하는 서간을 조선에 보냈다. 사다시게가 이처럼 막부 측에 서게 된 데에는 그 해 10월에 있을 오에이의 난을 준비하기 위해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그의 주군인 쇼니 사다요리를 다시 치쿠젠의 슈고로 환보시킨 배경이 있었다. 때문에 자신의 주군과 함께 다시 막부에 편입하게 된 소씨가 당시 쇼군의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앞으로의 왜구 금지에 대한 자신감을 조선에 표명하였고, 이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조선과 일본 간의 안전한 통교를 바라고 있었다.

반면, 정종 원년(1399) 7월 10일, 사다시게의 서간과 9일 차를 두고 오우치 요시히로가 조선에 서간을 보낸다. 요시히로는 막부와의 대결을 앞두고 난의 준비를 위해 조선에 세계와 토전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서간이 조선에 온지 3개월이 지난 10월, 일본에서는 오에이의 난이 일어났고, 난은 그 해 12월에 막을 내린다. 그리고 그 다음 해(1400년대)부터⁵⁰⁾ 쇼니씨 휘하의 세력인 쓰시마·이키·히젠 지역의 통교자가 조선에 본격적으로 도래하였다. 따라서 정종 원년(1399)은 조선과 일본과의 통교에 있어서 획기(劃期)가 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50) 쇼니씨의 통교도 오에이의 난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이후인 태종 2년(『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5월 26일 무신조)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혼다도 지적하였는데, 이때 쇼니씨가 조선과 통교한 이유에 대해 규슈탄다이 시부가와 미쓰요리와의 경합때문이라고 하였으나(本田美穂, 위의 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빌어 논하기로 한다.

51) 스다 마키코(須田牧子)는 여러 연구자(佐伯弘次 등)들이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실각의 결과, 오우치

결론

피로인 송환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그다지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의 왜구 연구는 한국 사료에 일본 사료를 접목하여 고려 말 왜구의 실체가 당시 일본의 남북조 내란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왜구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로인 송환 연구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의 왜구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고려 말 왜구의 실체 중 하나인 쇼니씨, 그리고 그의 휘하 세력이었던 쓰시마·이키·히젠 지역의 피로인 송환에 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이들 세 지역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 ‘왜 1400년대부터 쓰시마·이키·히젠 지역에서 피로인 송환이 시작되었을까?’에 대해, 지금까지 관련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두 가지 서간과 규슈와의 정세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특히 이 두 서간이 왜 하필 그 시점에 조선에 보내져 왔을까에 대해 착목(着目)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필자는 이 두 사료가 정종 원년(1399)이 조일(朝日) 통교의 전환점(轉換點)이 되고, 또 왜 그러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종 원년(1399) 7월 1일, 소 사다시게(宗貞茂)가 조선에 보낸 서간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를 밝힐 수 있었다. 첫째, 사다시게의 서간으로 인해 당시 쇼니씨·소씨가 막부 세력 하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1400년대부터 그 권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지배지인 쓰시마·이키·히젠 지역에서 대거 조선 통교자가 도래한 것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조에 들어와 왜인 통교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조선이 항복한 왜인을 받아주고, 무역을 허가해주고, 관직을 주는 등, 조선 정부가 회유책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⁵²⁾ 그러나 아무리 조선이 위와 같은 회유책을 취하고 싶어도 일본

요시히로가 대조선 교섭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료순의 소환이 오우치씨의 대조(對朝) 관계상의 획기라는데 그치지 않고, “표4에서 명백해지듯이 일조(日朝)관계의 획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須田牧子, 위의 책, 52쪽). 그러나 그 예시로 든 ‘표4 14세기 후반 일본 제 세력의 고려·조선통교’의 일본에서의 통교자가 이마가와 료순이 규슈탄다이에서 실각한 1395년에서 불과 4년이 지난 1399년까지만 나타나 있고, 스다 본인이 지적하였듯이 료순의 실각 이후 “그때까지 료순에 의해 독점되고 있던 느낌이 들던 대조선 통교는 갑자기 활발화하여 통교자가 증가한다.”(須田牧子, 위의 책, 52쪽)라고 하였지만, 표4를 보면 료순의 실각 이전에도 통교했던 자들(시마즈씨, 오우치씨) 외에 새로운 통교자라고 할 만한 자는 새로운 규슈탄다이 시부가와 미쓰요리가 1회(1398년 12월), 쓰시마에서 2회(1398년 4월·1399년 7월), 히젠에서 1회(1398년 7월), 교토에서 1회(1399년 5월)가 전부이다. 그의 지적처럼 “갑자기 활발화하여 통교자가 증가”한 느낌은 그다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검토한 것처럼 적어도 1410년대까지의 통교자를 살펴본 결과, 오에이의 난을 기점으로 쇼니씨·소씨의 지배하에 있던 지역들이 대거 조선과 통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따라서 조일관계의 획기는 1399년을 전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2) 中村栄孝, 「室町時代の日鮮関係」, 『岩波講座 日本歴史』, 岩波書店, 1934 등.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연구 이후, 조선조에 들어와 통교자가 증가한 이유가 조선 정부의 회유책 때문이라는 의견이 학계에서 지배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한국사 통사에서도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조선 초기의 통교관계를 설명하고 있다(하우봉, 「4.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2003).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시 위와 같은 규슈의 정세 변화가 있었기에 조선 정부의 회유책이 왜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에서 조선을 왕래하기 위한 통교권, 즉 외교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의 실현 여부(與否)가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 말대부터 간헐적이지만 왜인에 대한 회유책이 실시되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조에 들어와 눈에 띄게 효과를 보게 된 것은 당시 규슈의 정세 변화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려 말까지는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권력에 의해 이들 지역이 조선과 제대로 통교하지 못하다가, 1395년 이마가와 료순이 규슈탄다이직에서 해임되고, 이후 규슈에 내전이 다시 발생, 오우치 요시히로가 료순에 이어 왜구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때 외교 문제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1399년 오에이의 난을 계기로 쇼나·소씨가 막부의 세력 하에 들어가면서 쓰시마 소씨, 이카·히젠 지역의 마쓰라토(松浦党)들이 조선과의 통교에 일제히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따라서 1399년은 조선과 일본과의 통교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오에이의 난(応永の乱)을 앞두고 소 사다시게의 주군(主君)인 쇼니 사다요리(少弐貞頼)가 치쿠젠(筑前) 슈고(守護)로 환보(還補)되었는데, 이 사다시게의 서간으로 인해 그 환보 시기를 난이 일어나기 전인 1399년 7월 1일 이전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비정(比定)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료는 정종 원년(1399) 7월 10일,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가 조선에 보낸 서간이다. 이 사료를 통해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사료 역시 사다시게의 서간처럼 왜 이 시점에 요시히로가 조선에 서간을 보냈을까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요시히로는 막부와 대결을 앞두고 난을 위한 배후, 내지는 도피처로 조선을 택해 세계(世系)와 토전(土田)을 요구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지금까지 기존 연구는 오우치 요시히로,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 심지어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까지도 그들의 대(對) 고려·조선 통교를 오로지 무역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 서간이 보내진 시점을 기준으로 요시히로가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오우치씨의 대 고려·조선 통교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군사·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규슈의 정세 변화가 조일(朝日) 간의 통교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피로인 송환 연구는 반드시 당시 일본 국내의 정치·군사·외교적 변화까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北肥前誌』

2. 논문

박경남, 「이영(李頌)의 왜구 주체 논쟁과 현재적 과제」, 『역사와 비평』, 통권 제122호, 역사비평사, 2018.

손흥렬, 「麗末鮮初被倭俘虜의 刷還」, 『사충』 19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75.

이수열, 「왜구론의 행방 : ‘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1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이영,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우왕 2년(1377)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 역사연구』, 제24집, 일본사학회, 2006.

_____, 「고려 말 왜구와 남조-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31집, 한일관계사학회, 2008.

_____,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쇼니 요리히사(少弐頼尚)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제2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9.

_____,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제3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_____, 「여말 - 선초 왜구(倭寇)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쇼니씨(少貳氏)」, 『동북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정영현, 「여말선초 倭寇 被虜人의 쇄환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39권, 부경역사연구소, 2016.

하우봉, 「4.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한윤희, 『여말·선초 피로인(被虜人) 송환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_____, 「여말선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고찰 - 〈今川了俊의 송환 배경=‘경제적 수익 목적’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日本研究』 제36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_____, 「조선 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의 〈해구(海寇)에서 해상(海商, =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을 중심으로-」, 『군사』, 제11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秋山謙蔵, 「室町初期に於ける九州探題の朝鮮との通交」, 『史学雑誌』 42-4, 1931.

_____, 「朝鮮人及び支那人の送還と貿易の展開」,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1939.

石原道博, 「倭寇と朝鮮人俘虜の送還問題(一)·(二)」, 『朝鮮學報』 10, 1956.

金羅喜, 「大内義弘の百濟先祖伝承の意義」, 『国文学研究ノート』 56, 神戸大学「研

究ノート」の会, 2017.

中村栄孝, 「室町時代の日鮮関係」, 『岩波講座 日本歴史』, 岩波書店, 1934.

堀川康史, 「今川了俊の探題解任と九州情勢」, 『史学雑誌』, 125-12, 2016.

本田美穂, 「室町時代における少弐氏の動向-貞頼・満貞期」, 『九州史学』 91, 1988.

3.저서

이영, 「제1부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 『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2015.

長節子, 「第一部 第二章 十四世紀後半の二度の政変」, 『中世日朝関係と対馬』, 吉川弘文館, 1987.

川添昭二, 「第五 九州探題解任以後」, 『今川了俊』, 吉川弘文館, 1964.

_____, 「九州探題・河川満頼・義俊と日朝交渉」, 『対外関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1996.

須田牧子, 「第四章 大内氏の先祖観の形成とその意義」, 『中世日朝関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2011.

関周一, 「第一章 被慮人の境遇と送還」・「第五章 第二節 壱岐の領主と朝鮮王朝」,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田中健夫, 「第一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東アジア通交圏と国際認識』, 吉川弘文館, 1997.

田村洋行,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6.

松岡久人, 「応永の乱」, 『大内義弘』, 人物往来社, 1966.

山口隼正, 『南北朝期九州守護の研究』, 文献出版, 1989.

【토론문 3】

「조선 태조~태종대 쓰시마(對馬)·이키(壱岐)·히젠(肥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1400년대 피로인 송환자(=일본인 통교자)의 증가
배경과 관련하여-」에 대한 토론문

한문중(전북대학교)

이 논문은 1400년을 전후하여 쓰시마, 이키, 히젠지역에서 피로인 송환이 시작되는 배경을 일본 규슈지방의 정세와 연결지어 고찰한 것이다. 특히 정종 원년 7월 기사(1)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宗貞茂)의 서계와 동년 7월 무인(10) 오우치 요시히로(大內義弘)의 서계를 분석하여 1399년이 조일통교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소 사다시게의 주군인 쇼니 사다요리(小二貞頼)가 치구젠 슈고(筑前守護)로 환보된 시기를 오에이의 난(應永의 亂)이 일어나기 전인 1399년 7월 이전으로 비정하였다. 또한 오우치 요시히로(大內義弘)가 서계를 보낸 배경을 막부와의 대결을 앞두고 난을 위한 배후 내지는 도피처로 조선을 택해 世系와 土田의 하사를 요청하였으며, 오우치의 대조선통교는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군사,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쓰시마, 이키, 히젠지역의 피로인의 송환을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규슈지역의 정세와 연결지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토론자는 한윤희 선생님의 발표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나 보충할 내용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표3> 쓰시마, 이키, 히젠지역의 피로인 송환 일람표에서는 지역별 송환 연월일과 송환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피로인의 송환 규모도 같이 제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한 태조~세종대까지 전체 피로인의 송환 규모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쓰시마, 이키, 히젠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해주면 이 시기 피로인의 송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표3>에서 쓰시마, 이키, 히젠지역의 피로인 송환을 표로 정리하였는데, 이키와 히젠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일본국기」 一岐島에는 ‘일기도는 시사(志佐), 사시(佐志), 요부코(呼子), 카모치(鴨打), 시오츠루(鹽津留)가 分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呼子遠江守 源瑞芳, 鴨打三川守 源傳, 志佐殿 등을 일기도 지역의 피로인 송환자로 분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源瑞芳은 呼子遠江守, 朗句餘太守及呼子津遠江守, 遠州太守를 의 직칭을, 源傳은 鴨打三川守, 下松浦三河守의 직을 칭하면서 통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들은 규슈 히젠지역에 거

주하면서 이키지방을 관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4쪽에서 피로인 송환, 피로인 쇄환을 구분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송환’이고 어떤 경우가 ‘쇄환’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태조~세종대까지 피로인의 송환과 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개관해주면 좋지 않을까?

넷째, <표2>에서 치쿠젠(筑前) 지역의 피로인 송환이 19회로 매우 많은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표5>에서 쓰시마, 이키, 히젠지역의 조선으로의 사절 파견 횟수를 정리하고 있는데, 치쿠젠지역을 비롯한 규슈지방의 사절 파견 횟수도 제시해주어야 이 시기 일본의 통교 추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여섯째, 기타 용어의 문제이다. 먼저 정종 원년 7월 1일에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宗貞茂)의 서간, 동년 7월 10일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의 서간 등에서 ‘서계’ 대신에 ‘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논문에서 ‘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1400년대는 1400년부터 1499년까지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2부

【제4발표】

바다의 역사와 일본 근세국가론 :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이수열(한국해양대학교)

-
1. 방법론의 시대
 2. 왜구론의 궤적
 - 1) 다나카 다케오의 왜구 연구
 - 2) 바다의 평화령
 3. 동아시아해역 속의 통일권력
 - 1) 왜구적 상황
 - 2) 통일권력과 동아시아
 4. 자립이라는 환상
 - 1) 감합 문제
 - 2) 역사와 역사가들

【제4발표】

바다의 역사와 일본 근세국가론 :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이수열(한국해양대학교)

1. 방법론의 시대

1976년 일본의 사회경제사학회 대회의 공통논제는 ‘새로운 에도 시대사상을 찾아서(新しい江戸時代史像を求めて)’였다. 이 대회에서 논의를 주도한 경제사학자 하야미 아키라(速水融)는 당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에도시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주제로 떠올릴까? 언젠가 여론조사라도 해 보고 싶지만, 빈곤과 착취의 사회, 의리와 인정의 세계, 쇠국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대세로부터 뒤쳐진 시대 등등, 요컨대 근대화의 입장에서 극복하고 부정되어야 할 마이너스 요소가 더덕더덕 늘어설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에도시대는 어떻게 생각한들 근대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근대사회가 아니므로 유럽사의 관점에서 재단하여 봉건사회라고 말해서는 지나치게 유럽중심사관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너무나도 강력한 이 오염을 어떻게든 뿌리치도록 노력해야 한다.¹⁾

하야미가 극복하려는 유럽중심사관이란 구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그에 입각한 패전 이후 일본의 역사학을 의미한다. 하야미는 그 뒤 역사인구학(historical demography)에 의거해서 ‘전후역사학’과 대결하여 종래 “빈곤·착취·쇠국이라는 부정적인 키워드로 덧칠해져” 온 근세 일본을 “세계사적으로 볼 때, 오로지 국내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간의 태평성대를 배경으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성숙을 이룬 매우 드문 예”²⁾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의 역사학계는 방법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기적’과 ‘경제대국’ 일본.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서구 근대의 사양. 여기에 전후 의식의 풍화가 더해져 그때까지 일본의 역사학계를 견인해온 마르크스주의나 시민사회파 계열의 역사학은 점차 발언권을 상실해갔다. 전후 40년이 지나 역사학에서도 한 시대가 저물고 있었던 것이다. 가노 마사나오(鹿野政直)는 당시 역사학

1) 速水融, 「歴史のなかの江戸時代」, 速水融 편, 『歴史のなかの江戸時代』, 藤原書店, 2011, 37쪽. 원저(東洋經濟新報社) 출간은 1977.

2) 하야미 아키라, 조성원·정안기 역, 『근세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역사인구학으로 본 산업혁명 VS 근면혁명』, 해안, 2006, 10쪽. 원저 『近世日本の經濟社會』(麗澤大學出版會) 출간은 2003.

을 둘러싼 상황을 표현하여 “이는 ‘전후’라는 과제를 짊어지고 때때로 그것을 부적으로 삼아온 전후역사학이 과제의 변질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음을 의미한다”³⁾고 말했다. 하야미의 문제제기는 이러한 방법론의 시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야미가 제출한 새로운 근세 역사상은 인구와 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가는 ‘경제사회’로서의 에도시대였다. 그 사회는 시장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이 인구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순환적 경제사회였다. 하야미는 이러한 “대중사회 상황” 속에서 일본 “근대화”⁴⁾의 원형을 발견함으로써 에도시대를 근대 이후의 산업화의 요람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방법론의 시대를 거친 뒤 에도 시대상은 크게 변모했다. 봉건적 수탈, 전제 권력, 농민 봉기 등은 근면혁명, 에콜로지, 화려한 소비도시의 이미지로 변해갔는데, 그 중에는 기토 히로시(鬼頭宏)의 예처럼 친환경적인 “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한 “도쿠가와 문명”에서 “탈근대사회의 힌트”⁵⁾를 구하려는 문명론적 일본 근세사 연구도 출현했다.

부정적인 근세 역사상에 이의를 표명하고 에도사회의 변영 안에서 근대화의 계기를 발견하려는 문제의식은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었다. 근세 대외관계사 분야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쇄국과 관련된 평가였다. 근대 이후 쇄국은 일본의 근대화를 지연시킨 ‘비극’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를 들어 이와오 세이이치(岩生成一)는 1966년에 발표한 한 책에서 쇄국의 이해득실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쇄국을 전기로 일본인의 세계인식이 크게 축소되고, “크리스트교를 매개로 하여 도입되기 시작한 유럽의 합리적 정신의 싹이 잘리는 결과”⁶⁾를 초래한 사실을 안타깝게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쇄국 인식은 이후 크게 변모한다. 변화를 추동한 대표적인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는 에도시대의 “국제관계”의 실태를 부정하는 쇄국 담론을 “역사에 대한 모독” 또는 “사고 정지”⁷⁾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세 일본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그로써 평화 속에서 완만한 발전과 진보를 달성”한 사회였고, 그것이 메이지유신 이후의 “급속한 근대화의 기초”⁸⁾가 되었다는 것이 아라노의 생각이었다. 쇄국 담론은 에도시대에 존재한, “동시대의 유럽 못지 않은 풍족함, 사람들의 올바른 인간성, 번영하는 사회와 문화”⁹⁾를 무시하는 논의로서, 이런 점에서도 쇄국이란 말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¹⁰⁾ 것이었다.

3) 鹿野政直, 『「鳥島」は入っているか: 歴史意識の現在と歴史學』, 岩波書店, 1988, 28쪽.

4) 速水融, 앞의 논문, 『歴史のなかの江戸時代』, 『歴史のなかの江戸時代』, 49-51쪽. 하야미의 역사학에 관해서는 이수열, 『「아시아 교역권론」의 역사상: 일본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8, 2014.

5) 鬼頭宏, 『文明としての江戸システム』(日本の歴史 19), 講談社學術文庫, 2010, 14-15쪽. 원저 출간은 2002.

6) 岩生成一, 『鎖國』(日本の歴史 14), 中公文庫, 1974, 491-492쪽. 원저 출간은 1966.

7) 荒野泰典, 『「鎖國」を見直す』, 岩波書店, 2019, 123쪽.

8) 같은 책, 118쪽.

9) 같은 책, 44쪽.

대외관계사 연구에 보이는 근세 역사상의 변화는 비단 쇄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었다. 아라노가 제창한 ‘일본형 화이질서’나 ‘4개의 입구’는 모두 쇄국론의 수정과 연동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논의를 통해 근세 일본의 역사상은 종래의 침략과 고립에서 벗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지역 구상과 적극적인 교역의 시대로 변모해갔다.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방법론의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었던 국민국가 패러다임 비판 및 유럽중심주의 극복과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가 제창한 ‘바다의 역사’였다.

바다의 역사는 원래 왜구 연구를 위해 제안된 것이었다. 왜구의 활동을 “동아시아 연해지역을 무대로 하는 해민집단의 일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다나카는 왜구를 “일본사의 문제라기보다 동아시아 혹은 세계사의 문제”¹¹⁾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육지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와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바다 중심의 역사관을 도입”¹²⁾할 때 비로소 왜구의 실상이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바다의 역사는 이처럼 새로운 왜구상 정립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제출된 이론이었다. 다나카는 이후 왜구 집단의 다민족 구성을 강조함으로써 동아시아 통교권의 한 주체로서 왜구를 자리매김했다.¹³⁾

패전 이후 일본의 왜구 연구에서 다나카가 미친 영향력은 지대했다. 일본 대외관계사 분야의 “전후 연구자 제1호”¹⁴⁾로 자부하던 다나카의 연구는 비단 왜구에 그치지 않고 중근세 대외관계사 전반에 골고루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아라노 야스노리 또한 다나카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아라노의 쇄국론 비판은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의 대군외교체제론(大君外交體制論)과 함께 다나카의 연구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었다.¹⁵⁾

왜구의 다민족성을 강조하는 다나카의 주장은 그 뒤 왜구의 민족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과 중국 학계의 비판은 주로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해 일본 학계는 한중 학계의 ‘민족주의’를 초월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등, 논쟁은 생산적인 전개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국내 학계의 상황은 달랐다. 바다의 시좌를 거쳐 탄생한 동아시아 통교권의 한 주체로서의 왜구상은 단지 왜구에 대한 평가를 넘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권력, 더 나아가 근세국가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다. 이를 이끈 것은 다나카의 연구를 계승한 차세대 연구자들이었는데, 아라노와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그 대표 주자들이었다.

10) 같은 책, 107쪽.

11) 田中健夫, 『倭寇: 海の歴史』, 講談社學術文庫, 2012, 3쪽. 원저(教育社) 출간은 1982.

12) 같은 책, 5쪽.

13) 田中健夫,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朝尾直弘 외 편, 『日本の社會史 I: 列島内外の交通と國家』, 岩波書店, 1987. 당시 일본의 학문 상황에서 다나카의 연구가 갖는 의미에 관해서는 윤성익, 「21세기 동아시아 국민국가 속에서의 倭寇像」, 『명청사연구』 23, 2005.

14) 田中健夫, 「對外關係史研究の課題: 中世の問題を中心に」, 『對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 吉川弘文館, 2003, 31쪽.

15) 荒野泰典, 「近世國際關係論と私: 立教の二七年」(荒野泰典先生最終講義), 『史苑』 73권 1호, 2013, 53-54쪽.

이 논문의 목적은 바다의 역사가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에 가져온 변화를 근세국가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근세국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아니라, 근세 대외관계사에 대한 사학사적 접근을 통해 역사상의 변화와 연속을 살피고, 거기서 나아가 동아시아 해역사의 현주소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바다의 역사가 초래한 왜구상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그것이 통일권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미친 영향을 개관한 뒤, 오늘날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가 제시하는 근세 역사상과 그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¹⁶⁾

2. 왜구론의 궤적

1) 다나카 다케오의 왜구 연구

근대 일본에서 왜구상의 변화가 국가의 대외정책과 궤를 같이 해온 점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다.¹⁷⁾ 그에 따르면 왜구는 일본인의 해외발전이나 민족성을 설명하는 좋은 소재로 이용되었는데, 다나카 다케오는 그러한 연구를 “국력 발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국책 추진의 입장”¹⁸⁾에서 이루어진 왜구 연구라고 정리했다. 왜구를 “해외발전의 선구”¹⁹⁾로 칭송하는 현상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16세기 왜구에서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한 사실은 일본의 해외 발전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걸림돌이 됐지만, 그것도 “首魁로 활약한”²⁰⁾ 일본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왜구 서사가 패전 이후 불가능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회고하는 시대 분위기는 왜구를 역사 연구의 전면에서 퇴장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후 왜구 연구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단편적으로 거론될 뿐이었다. 전시 하 왜구의 본체가 일본인이었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사기를 진작한 적이 있는 중국사 연구자 이시하라 미치히로(石原道博)는²¹⁾ 패전 후 이전의 견해를 뒤엎고 일본인의 수적 열세를 이유로 들어 일본의 수동성을 강조했다.²²⁾ 나카무라 히데타카는 왜구 발생의 배경으로 남북조내란 시기 “무원리한 이해타산에 終始하고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던”²³⁾

16) 이 논문에서는 ‘근세국가론’이라고는 해도 17세기 이후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못했다. 이는 별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17) 윤성익, 「戰前・戰中期 日本에서의 倭寇像 構築」, 『한일관계사연구』 31, 2008; 김보한, 「근대 이후 일본의 ‘해양세력권’과 동아시아 해양 인식의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18) 田中健夫, 「倭寇の變質と日鮮貿易の展開」,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9, 1쪽.

19) 木宮泰彦, 『日本民族と海洋思想』, 刀江書院, 1942, 148쪽.

20) 같은 책, 100쪽. 이 점은 아키야마 겐조(秋山謙藏)도 마찬가지였다. 아키야마는 16세기 왜구에서 “일본이 지도한 支那人이 전체의 7할을 차지”한 사실에서 오히려 “역사를 관통하는 일본인의 강인한 활력과 지나인의 변함없는 국민성”을 발견했다. 秋山謙藏, 『歴史と現實』, 創元社, 1940, 177-178쪽.

21) 윤성익, 앞의 논문, 「戰前・戰中期 日本에서의 倭寇像 構築」.

22) 石原道博, 『倭寇』, 吉川弘文館, 1964.

서국 방면의 형세를 드는 등, “왜구를 일본 국내의 군사 및 정치 정세와는 전혀 관계없는, 오로지 무역이나 경제의 문제로만 귀결”²⁴⁾시킴으로써 왜구의 국지성과 경제적 동기를 강조했다.

왜구의 수동성, 국지성, 경제적 동기 등을 강조하는 논의는, 역사적 평가의 측면에서 보면, 소극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나카가 “중세 해적사 연구”에서 전후를 “低迷 모색의 기간” 또는 “정리 재출발의 시기”²⁵⁾로 자리매김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 연구자가 바로 다나카였다. 그는 1961년에 발표한 『倭寇と勘合貿易』²⁶⁾에서 그때까지 각 연구자의 관심 영역이나 시대에 따라 파편화되어 있던 왜구 연구를 정리하고 체계화했다.²⁷⁾

먼저 다나카는 왜구가 “순수하게 일본인만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²⁸⁾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것이 후일 ‘왜구=일본인·조선인 연합설’로 이어져, 삼도 왜구설과 함께, 한일 학계에서 큰 논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다나카는 14-15세기 왜구와 16세기 왜구를 구분했다. 이는 종래 13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왜구를 한 묶음으로 논하는 학계 상황을 의식한 것이었다. 다나카는 왜구 활동을 이렇게 두 시기로 구분한 뒤, 14-15세기 왜구에서는 약탈을 위한 침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말하며, 그 원인으로 삼도(三島)의 물리적 환경을 지목했다. 이런 주장이 왜구 발생의 국지성과 경제적 동기를 강조한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견해를 이어받은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16세기 왜구는 밀무역 혹은 상업적 성격이 강한 “동아시아의 변형적 무역 형태”의 하나로서, 거기에서 일본은 “근거지와 구성원을 제공”²⁹⁾하는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런 평가가 이시하라 미치히로의 전후의 견해와 결을 같이 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왜구를 “찬란한 해외 발전”³⁰⁾의 역사와 결부시키는 것을 지양하는 다나카의 서술은 최대한 평가를 자제하며 선학의 업적을 수용하여 담담하게 왜구를 묘사할 뿐이었다. 그러나 바다의 시좌를 도입한 1982년의 작품 『倭寇：海の歴史』에는 그 뒤의 왜구 연구의 전개를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다나카는 먼저 14-15세기 왜구와 16세기 왜구의 연속성을 다시 한 번 부정하고 “일본인의 죄악사의 한 페이지”³¹⁾인 전자와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후자를 구분했다.

23) 中村榮孝, 「十三・四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52쪽.

24) 이영, 『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일본 근대 정치의 학문 개입과 역사 인식』, 에피스테메, 2015, 37쪽. 나카무라의 왜구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한윤희, 「조선 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의 〈해구(海寇)에서 해상(海商)= 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을 중심으로」, 『군사』 118, 2021.

25) 田中健夫, 「中世海賊史研究の動向」, 앞의 책,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283쪽.

26) 田中健夫, 村井章介 편, 『増補 倭寇と勘合貿易』, ちくま學藝文庫, 2012. 원저(至文堂) 출간은 1961.

27) 다나카의 왜구론에 관해서는 이수열, 「왜구론의 행방: ‘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해항도시 문화교섭학』 21, 2019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론 상 강조할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28) 田中健夫, 村井章介 편, 앞의 책, 『増補 倭寇と勘合貿易』, 21쪽.

29) 같은 책, 210쪽.

30) 같은 책, 8쪽.

그런 뒤 14-15세기 왜구에 고려 천민 계급이 가담한 사실을 근거로, 진봉선 무역의 단절과 함께, 고려의 국내 정치 상황의 혼란을 왜구 발생의 주요한 한 원인으로 들었다. 한편 16세기 왜구 발생의 “온상”³²⁾으로 다나카가 지목한 것은 명의 해금정책이었다. 여기에 포르투갈 세력의 진출도 한 원인이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다나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왜구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국내 사정을 모체로 하여 국제관계의 모순”³³⁾ 속에서 발생한 다민족 해민집단의 일대 운동이라는 결론이었다. 왜구가 일국사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사 혹은 세계사의 문제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왜구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발생한 다민족 해민집단의 운동으로 파악하는 다나카는 이후 왜구를 동아시아 통교권의 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했다.

동아시아에는 명제국의 건국을 계기로 화이질서에 입각하는 새로운 통교권이 성립했다. 표면적으로는 **국왕통교의 시대**(강조는 원문, 이하도 마찬가지: 인용자)를 가져왔지만 국제교류의 실체는 국가·민족이나 주종관계에 제약받는 일이 적은 **자유의 민**이 담당하고 있었다. 자유의 민 안에는 왜구에서 전향한 사람이나 왜구에 의한 피로인도 많이 섞여 있었다.³⁴⁾

다나카는 그 뒤로도 전근대 동아시아 통교권을 고찰할 때 국경관념이 때때로 장애가 되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의 면 혹은 경계 영역의 면에서”³⁵⁾ 자유의 민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2) 바다의 평화령

자유의 민으로서의 왜구는 방법론의 시대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왜구상이었다. 다나카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다의 역사는 1980년 전후의 학문 상황,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경의 재인식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지역의 인식”³⁶⁾ 위에서 도입된 방법론이었다. 당대 일본 학계에서는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 등을 중심으로 지역, 바다, 공간, 비정주민 등의 시점을 통한 국가-국경 상대화 작업이 정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나카의 자유의 민이나 쓰카모토 마나부(塚本學)가 말하는 “왜구 세계”³⁷⁾는 모두 그러한 학계 상황을 의식하며 제창된 것이었다.

같은 시기 ‘지역’을 방법으로 해서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사”를 모색하고 있던 무라이 쇼스케도 그런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무라이가 볼 때 13세기 무렵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15세기에 성숙기를 맞이하는 “환중국해 지역 (R₂)”의 인민, 즉 “서부 일

31) 田中健夫, 앞의 책, 『倭寇』, 24쪽.

32) 같은 책, 111쪽.

33) 같은 책, 3쪽.

34) 田中健夫, 앞의 논문,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日本の社會史 I』, 179쪽.

35) 田中健夫, 「後記」, 『東アジア通交圏と國際認識』, 吉川弘文館, 1997, 275쪽.

36) 田中健夫, 앞의 논문, 「對外關係史研究の課題」, 『對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 22쪽.

37) 塚本學, 「日本史は特異なのか」, 『歴史學研究月報』 248, 1980.

본뿐 아니라 江南에서 山東반도, 조선반도 남부에 걸친 대륙연해부”에 분포하는 “해양민적 성격이 농후한 사람들”³⁸⁾은 국가의 지배에 포섭되지 않는 지역의 논리를 체현하는 존재들이었다. 무라이는 이 연해민들의 귀속의식을, 다나카가 제시한 고려 천민 계급의 왜구 가담 등의 사례를 통해 밝히려 했는데,³⁹⁾ 이러한 작업이 후일 왜구 경계인설로 이어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아시아 연해부에 분포하는 해양민을 매개로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사를 구상하는 무라이에게 다나카가 제기한 왜구 다민족설이 “충격적인 견해”⁴⁰⁾로 받아들여진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과 국가의 상극을 논하고 ‘중세적 자립’을 좇으면 좇을수록 자유의 민으로서의 왜구상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지역에 대한 왜구의 귀속의식과 그들이 자행한 폭력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동일 지역의 다른 인민과 왜구의 반목과 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 지배로부터의 자립이 그 뒤 침략전쟁으로 귀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들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왜구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침략전쟁을 주도한 통일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종합되지 않은 채 병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런 점에서는 전전의 연구가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있었다. 왜구와 전국다이묘의 “해외 발전”을 논한 뒤 그러한 “지방적·사적 발전 형태를 공적·국가적 발전 형태로까지 승화시킨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⁴¹⁾라는 기미야 야스히코(木宮泰彦)의 설명은 역사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명쾌했다. 이에 비해 중세적 자립과 침략전쟁의 병존은 ‘밝은 중세’와 ‘어두운 근세’가 각기 따로 존재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지키 히사시(藤木久志)가 1985년에 발표한 『豊臣平和令と戦國社會』⁴²⁾는 양자를 가교하는 돌파구가 되었다. 후지키는 서문에서 히데요시의 군사적 강압성이나 권력의 전제적 성격만을 강조하여 “밝은 중세 촌락의 무력함이나 土一揆의 패배를 아쉬워하고 근세 사회로의 역사의 暗轉”⁴³⁾을 이야기하는 학계 상황에 강한 의문을 표명했다. 실제로는 히데요시에 의해 멸망한 전국다이묘는 호조(北條) 씨 단 한 명에 불과했고, 그런 점에서 惣無事令은 “법에 의한 평화”, 즉 “재판권 집행과 평화 침해의 회복을 위한 강제력”⁴⁴⁾이었다는 것이 후지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전의 연구, 예를 들어 후지키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대상을 국가적 폭력의 집중이나 공의(公儀)의 독점으로 보는 나가하라 게이치(永原慶二)⁴⁵⁾의 생각과는 거의 대극에 있는 평가였다.

도요토미 평화령이 바다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히데요시가 1588년에 발표한 해

38) 村井章介, 「中世日本列島の地域空間と國家」,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121-122쪽.

39) 같은 논문, 131쪽.

40) 村井章介, 「解説」, 田中健夫, 앞의 책, 『倭寇』, 257쪽.

41) 木宮泰彦, 앞의 책, 『日本民族と海洋思想』, 153쪽.

42) 藤木久志, 『豊臣平和令と戦國社會』, 東京大學出版會, 1985.

43) 같은 책, ii-iii쪽.

44) 같은 책, vii쪽.

45) 永原慶二, 『日本の中世國家』, 日本放送出版協會, 1980.

적정지령을 후지키가 ‘바다의 평화령’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해적정지령의 궁극적인 목적 내지 초점은 명일 간의 감함무역(勘合貿易) 부활을 위한 “자주적인 조건 정비”⁴⁶⁾에 있었다. 당시 중국 연안을 공격하던 ‘渡唐賊船’의 도항을 사전에 막아 감함무역 재개를 위해 “불가결한 전제 조건”⁴⁷⁾이었던 왜구선의 규제를 실현하는 것이 히데요시의 목적이었고, 그런 점에서 해적정지령은 총무사령과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후지키의 결론이었다. 도요토미 평화령은 그때까지의 권력관을 “180도 전환”⁴⁸⁾시킨 것으로서, 해적정지령에 대한 평가도 그것을 해외 무역 독점과 “정권 주도의 물류” 구축을 위한 “환경 정비”⁴⁹⁾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이해와 크게 상충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토미 평화령은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갔다. 아라노 야스노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을 둘러싼 ‘평화’ 영역은 1588년(天正 16) 이후의 해적정지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교 기반 구축에 의해 형성되었다. 해적정지령의 특징은 국내선·외국선에 대한 국내 해적 행위뿐만 아니라 왜구적 활동도 시야에 넣은 전국적인 금령인 점, 다이묘들에게는 해적의追捕 책임과 권한만을 부여하고 처벌 권한은 도요토미 정권이 독점한 점, 일본에서의 자유로운 통교·무역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명과의 ‘감함’ 부활도 시야에 넣고 있었던 점, 이 금령이 이국인들에게는 매매 자유의 보장으로 받아들여진 점 등이다. (중략) 여기서 ‘평화’ 영역의 ‘설정’이 아니라 ‘형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일정권의 이 정책이 단지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왜구적 상황 속에서 동중국해역의 통교·무역에 관한 여러 국가인민들의 ‘평화’를 향한 希求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⁵⁰⁾

동아시아 통교권의 한 주체로서의 왜구상, 여기에 평화로운 교역 질서의 보호자로서의 통일정권론이 더해져 동아시아 지역사는 새로운 전개를 보이게 된다.

3. 동아시아해역 속의 통일권력

1) 왜구적 상황

다나카에 의해 새로운 왜구상이 출현하기 이전, 아라노 야스노리는 주로 17세기 이후의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였다. 그의 데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近世日本と東アジア』⁵¹⁾에 수록된 논문들만 보아도, 그것들은 대군외교체제, 근세 중기의 밀무역

46) 藤木久志, 앞의 책, 『豊臣平和令と戦國社會』, 230쪽.

47) 같은 책, 229쪽.

48) 池上裕子, 「學術文庫版あとがき」, 『織豊政權と江戸幕府』(日本の歴史 15), 講談社學術文庫, 2009, 366쪽. 원저 출간은 2002.

49) 本多博之, 『天下統一とシルバーラッシュ: 銀と戦國の流通革命』, 吉川弘文館, 2015, 125쪽.

50) 荒野泰典, 「長崎口の形成」, 加藤榮一 외 편, 『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 校倉書房, 1989, 394-396쪽.

51)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88.

문제, 표류민 송환체제, 메이지 유신 시기의 일조외교체제 등을 논한 것으로, 대부분 17세기 이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왜구 활동이 극에 달했던 16세기부터 히데요시 정권의 등장, 조선침략 등의 시기는 그의 대외관계사 연구에서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나카의 왜구 연구와 조우함으로써 크게 변화했다. 후일 아라노가 대학을 물러나면서 행한 기념강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건으로 가득한” 다나카의 작품 『倭寇』는 왜구 이미지를 “언어화하는 데 유력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왜구가 수행한 역사적 역할을 확정”⁵²⁾하는 데도 결정적인 시사를 제공했다.

1987년의 한 논문에서 아라노는 16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걸친 통교망에서 발생한 일련의 변화 과정을 “왜구적 상황”⁵³⁾이라고 명명했다. 이 통교망에서는 마카오, 타이완, 필리핀을 거점으로 중국인, 일본인, 포르투갈인, 스페인인이, 17세기가 되면 네덜란드인과 영국인도 가담하여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일본 규슈지역에 족생한 당인정(唐人町)이나 동남아시아 각지에 형성된 일본정(日本町)은 왜구적 상황이 낳은 ‘諸民族雜居’ 현상의 하나였다. 사실 여기까지는 기존의 연구가 지적하는 바와 그리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아라노의 독창성은 왜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던 무역을 단순히 불법적인 밀무역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종래의 공적 무역을 대체하는”⁵⁴⁾ 무역으로 평가한 점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왜구 안에서 “구세력의 쇠퇴와 신세력의 대두”⁵⁵⁾를 읽은 점에 있었다.

이후 아라노는 구체제의 붕괴와 신질서의 기수(担い手)로서의 왜구의 대두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아라노는 왜구적 상황이라는 조어의 목적이 “소위 ‘쇄국’이나 ‘남만무역’이라고 하는 유럽중심의 담론을 상대화하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기축으로 이 시기의 일본의 국제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⁵⁶⁾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보기에, 왜구적 상황이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왜구를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대체하는 신질서의 체현자로 자리매김한 데 있었다.

16세기 동아시아해역에서 시작된 ‘상업의 시대’로 말미암아 명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던 “국가 간 네트워크”, 즉 “국가 연합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제”⁵⁷⁾는 기능부전에 빠졌다. 이를 대신하여 등장한 것이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는 민간 차원”의 통교망이었는데, 이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존재가 왜구”⁵⁸⁾였다. 아라노는 이러한 동아시아 통교망에서의 교역 주체의 변화에서 “중국(명)의 압도적인 지위가 상대화되어가는 과정”⁵⁹⁾을

52) 荒野泰典, 앞의 논문, 「近世國際關係論と私」, 『史苑』 73권 1호, 62쪽.

53) 荒野泰典, 「日本型華夷秩序の形成」, 朝尾直弘 외 편, 앞의 책, 『日本の社會史 I』.

54) 같은 논문, 188쪽.

55) 같은 논문, 195쪽.

56) 荒野泰典, 「江戸幕府と東アジア」, 荒野泰典 편, 『江戸幕府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 14), 吉川弘文館, 2003, 16쪽.

57) 荒野泰典, 앞의 책, 「鎖國を見直す」, 78쪽.

58) 荒野泰典, 앞의 논문, 「江戸幕府と東アジア」, 『江戸幕府と東アジア』, 17쪽.

59) 같은 논문, 17쪽.

읽어냈던 것이다. 그가 다나카의 연구로부터 시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왜구가 수행한 역사적 역할’이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쇠퇴해가는 과정 속에서 해금-조공체제와 길항하는 자유의 민에 의한 교역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라노는 “동아시아인들의 역사적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하려는 의도가 담긴 왜구적 상황이라는 개념이 중국이나 한국 학계에서는 “피해자 의식이 강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구가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선 사람들의 관계=연계로 구성된 사실이나 독자적인 풍속이나 언어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고”⁶⁰⁾ 있다고 낙관적인 미래를 예상해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아라노의 발언이 무라이 쇼스케의 연구를 염두에 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무라이는 이전 “16세기의 역사를 열도와 외부세계의 교통이 쇠퇴하는 시기라고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⁶¹⁾ 있었는데, 1993년의 작품인 『中世倭人傳』⁶²⁾에서는 아라노의 왜구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때까지와는 다른 역사상을 제시하고 있었다.⁶³⁾ 무라이가 볼 때 이전 시기까지 기능하고 있던 일조·일중 간의, 그리고 류큐와 주변 국가들 사이의 통교가 16세기에 들어 일제히 퇴조하기 시작하는 것은 “중화제국 명의 쇠퇴에 따라 ‘책봉-감합-해금’을 일체화시킨 공적 통교 시스템이 붕괴”⁶⁴⁾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교류 그 자체의 쇠퇴가 아니었다. 국가 간 관계를 축으로 하는 교류를 대신하여 비합법적인, 다민족적인,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아마도 더욱 대규모의 교류가 등장했다. ‘후기 왜구’라는 말로 일괄되는 다양한 해상세력이야말로 그 교류의 담당자들에 다름 아니다. (중략) 그들은 모두 밀무역으로 명의 해금체제를 공동화시켜 ‘환중국해 지역’의 일체성을 성숙시켜간 사람들이다. 밀무역이야말로 이 시기 교류의 중심적인 형태였다.⁶⁵⁾

다나카 다케오는 왜구를 “일본인의 대륙 발전사의 한 페이지”⁶⁶⁾로 보는 전전의 연구를 비판하며 새롭게 왜구 연구를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결론이 동아시아 통교권의 한 주체로서의 왜구였다. 하지만 교역자로서의 왜구론은 고토 히데호(後藤秀穂)의 商寇論⁶⁷⁾을 시작으로 쓰지 겐노스케(辻善之助)의 “일본 상인”⁶⁸⁾, 아키야마 겐조(秋山謙藏)의 “사무역 상인단”⁶⁹⁾, 그리고 모리 가쓰미(森克己)의 “무장 상인단”⁷⁰⁾에 이르기

60) 荒野泰典, 앞의 책, 『「鎖國」を見直す』, 82-83쪽.

61) 村井章介, 「あとがき」, 『世界史のなかの戦国日本』, ちくま學藝文庫, 2012, 280쪽. 원저 『海から見た戦国日本: 列島史から世界史へ』(筑摩書房) 출간은 1997.

62) 村井章介, 『中世倭人傳』, 岩波書店, 1993.

63) 무라이는 아라노와의 한 대답에서 자신이 왜구적 상황을 ‘근세=암흑사관’을 극복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밝히고 있다. 荒野泰典·村井章介, 「前近代の對外關係史研究をめぐって」, 歴史科學協議會 편, 『新しい中世史像の展開』, 山川出版社, 1994, 142-143쪽.

64) 村井章介, 앞의 책, 『中世倭人傳』, 199-200쪽.

65) 같은 책, 200쪽.

66) 田中健夫, 앞의 논문, 「中世海賊史研究の動向」,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259쪽.

67) 김보한, “일본 중세사의 ‘해양인식’,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역사연구』 40, 2014.

68) 辻善之助, 『日支文化の交流』, 創元社, 1938, 140쪽.

까지 이미 오랜 연구사적 전통이 있었다. 다나카의 새로운 점은 왜구를 바다의 역사와 접목시켜 국가에 포섭되지 않는 자유의 민으로 재탄생시킨 점에 있었는데, 그는 이 자유의 민이 발생하는 온상으로 명의 해금정책을 지목했다. 아라노와 무라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구를 명 중심의 구체제에 도전하는 새로운 교역 질서의 구축자로까지 평가했던 것이다. 이로써 왜구는 더 이상 수동적인 반역자가 아니라 신질서의 기수가 되었던 것이다.

2) 통일권력과 동아시아

아라노가 해적정지령을 평가하여 평화를 갈망하는 동아시아해역의 통교자들의 염원을 담은 새로운 교역 질서의 제창이었다고 말한 점은 이미 소개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바다의 평화령은 “통일정권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자인하는 국제적 기반”이자 “통일정권의 ‘화이질서’의 내실”⁷¹⁾로서, 그 뒤로 계속되는 대명 감합 요구, 임진전쟁, 일명국교 회복 교섭 등의 전 외교 과정의 출발점에 있는 정책이었다. 여기서 해적정지령이 통일정권의 국제적 정당성의 기반이 되었다는 말은, 매우 일방적인 해석이지만, 다음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16세기 동아시아해역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교역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 네트워크는 왜구 세력 내부의 부침과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격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리한 정치 감각의 소유자”였던 히데요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적정지령을 발포했는데, 그것은 정권의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왜구적 네트워크를 대신하는 국가 권력 상호의 연계에 의한 ‘감합’(공적 외교·무역)관계를 재구축하여(중략)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⁷²⁾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해적정지령이 ‘일본형 화이질서’의 내실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형 화이질서란 아라노가 제창한 개념으로, 17세기에 들어 “중화적 세계에서 자립”한 일본이 “자기(천황+쇼군)”⁷³⁾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와 민족을 화이적으로 편성한 근세 일본의 국제관계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까닭에 많은 비판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당부를 묻지 않고 단지 아라노가 일본형 화이질서를 중국으로부터의 정치적 자립으로 인식하고 그 기원을 왜구적 상황 속에서 찾고 있는 점만 확인하기로 한다.

아라노의 생각은 이랬다. 근세 일본이 “중화질서에서 이탈하여 동아시아의 소제국으로 자립하는 방향을 선택”⁷⁴⁾한 출발점에는 해금-조공체제에 도전하는 왜구적 상황이

69) 秋山謙藏,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1939, 595쪽.

70) 森克己, 『日宋貿易の研究』, 國立書院, 1948. 이영,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혜안, 2011, 181쪽.

71) 荒野泰典, 앞의 논문, 「長崎口の形成」, 『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 395쪽.

72) 荒野泰典, 「唐人屋敷の設置はなぜ、一七世紀までずれこんだか: 近世日本國際關係論構築の一階段として」, 弘末雅士 편, 『海と陸の織り成す世界史: 港市と内陸社會』, 春風社, 2018, 127쪽.

73) 荒野泰典, 「海禁華夷秩序體制の形成」, 荒野泰典 외 편, 『地球的世界の成立』(日本の對外關係 5), 吉川弘文館, 2013, 156쪽.

있었다. 그러나 왜구 네트워크는 불안정한 교역 시스템이었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화질서의 쇠퇴와 신질서의 대두라는 시대적 조류에 올라타는 형태로,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자유의 민의 요구를 내부에 포섭하면서, 다시금 동아시아해역에서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국가 간 교역질서(=감합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적정지령을 발포했다. 아라노가 바다의 평화령을 근세 일본의 모든 외교 과정의 ‘내실’이라고 한 이유는 중국으로부터의 자립이 왜구적 상황에서 비롯되었고 그 완성을 일본형 화이질서의 성립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무라이 쇼스케는 히데요시가 개전 직후 밝힌, 저 유명한 명 정복 후의 마스터플랜에는 “동아시아에 전통적인 ‘중화’에 대한 존숭과 慕夏事상”⁷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大唐·일본·고려·天竺 모두를 총람하는 히데요시 자신의 거처가 寧波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해 교역의 장악이야말로 제국 지배의 요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히데요시는 저 왜구왕 王直의 피를 잇는 ‘왜구적 세력’의 통괄자이다. 그 출발점은 그가 1588년 ‘해적정지령’으로 중국해역에 ‘바다의 평화’의 수호자로서 임했을 때일 것이다.⁷⁶⁾

히데요시를 중화질서를 공동화시키는 왜구적 세력의 통괄자로 생각하는 무라이가 명 청교대로 가는 길목에서 발생한 침략전쟁을 “다시 파악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을 침략한 극악인”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히데요시의 전쟁의 의미를 다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가 볼 때 히데요시의 전쟁은 “후금·청이 명을 멸망시킨 움직임과 공통되는 성격”⁷⁷⁾을 가진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무라이가 붙인 임진전쟁의 새 이름은 “16세기말의 ‘대동아전쟁’”⁷⁸⁾이었다.⁷⁹⁾

74) 村井章介·荒野泰典, 「地球的世界の成立」, 같은 책, 5쪽.

75) 村井章介, 앞의 책, 『中世倭人傳』, 219쪽.

76) 같은 책, 219-220쪽.

77) 이상, 村井章介, 「銀と鐵砲とキリスト教」, 『國境を超えて: 東アジア海域世界の中世』, 校倉書房, 1997, 146쪽.

78) 村井章介, 『分裂から天下統一へ』(シリーズ 日本中世史 4), 岩波書店, 2016.

79) 임진전쟁에 대한 무라이의 생각은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형성」(홍성화 역, 『역사와 세계』 45, 2014)에서 말하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 성장한 ‘신흥 상업=군사 집단’의 하나로서의 히데요시 정권 평가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친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의 역사 변동에서 공통된 리듬”(岸本美緒, 「まえがき」, 『明末清初中國と東アジア近世』, 岩波書店, 2021, vii쪽)을 발견하려는 기시모토의 공통성에 대한 관심과 히데요시 정권에서 중화질서로부터의 자립의 단초를 찾으려는 무라이나 아라노의 일본 특수성에 대한 관심은 서로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4. 자립이라는 환상

1) 감합 문제

무라이와 아라노는 16세기 이래 동아시아해역에서 전개된 일련의 역사를 중화질서로부터의 일본의 자립 과정으로 파악했다. 그것을 매우 거칠게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기능부전에 빠진 해금-조공체제, 이에 대항하며 등장한 왜구 교역 네트워크, 왜구적 상황을 통괄하여 다시 안정적인 질서를 수립하려 한 히데요시의 해적정지령, 구체제의 쇠락과 신질서의 대두라는 시대 상황의 최종 국면에서 일어난 침략전쟁.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왜구는 종전의 폭력적인 침략자에서 새로운 통교질서의 주체로 탈바꿈되었고, 히데요시에 관한 평가도 망상에 사로잡힌 침략자에서 “평화로운 통교 무역의 보호자·조직자”⁸⁰⁾로 변모했다.

일본의 중세 말 근세 초의 외교를 중국 중심의 질서로부터의 이탈 과정으로 그리는 두 사람의 생각은, 연구사적으로 보면, 나카무라 히데타카를 계승한 것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나카무라는 일본외교의 기본적 성격을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일본외교의 부정합의 전통”⁸¹⁾에서 찾았다. 이 전통은 결코 우연하게 출현한 것이 아니라 고대 일본과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사이의 부정합에서 유래하는 것이었다. 중국을 대등국, 조선을 조공국으로 보는 고대 일본의 자주주의식이 일본외교 속에 전통적으로 계승되었고, 대군외교는 공가외교에서 유래하는 그러한 전통의식을 “전제로 하여 창출된 특수한 체제”⁸²⁾라는 것이 나카무라의 생각이었다.

대군외교에 대한 아라노의 연구⁸³⁾는 나카무라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양인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로부터의 이탈을 지향한 대군외교체제가 “일본외교를 근대적 전환의 방향으로 결정”짓게 해, 근대 이후의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종래의 외교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주적 태도”⁸⁴⁾ 취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 같은 근대주의적 발상에 “동아시아를 말하면서도 그 속에서 일본의 독자성, 특수성을 부각하려는 일국사적 욕망”⁸⁵⁾이 자리 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일본외교의 기저에 동아시아 국제질서로부터의 이탈·자립을 상정하는 입장에서 히데요시, 그리고 그 이후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국에 감합을 요구한 사실은 자신들의 논지에 부정합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조공제도가 “상호관계를 빈틈없이 규정하는 강고한 틀로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⁸⁶⁾되었다 하더라도, 감합은,

80) 荒野泰典, 앞의 논문, 「日本型華夷秩序の形成」, 『日本の社會史 I』, 191쪽.

81) 中村榮孝, 「外交史上の徳川政權: 大君外交體制の成立とその終末」,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69, 470쪽.

82) 같은 논문, 466쪽.

83) 荒野泰典, 「大君外交體制の確立」, 『講座 日本近世史 2』, 有斐閣, 1981. 荒野泰典, 앞의 책, 『近世日本と東アジア』에 수록.

84) 中村榮孝, 앞의 논문, 「外交史上の徳川政權」, 『日鮮關係史の研究』(下), 555쪽.

85) 이효원, 「통신사 조공사론(朝貢使論)의 허구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역사와 현실』 116, 2020, 415쪽.

일반적으로 책봉, 즉 복속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나카무라가 무로마치 시기의 책봉을 공가외교의 전통과 모순되는 “일본외교 체제의 중대한 변혁”⁸⁷⁾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연구자인 하시모토 유(橋本雄)가 요시미쓰(義滿)의 국왕호는 “통교 명의”⁸⁸⁾에 불과했고, 책봉의 의의도 “일본 국내에서는 이해되지 않았고 또 그럴 필요도”⁸⁹⁾ 없었다고 책봉의 역사적 의미를 왜소화하는 것도 나카무라가 이야기하는 일본 외교의 부정합의 전통과 책봉이라는 역사적 사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궁색한 시도 중의 하나였다. 한편 히데요시의 감합 요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논증도 없이 “조공을 전제로 하는 ‘감합무역’을 히데요시가 요구할 리 없기 때문에 단지 ‘관선’이나 ‘상선’에 의한 교류를 상호 승인하자는 취지에 불과”⁹⁰⁾했다고 강변하는 연구도 존재할 정도였다. 그만큼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에서 책봉과 감합 문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자립을 강조하면 할수록 커다란 딜레마로 다가왔던 것이다. 나카무라, 그리고 그를 계승한 무라이나 아라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히데요시가 강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감합에 관해서는 한국 학계에서도 여러 연구가 있다.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발표한 김정태는 감합 요구를 “부차적인 조건”으로 보고 “히데요시의 조건이 명예라는 요소에 선택·집중되고 있었다”⁹¹⁾고 말했다. 김문자는 최근의 책에서 히데요시의 주안점이 영토와 무역에 있었다고 말했다.⁹²⁾ 일본 학계에서는 기타지마 만지(北島萬次)가 에도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임진전쟁 연구사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소개했다.⁹³⁾

임진전쟁의 목적과 강화 조건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필자는, 이하에서, 근세 일본을 중화질서로부터의 자립으로 설명하는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책봉과 감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한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 일본에서 히데요시의 전쟁 목적이 감합무역 부활에 있었다고 주장한 연구자는 다나가 요시나리(田中義成), 쓰지 켄노스케, 가야하라 마사조(栢原昌三) 등이었다.⁹⁴⁾ 이를 비판한 연구자는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등이었다.⁹⁵⁾

86) 차혜원, 「16세기, 명조의 南倭대책과 封貢·市」, 『동양사학연구』 135, 2016, 87쪽.

87) 中村榮孝, 앞의 논문, 「外交史上の徳川政權」, 『日鮮關係史の研究』(下), 474쪽.

88) 橋本雄, 「對明對朝鮮貿易と室町幕府: 守護體制」, 荒野泰典 외 편, 『倭寇と「日本國王」』(日本の對外關係 4), 吉川弘文館, 2010, 115쪽. 무라이 쇼스케도 같은 생각을 표명했다. 村井章介, 「倭寇と「日本國王」」, 같은 책, 16쪽. 하시모토에 의하면 이 점을 먼저 “갈파”한 사람은 다나가 다케요였다.

89) 橋本雄, 같은 논문, 125쪽.

90) 池亨, 「外征と近世國家群の誕生」, 앞의 책, 『地球的世界の成立』, 67쪽.

91) 김정태, 「임진전쟁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강화조건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8, 2014.

92) 김문자,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경인문화사, 2021의 제1부 「전쟁 서막과 강화교섭」의 제4장 「히데요시의 책봉 문제와 강화교섭 파탄」.

93) 北島萬次, 「豊臣政權の朝鮮侵略に關する學說史的檢討」,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1990.

94) 같은 논문, 34-35쪽. 이들의 구체적인 저작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기타지마의 연구에 상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나카무라 히데타카는 이 중 후자의 진영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히데요시의 전쟁 목적이 감함무역 부활에 있었다는 학설에 대한 나카무라의 견해는 확고했다. 그러한 것은 “단지 想像說”⁹⁶⁾에 불과하고, 전쟁 목적은 “기본적으로 영토 확대”⁹⁷⁾에 있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명쾌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논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히데요시는 일·명의 국제적 지위에 관해서는 종속관계를 맺으려 생각하지 않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강화교섭을 명의 사죄로 받아들일 정도였다. 아마 감함에 관해서는, 그답게, 단지 公私 선박의 왕래와 관련된 증표라고 속단하여 무역 재개 요구를 할 생각이었지 않았을까?⁹⁸⁾

이 또한 상상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설명은 무로마치 시기의 책봉과 견명선 파견이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었음을 생각할 때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카무라는 “히데요시는 그저 막연하게 아시카가 쇼군의 古例를 따라 (감함을: 인용자) 대명조건으로 내걸었을 뿐”⁹⁹⁾이라고 강변했다. 나카무라는 1971년의 한 책¹⁰⁰⁾에서 다시 감함 문제를 거론했다. 여기서도 그는 히데요시의 목적이 “동아시아 통일 지배”¹⁰¹⁾에 있었다고 말하며, 강화안에 감함 조항이 들어간 이유로 “히데요시가 감함의 본질을 모르는 것을 이용”한 ‘小西對馬 그룹’의 “책동”¹⁰²⁾을 들었다. 감함 문제를 논하는 나카무라의 태도는 일본 학계에서의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것이었다. 상상에 불과하지만 나카무라는 감함 문제가 일본외교의 부정합의 전통과 충돌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¹⁰³⁾

감함 문제에 대한 궁색한 설명은 후지키 히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히데요시가 생각하는 감함은 책봉을 전제로 하는 본래의 성격과는 달리 “관선·상선 왕래의 한 형식 정도의 것”으로, 그가 구상하는 무역은 통일권력이 발급하는 독자적 감함에 의한 교역, “예를 들어 주인선무역과 같은 공적 교역”¹⁰⁴⁾이었다고, 후지키는 이렇다 할 논증도 없이 말했다. 히데요시가 요구한 감함 부활이 “복속 요구를 동반하지 않는 교역정책”¹⁰⁵⁾을 의미했다는 후지키의 주장도 한낱 상상설에 불과했다.

아라노는 후지키의 주장에 의거하는 형태로 히데요시가 명에 요구한 것은 “일관되게

95) 같은 논문, 35-49쪽.

96) 中村榮孝, 「對外戦争における豊臣秀吉の目的」, 『日鮮關係史の研究』(中), 吉川弘文館, 1969, 282쪽.

97) 같은 논문, 241쪽.

98) 같은 논문, 284쪽.

99) 中村榮孝, 「豊臣秀吉の外征」, 같은 책, 178쪽.

100) 中村榮孝, 『朝鮮: 風土・民族・傳統』, 吉川弘文館, 1971.

101) 같은 책, 189쪽.

102) 같은 책, 193쪽.

103) 다나카 다케오는 『日鮮關係史の研究』(中)를 서평한 글에서 나카무라가 감함 부활설을 “논파한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田中健夫, 앞의 책, 『對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 139쪽.

104) 藤木久志, 앞의 책, 『豊臣平和令と戰國社會』, 243쪽.

105) 같은 책, 239쪽.

감합이었지 복속이 아니었다”¹⁰⁶⁾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후일 점점 강화되어 가, 무라이 쇼스케와 함께 쓴 논문에서는, 강화교섭에서 제시된 감합은 “명황제와 일본국왕 사이의 군신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명이 요구하도록 하여 일본이 응하는 형태”¹⁰⁷⁾가 고려되었다고 말했다. 명이 요구하고 일본이 응하는 형태의 감합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생각하는 감합은 “일중간의 민간 차원의 무역의 체제적 보장을 의미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무라이와 아라노는 “왜구적 상황을 평정한 통일정권의 명확한 자립의식”¹⁰⁸⁾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역사와 역사가들

1596년 오사카성에서 행해진 책봉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책봉 그 자체에 격노한 히데요시가 봉책을 찢었다는 속설을 시작으로 명 측의 기록에 의거한, 五拜・三叩頭・山呼를 행한 히데요시까지,¹⁰⁹⁾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 중 책봉을 거부했다는 설은 후세의 창작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히데요시가 자신이 책봉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책봉사를 받아들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또 당시의 책봉문이나 常服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¹¹⁰⁾ 한편 히데요시가 황제를 향해 만세를 부르고 오배삼고두의 예를 행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명의 사절이 책봉의식을 무사히 치르고 사카이(堺)로 돌아간 뒤에 문제가 발생했고, 곧이어 전쟁이 재발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볼 때 히데요시는 명의 책봉을 받았지만 그 뒤 강화 교섭에서 자신의 요구(그것이 영토든, 명예든, 감합이든)가 관철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재침을 지시했다고 보는 편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중국사 연구자 나카지마 가쿠쇼(中島樂章)에 따르면 당시 명 조정에서는 일본에 관해 세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한다. 封貢竝絶, 許封不許貢, 封貢竝許가 그것들이다.¹¹¹⁾ 이 가운데 명이 선택한 것은 책봉은 하되 무역은 허락하지 않는 허봉불허공이었다.¹¹²⁾ 그러나 이는 감합무역 재개를 위해 책봉을 받아들인 히데요시의 입장에서서는 수긍할 수 없는 조건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역사가들로 이야기를 되돌리면, 나카무라 히데타카는 자신의 지론, 즉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일본외교의 부정합의 전통’과 대치되는 히데요시의 책봉과 감합

106) 荒野泰典, 앞의 논문, 「日本型華夷秩序の形成」, 『日本の社會史 I』, 214쪽.

107) 村井章介・荒野泰典, 앞의 논문, 「地球的世界の成立」, 『地球的世界の成立』, 18쪽.

108) 같은 논문, 30쪽.

109) 石原道博, 『文祿慶長の役』, 塙書房, 1963, 109-112쪽..

110) 많은 연구서가 이를 지적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中野等, 『文祿慶長の役』(戦争の日本史 16), 吉川弘文館, 2008, 181쪽; 藤井讓治, 『戰國亂世から太平の世へ』(シリーズ日本近世史 1), 岩波書店, 2015, 103쪽; 김문자, 앞의 책,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158-163쪽.

111) 中島樂章, 「封倭と通貢: 一五九四年の寧波開貢問題をめぐって」, 『東洋史研究』 66-2, 2007, 272쪽.

112) 차혜원은 당시 명 사회에서 일본 무역을 허가하자는 논의가 왜구의 주된 피해자였던 江南 출신 인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사실을 밝혔다. 차혜원, 앞의 논문, 「16세기, 명조의 南倭대책과 封貢市」.

요구를 히데요시 개인의 무지와 고니시·대마 그룹의 책략 탓으로 돌렸다. 이 중 히데요시가 감함의 본질을 몰랐다는 설명은 감함무역 중단이나 그 뒤로도 이어진 지역 다이묘들의 비합법적인 견명선 무역 시도가 모두 히데요시와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감안하면 믿기 어려운 것이다. 히데요시는 다이묘들의 사적·다원적인 교역 루트를 일원화하여 중국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라도 감함무역을 필요로 했다. 또 고니시·대마 그룹의 책략이라는 설명도, 대외관계사에서 중대한 사안의 책임을 중간자에게 전가하는 상투적인 방법으로서, 그것은 왜구 발생의 원인을 삼도의 자연적 환경 탓으로 돌리거나, 임진전쟁 후 조선과의 강화교섭에서 대마도의 역할을 실재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과 구조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후지키나 아라노 등은 책봉 사실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감함 내용을 달리 해석함으로써 통일정권의 자립의식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복속 없는 교역이란, 결국 근대적 의미의 무역에 가까운 것으로, 그것은 당시의 동아시아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초역사적 내지 탈역사적 무역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고대 율령국가 이래의 일본의 자립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쪽은 히데요시가 아니라 현대 역사가들이었던 것이다.

16세기 이래 동아시아해역에서 전개된 왜구와 통일권력 성립의 역사 과정을 구체제의 해체와 신질서의 대두로 설명하는 역사상은 결국 중화질서로부터의 일본의 자립이라는 계기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오늘날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이 제출하는 평가나 결론이 이전 시대의 연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기 일쑤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무라이가 말하는 임진전쟁으로서의 ‘16세기말의 대동아전쟁’은 명명 자체가 갖는 고풍스러움이나 그로 인한 위화감은 차치하더라도, 히데요시의 전쟁 목적을 “중화에 대한 도전”과 “아시아제국 구상”¹¹³⁾에 두는 생각은, 일찍이 이시하라 미치히로가 이야기한 “일본적 중화사상” 내지 “중국적 세계국가주의의 일본판”¹¹⁴⁾의 실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경제적 목적설을 비판하고 동아시아 통일 지배를 주장한 나카무라 히데타카, 다보하시 기요시, 이케우치 히로시 등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16세기 왜구가 수행한 역사적 역할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이는 대군외교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군외교체제를 고대 율령국가 이래의 조선·명시관과 중국에 대한 자립의식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 중심의 국제질서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성립한 일본형 화이질서 체제가 근대적 재편 과정을 거쳐 “일본 제국”¹¹⁵⁾으로 귀결한다는 아라노의 주장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나카무라의 역사인식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방법론의 시대 가운데서 아시아 속에서, 아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근세 일본을 파악할 것을 선언하며 시작된 연구가 아시아와의 부정합과 그로 인한 근대 이후의 차이를 강조하는 “탈아적”¹¹⁶⁾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자 필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113) 村井章介, 「倭寇の状況と世界史的日本の成立」, 村井章介·荒野泰典 편, 『對外交流史』(新 體系日本史 5), 山川出版社, 2021, 273쪽.

114) 石原道博, 앞의 책, 『文祿・慶長の役』, 60쪽.

115) 荒野泰典, 「近世の世界の成熟」, 荒野泰典 외 편, 『近世の世界の成熟』(日本の對外關係 6), 吉川弘文館, 2010, 5쪽.

참고문헌

- 기시모토 미오, 홍성화 역,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형성」, 『역사와 세계』 45, 2014.
- 김경태, 「임진전쟁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강화조건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8, 2014.
- 김문자,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경인문화사, 2021.
- 김보한, 「근대 이후 일본의 ‘해양세력권’과 동아시아 해양 인식의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 김보한, “일본 중세사의 ‘해양인식’,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역사연구』 40, 2014.
- 미야지마 히로시,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창비, 2013.
- 윤성익, 「21세기 동아시아 국민국가 속에서의 倭寇像」, 『명청사연구』 23, 2005.
- 윤성익, 「戰前·戰中期 日本에서의 倭寇像 構築」, 『한일관계사연구』 31, 2008.
- 이수열, 「‘아시아 교역권론’의 역사상: 일본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8, 2014.
- 이수열, 「왜구론의 행방: ‘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1, 2019.
- 이영,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해안, 2011.
- 이영, 『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일본 근대 정치의 학문 개입과 역사 인식』, 에피스테메, 2015.
- 이효원, 「통신사 조공사론(朝貢使論)의 허구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역사와 현실』 116, 2020.
- 차혜원, 「16세기, 명조의 南倭대책과 封貢·市」, 『동양사학연구』 135, 2016.
- 하야미 아키라, 조성원·정안기 역, 『근세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역사인구학으로 본 산업혁명 VS 근면혁명』, 해안, 2006.
- 한윤희, 「조선 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해구(海寇)에서 해상(海商, = 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을 중심으로」, 『군사』 118, 2021.
- 秋山謙藏,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1939.
- 秋山謙藏, 『歴史と現實』, 創元社, 1940.
- 荒野泰典, 「日本型華夷秩序の形成」, 朝尾直弘 외 편, 『日本の社會史 I: 列島内外の交通と國家』, 岩波書店, 1987.
-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88.
- 荒野泰典, 「長崎口の形成」, 加藤榮一 외 편, 『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 校倉書房, 1989.
- 荒野泰典·村井章介, 「前近代の對外關係史研究をめぐって」, 歴史科學協議會 편, 『新しい中世史像の展開』, 山川出版社, 1994.

116) 미야지마 히로시,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창비, 2013.

- 荒野泰典 편, 『江戸幕府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 14), 吉川弘文館, 2003.
- 荒野泰典, 「近世的世界の成熟」, 荒野泰典 외 편, 『近世的世界の成熟』(日本の對外關係 6), 吉川弘文館, 2010.
- 荒野泰典, 「近世國際關係論と私: 立教の二七年」(荒野泰典先生最終講義), 『史苑』 73권 1호, 2013.
- 荒野泰典, 「海禁・華夷秩序體制の形成」, 荒野泰典 외 편, 『地球的世界の成立』(日本の對外關係 5), 吉川弘文館, 2013.
- 荒野泰典, 「唐人屋敷の設置はなぜ、一七世紀までずれこんだか: 近世日本國際關係論構築の一階段として」, 弘末雅士 편, 『海と陸の織り成す世界史: 港市と内陸社會』, 春風社, 2018.
- 荒野泰典, 『「鎖國」を見直す』, 岩波書店, 2019.
- 池亨, 「外征と近世國家群の誕生」, 荒野泰典 외 편, 『地球的世界の成立』(日本の對外關係 5), 吉川弘文館, 2013.
- 池上裕子, 『織豊政權と江戸幕府』(日本の歴史 15), 講談社學術文庫, 2009.
- 石原道博, 『文祿・慶長の役』, 塙書房, 1963.
- 石原道博, 『倭寇』, 吉川弘文館, 1964.
- 岩生成一, 『鎖國』(日本の歴史 14), 中公文庫, 1974.
- 鹿野政直, 『「鳥島」は入っているか: 歴史意識の現在と歴史學』, 岩波書店, 1988.
- 岸本美緒, 『明末清初中國と東アジア近世』, 岩波書店, 2021.
- 北島萬次,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1990.
- 鬼頭宏, 『文明としての江戸システム』(日本の歴史 19), 講談社學術文庫, 2010.
- 木宮泰彦, 『日本民族と海洋思想』, 刀江書院, 1942.
-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9.
- 田中健夫,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圈」, 朝尾直弘 외 편, 『日本の社會史 I: 列島内外の交通と國家』, 岩波書店, 1987.
- 田中健夫, 『東アジア通交圈と國際認識』, 吉川弘文館, 1997.

여 백

【토론문 4】

「바다의 역사와 일본 근세국가론 :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김연옥(육군사관학교)

‘해양’ 파트 전문가이신 이수열 선생님의 토론자로 문외한(門外漢)인 저를 붙이신 데는 아마도 2017년 명청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투고했던 논문¹⁾이 계기가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평소의 고민과 연구속에서 물어나오는 우문현답(愚問賢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본고의 의의

본고는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가 ‘바다의 역사’(『倭寇：海の歴史』)가 제기한 문제의식인 “육지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와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바다 중심의 역사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물론, 왜구를 ‘동아시아 통교권의 한 주체’로 파악”해야 한다는 시각을 계승한 일련의 학자들(무라이 쇼스케, 아라노 야스노리, (결가지) 후지키 히사시, 나카무라 히데타카, 하시모토 유 등)의 핵심 논점 및 논리의 변증(변용) 과정까지 잘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학사적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2. 본고에서 제시된 방향성과의 정합 여부

한편 필자가 서론에서 제시한 논의 방향성 및 논증 과정의 도달 여부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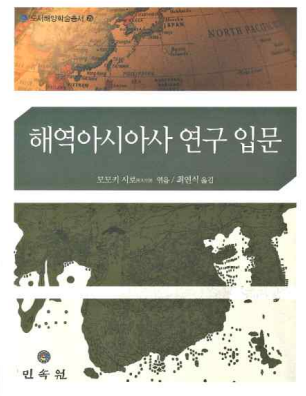
필자께서 서론에서 제시한 바로는, “이 논문의 목적은 바다의 역사가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에 가져온 변화를 근세국가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근세국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아니라, 근세 대외관계사에 대한 사학사적 접근을 통해 역사상의 변화와 연속을 살피고, 거기서 나아가 동아시아 해역사의 현주소를 밝히려는 것이다.” 또한 각주 16에서 “이 논문에서는 ‘근세국가론’이라고는 해도 17세기 이후에”

1) 참고, 「일본역사학계의 해양사 최신연구현황과 과제-14세기 후반~19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8집, 2017.10.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못했다. 이는 별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라고 하신 언급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목에서도, 서론에서도, 윗단락의 밑줄 친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본고의 핵심 키워드는 ‘바다의 역사’와 ‘일본 근세 국가론’입니다. 물론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혹은 시기를 17세기 이전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정치사 맥락에서 말하는 ‘근세 국가론’에 대한 이미지와 어떤 다른 차이를 얘기하는지에 대해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사 맥락에서의 ‘근세국가(론)’이라고 하면 막번체제의 형성과 변질, 붕괴 과정을 통상 의미한다고 본다면, 바다의 역사로 본 일본 근세 국가론을 어떤 이미지로 정리하려 하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최근에 가끔 논의되는 것처럼, 이른바 ‘근대 국민국가론’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근세 국민국가론’을 상정하고 언급하신 것인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둘째, 검토시기를 17세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집필하시고자 하신 의도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달리 하면, 17세기 이전은 다나카 다케오 發信의 『바다의 역사』가 물고 온 파장으로 사학사적 흐름을 재정리하시려 하셨다면, 17세기 이후는 또다른 이론적 토대의 중심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혹은 17세기 이전 근세국가론의 경향이 다르게 대두한다고 보신 건지, 아니면 이른바 『해역아시아사 연구입문』에서 제시하는 논의처럼 해양사적 시점에서 기존의 일반적 시대구분론이 아닌 해양세계 유입요소 및 반응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시대구분론 시각에서 이렇게 설정하신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혹은 기존의 해역아시아사 연구입문 적 관점 수용이라고 해도) 17세기 전후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이후 주요 연구자의 논의 흐름으로 정리하시다가 나눈 흐름이라면, 제목상의 ‘근세 국가론’과 ‘바다의 역사’의 제목 정합성이나 논증의 포인트가 불분명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조금 거칠게 요약하자면,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이 읽으면, 선생님의 貴稿의 논의가 ‘왜구 사학사 및 그 외연확장’으로 전달될 우려도 다소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논의에서 출발하는 『바다의 역사』가 아닌, 일반명사로서의 ‘바다의 역사’일 경우, 일본 근세를 설명해 내기에는 더 많은 요소들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담론류(이론 포함, ‘쇄국’논의 포함), 일-중 교역, 일-한 교역, 4대 창구별 실태(류큐, 홋카이도 등), 동남아시아, 네덜란드 교역, 표류, 특정물품별 항목(도자(陶磁), 해산물, 造船), 표류 등의 諸요소가 상정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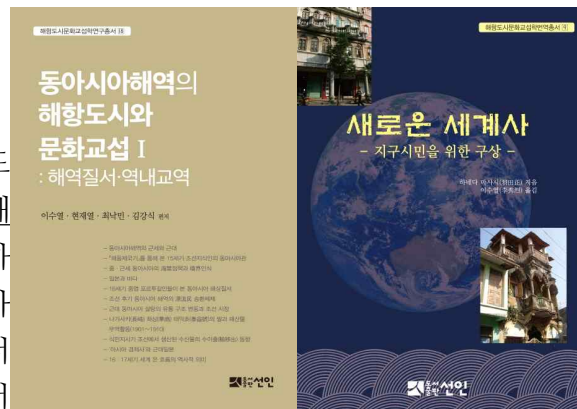
3. 기대하는 바 :

동아시아 해역사의 현주소

한국학계의 업적 새롭게 추가 희망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의 존함을 듣고, 또한 서론에서 제시한 “나아가 동아시아 해역사의 현주소를 밝히려는 것이다”라고 하신 언급에 매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제가 2017년 연구동향을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貴館에서 내고 계신 일련의 연구과제 총서인 〈해항도시 문화교섭학〉 총서 시리즈를 열심히 보았고, 언급도 하면서, 한국학계의 최근 동향을 추가하는 나름의 새로운 식견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2번째 원고이실 17세기 이후 동향 정리 때 사용하시고자 아껴두신 ‘재료’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미리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견 듣고자 합니다.



여 백

제2부

【제5발표】

한·일간 표류민 송환과 해난구조의 법제화(1860~1960년대)

정성일(광주여자대학교)

- I. 머리말
- II. 조선과 일본의 海難救助 협약 체결(1868~1914년)
- III. 1914년 일제의 朝鮮水難救護令 제정
- IV. 1961년 한국의 受難救護法 제정
- V. 맺음말

【제5발표】

한·일간 표류민 송환과 해난구조의 법제화(1860~1960년대)

정성일(광주여자대학교)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표류민 송환(漂流民送還)과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제도를 186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100년 동안의 긴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한국과 일본은 해난사고(海難事故)가 발생하면 서로 협력하기도 하였다. 표착(漂着)이 이루어진 국가가 책임지고 해난을 당한 상대국의 표류민을 구조하여 그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표착지(漂着地)에서 구호(救護)를 해 주었다.

그런데 표류민 송환(해난구조)이 제도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후기(朝鮮後期) 이후의 일이다. 그 전까지는 표류민의 송환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호의(好意)를 베풀어서 표류민을 송환해 준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왜구(倭寇)가 창궐하던 시대에는 표류민을 송환하기보다는 표류민과 그들의 소지품을 저절로 흘러들어온 재물(財物)로 인식하여 해안 지역의 지배자나 표착지의 국가권력이 그들의 소유물로 간주하기 일쑤였다. 그것이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는 한국과 일본이 표류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송환하는 제도로 정착한 것이다. 이 제도는 시간의 흐름에서 그 내용과 형식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며 그 뒤로도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1914년부터는 조선수난구호령(朝鮮水難救護令)이 시행되었다. 일본은 1914년에 해난구원구조규정통일조약(海難救援救助規定統一條約)을 비준하였는데, 이 국제조약(國際條約)은 표류민의 구조와 송환에 드는 비용(費用)이 국가 간에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함이었다. 그 뒤 일제(日帝)는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하고자 조선수난구호령을 제정한 것이다. ‘구법(舊法)의 정리’에 나선 한국 정부는 1961년 11월 1일 법률 제761호로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을 제정하였다. 이때 비로소 1914년부터 있었던 조선수난구호령이 폐지되었다.

조난(遭難)을 당한 배를 구조하여 표류민(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인도적(人道的) 행위이다. 그런데 해난구조에는 비용(費用)이 들게 마련이다. 그 비용을 가리켜 표민경비(漂民經費) 또는 해난구조비(海難救助費)라 부른다. 그래서 표류민 송환(해난구조) 문제에 대한 접근은 외교적 관점과 함께 경제적 관점도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표류 즉 해난과 관련된 한국의 현행법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

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의 연원(淵源)을 법제사(法制史)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다.¹⁾ 현행 ‘수상구조법’이 1961년 제정된 ‘수난구조법’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전까지는 1914년에 제정되었던 ‘조선수난구조령’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²⁾ 다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수난구조법’이 영국 상선법의 영향도 받았겠지만(조선이 1883년 영국과 해난구조비 관련 협약 체결), 일본의 영향도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조선과 일본의 1886년 표민경비상환법(漂民經費償還法) 개정, 일본의 1899년 수난구조법(水難救護法), 일제의 1914년 조선수난구조령(朝鮮水難救護令), 한국의 1961년 수난구조법(水難救護法)을 연속선 상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 이 글을 쓴 목적이다.

II. 조선과 일본의 해난구조(海難救助) 협약 체결(1868~1914년)³⁾

조난(遭難)을 당한 선박의 구조(救助) 또는 구호(救護)에는 여러 가지 비용(費用)이 소요된다. 그것은 전근대(前近代)나 근대(近代) 이후 모두 마찬가지였다. 표민경비(漂民經費) 또는 해난구조비(海難救助費)라 불리는 이 비용을 상대국의 표류민 개인이나 정부에 청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1860년대부터 1945년까지 한일관계사(韓日關係史)에서 표류민 송환(또는 해난구조) 제도가 세 차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⁴⁾

1. 무상송환(無償送還)과 유상송환(有償送還)의 갈등(1868~1875년)

1868~75년의 시기는 일본의 메이지유신(1868) 이후부터 조선의 개항(1876) 이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전통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갈등(또는 문제점)이 표면

1) 정연형은 1975년에 쓴 글에서 한국 ‘수난구조법’의 연혁을 설명하면서, “1945년 이후 새로운 법률이 입법되고 그 간(間) 많은 법률개정(法律改正)이 필요하여 실시되어 왔던 바, 많은 법률이 일본의 법체계에 근사(近似)한 것이 많았으나, 수난구조법은 영국 상선법(英國商船法)을 모법(母法)으로 하고, 일본의 수난구조법을 가미(加味)하였다고 하겠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에도 구호(救護)에 관한 제도(制度)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성(確實性)은 있으나, 고사(古事)의 문헌(文憲)을 찾아보기 힘들고, 현행법(現行法)은 상술(上訴)한 바와 같이 현행(現行) 영국 상선법(英國商船法)을 표방(標榜)하였다고 하겠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연형, 「수난구조법과 해난구조법에 대한 소고-구조조를 중심으로-」, 『해양한국』 22,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75, 24-27쪽.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의 연혁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성일, 「표류민 송환체제를 통해서 본 근현대 한일관계: 제도사적 접근(1868-1914)」, 『한일관계사연구』 17, 한일관계사학회, 2002, 67-113쪽; 정성일, 「근대 조선과 일본의 해난구조제도와 국제관계」, 『동북아역사논총』 28, 동북아역사재단, 2010, 194-202쪽;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412-447쪽에서 요약 정리하였음.

4) 조선과 일본의 해난구조 관련 협정의 비교는 다음의 표를 참조. 정성일, 「근대 조선과 일본의 해난구조제도와 국제관계」, 『동북아역사논총』 28, 194쪽;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440쪽.

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 시기에는 전통 방식인 무상송환(無償送還)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일본은 일찍이 1850년대부터 미국 등 서양 여러 나라와 화친조약(和親條約)을 맺어 교류하고 있어서 서양 선박의 일본 왕래가 잦았다. 일본은 그 과정에서 영국 등 서양 여러 나라의 해사 관습(海事慣習)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해난구조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선주(船主)나 하주(荷主)가 부담하고, 조난선박(遭難船舶)의 본국 정부도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하여 일본은 조선보다 먼저 인식하고 있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둘러싼 해역(海域)의 지리적 환경 때문에, 전통 방식인 무상송환(無償送還) 원칙이 조선보다 일본에게 더 불리하다는 점도 일본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현재도 한국·중국 등 대륙의 해양 쓰레기가 일본열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선후기(에도시대)에도 계절풍과 해류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표류하는 건수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약 10배 정도 더 많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겪고 있었던 일본의 표착지(漂着地) 주민들과 관료들은 조선 표류민에게 적용해 오던 종래의 방식(무상송환)을 서양 선박과 같은 새로운 방식(유상송환)으로 바꾸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일본은 1871년에 청(淸)과 수호조약(修好條約)을 체결하였다. 그때 일본은 자국에 표착한 중국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수리비를 조난선박의 선주나 표류민 개인이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外國船漂着之節取扱方).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에는 엄밀히 말해서 조선이 해당되지 않았으며, 조선에 대해서는 전통 방식(무상송환)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본의 표착지 주민이나 지방 관료가 새로운 방식(유상송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일본 외무성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는 조선과 일본이 이른바 서계(書契) 문제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었던 터라, 일본 외무성이 조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국익(國益)’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역의 이익’을 뒤로 돌린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⁵⁾와 이훈⁶⁾의 선행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1873년 3월 대마도에 표착했던 전라도 강진 출신 표류민⁷⁾에 대하여, 전통

5) 池內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6)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7) 대마도에서 1873년 3월 29일 작성된 조선 표류민의 진술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① 표류민 6명은 姜汝仁(船主, 48세), 黃聖國(54세), 同乃端(53세), 姜聖安(45세), 李龍精(40세), 許權(37세)
- ② 朝鮮國 全羅道 康津의 居民이라고 밝힌 이들이 大錢 40貫文을 신고 한 배에 타고 3월 13일 강진을 출발, 완도로 향함
- ③ 당일 莞島에 도착한 그들은 벼[粳] 40가마니를 사서 3월 15일 완도를 출발하여 강진으로 향함
- ④ 돌풍으로 돛대 2개 중 1개가 부러지고, 키[上桅]가 손상되어 풍파를 견디지 못해 人命이 위태롭다고 판단, 신고 있던 가마니 중 절반 넘게 바다에 내던짐
- ⑤ 여러 날 바다에서 표류하다 3월 20일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곳에 닿음(瀨村-인용자주)
- ⑥ 포구 사람들의 구호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곳이 대마도 땅인 것을 알고 안심을 함
- ⑦ 3월 28일 그곳에서 배를 띄워 오늘 當浦에 닿음(佐須郷 久根村-인용자주)
- ⑧ 소지품은 ㉠ 벼[粳] 12가마니, ㉡ 錢 11貫文이며, 制札(호폐-인용자주)은 한 명도 소지 안 함

방식인 무상송환의 원칙을 깨고 표민경비(해난구조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일이 나가사키현[長崎県]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당시 나가사키현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1871년 4월 포고(外國船漂着之節取扱方)에서 <값을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송환에 들어가는 여러 잡비(雜費)를 부담시킨다>고 되어 있어서, (전라도 강진 출신 표류민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외무성 관리였던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주장은 이와 달랐다. “이 포고(外國船漂着之節取扱方)는 청국 표선(淸國漂船)을 취급하는 포고의 서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조선 표선(漂船)의 자비 부담을 강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그는 보았다.⁸⁾ 결국 일본 외무성은 1873년 7월 초 무렵에 “(조선의) 표류민들로부터 징수한 선박 수리비 5엔 34전을 반환하라.”고 나가사키현령[長崎県令]에게 지시를 내렸다.⁹⁾ 7월 22(일본 9월 13일) 배소통사(陪小通事) 김채길(金采吉) 등이 일본 측 대관(代官)에게 작성해 준 문서[覺]에 “전(錢) 39냥 5전 1분(貴國 錢 5엔 34전)을 돌려받았다.”고 한 것을 보면,¹⁰⁾ 전액 조선 측에 반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¹⁾

위의 사례는 표민경비(해난구조비)의 일부를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 선주(船主)나 조선 정부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일본의 표착지 주민이나 지방 정부에 강하게 남아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로써 조선,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 간에는 표민경비(해난구조비)와 관련하여 전통 방식(무상송환)이 붕괴하고 새로운 방식(유상송환)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이미 1870년대 초부터 도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상송환에서 유상송환[정액상환]으로 전환(1876~1886년)

이 시기는 조선의 개항(1876)부터 이른바 표민경비상환법(漂民經費償還法)이 개정되는 1886년까지를 말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무상송환(無償送還)에서 유상송환(有償送還)으로 전환한 점이다. 조난을 당한 표류민 입장에서 보면 전과 달리 표민경비(해난구조비)의 일부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으니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미 1873년 대마도에 표착했던 전라도 강진 표류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위의 내용으로 보건대, 1873년 3월 20일 대마도의 瀬村에서 구조되었을 당시, 이들은 ‘벼 12가마니와 동전 11관문’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困難船及漂民救助雜件：朝鮮國ノ部』 제1권(일본 外務省 外交史料館, 문서번호 3.6.7.1-10)

8) “한선(韓船)에 대한 수리비는 평균 10円 정도로 1년에 10번 조선 선박이 (일본에) 표착한다 해도 (그 배의 수리비가) 100円에 불과하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인자(仁慈)의 마음을 손상시켜서 유감”이라면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는 “조선인들의 선박 수리비 5円” 35전을 표류민들이 가지고 있던 벼를 팔게 한 돈으로 갚게 한 것은 외국에 대하여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는 1873년 4월 1일 초량(草梁) 공관장(公館長)으로 부임한 외무성 관리였다.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238쪽; 정성일, 위의 책, 414-415쪽. 원문은 『朝鮮外交事務書』 6(한국일본문제연구회 편, 성진문화사 영인본), 1971, 656-657쪽.

9) 『朝鮮外交事務書』 7, 273-274쪽.

10) 『朝鮮外交事務書』 8, 89쪽.

11)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120-121쪽, 정성일, 같은 책, 413쪽.

선박 수리비의 일부를 표류민 개인이 부담했던 과거의 경험이 그 뒤에도 일종의 학습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는 그 이전 시기인 에도시대(江戸時代)에도 일본과 외교관계가 없이 무역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던 중국, 네덜란드 선박에 대해서는 표민경비(해난구조비)의 일부를 표류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무상송환에서 유상송환으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은 적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1876년 조선과 일본은 조약을 맺어 양국의 외교관계를 새롭게 열어 가기로 하였다(朝日修好條規). 그해 8월 조선 의정부(趙寅熙)와 일본 외무성(宮本小一) 사이에 왕복 문서를 교환하였는데, 그 중 표민경비(해난구조비)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이 담겨 있었다. 일본 외무성이 조선 정부에 보낸 문서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¹²⁾

- ① 수호조규(修好條規) 제6관에 따라 표류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전, 본국으로 송환한다.
- ② 두 나라 인민이 객토(客土)에 표착(漂着)하게 될 때는 그 지방 관민이 즉시 구출하고 구원하여 옷과 음식 등을 제공하되, 잡아 가두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
- ③ 이를 위하여 지방에서 소용(所用)되는 경비(經費)는 모두 이웃나라와 교린(交隣)하는 의무로 하고, 그 본국 정부가 이를 지출하게 하지 않는 것이 관례(慣例)였으나,
- ④ 조약 체결 후는 두 나라 인민의 왕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인민도 많아지고 있으니, 이를 빈례(賓禮)로서 대우하는 것은 번잡한 일이다.
- ⑤ 앞으로 표민 구조(漂民救助) 경비(經費)는 쌍방 상호 간에 이를 약정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에 적당한 옷 한 벌을 주는 것 외에, 하루 식료(食料)로 일본에서는 금(金) 10전(錢), 조선에서는 전(錢) 50문(文)으로 정하며, 표민을 넘겨줄 때 전수(錢數)를 회계(會計)하여 그 본국 정부가 이것을 완전히 청산(清算) 하기로 한다.
- ⑥ 이것을 모두 청산하고 나면 그 나머지 잡비(雜費)는 각각 그 표착국(漂着國)의 의무이므로 서로 사례(謝禮) 할 필요가 없다.
- ⑦ 한낱 표민을 위하여 특별히 선척을 내는 것은 너무나 정중할뿐더러 선비(船費)도 고르지 못하므로 우선(郵船)으로써 이를 호환(護還) 할 것이다.
- ⑧ 그러므로 그 체류 기간은 자연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다.
- ⑨ 그 사이에 신체에 적당한 위로를 하여 양생시키며,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표민-인용자주)에게 땀감을 채취하고 새끼를 꼬는 것과 같은 몸을 쓰는 일을 시키고, 그에 따른 임금을 급여하여 그 소득의 전물(錢物)으로써 체류 경비의 일부를 갚게 할 것이다.
- ⑩ 그러한 때에는 (표민의) 본국 정부가 지불할 금액은 그 부족분을 보상할 뿐이다.
- ⑪ 어떤 표민이 귀국할 때 소지하고 있는 전물(錢物)이 있을 경우, 그것이 본인 노역에서 얻은 것이면 관(官)에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마땅히 안심하고 본업에 복직하게 할 것이다.
- ⑫ 두 나라 정부에서는 이 준행(遵行)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¹³⁾

12) 『舊韓末條約 彙纂, 1876-1945』 상(입법참고자료 v.18),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 120-121쪽; 정성일, 같은 책, 416-417쪽.

13) 위 내용을 담은 문서의 발신자는 '일본국 이사 외무대승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이며, 수신자는 '조선국 강수관(講修官) 의정부 당상 조인희趙寅熙'이고, 작성일은 1876년 8월 24일(음력 7.6.)이다.

위의 일본 정부 안(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반부(①~⑥)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의 관행을 계승(繼承)할 것과 단절(斷絶)할 것을 명시하였다. 예를 들면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제6관에 근거하여, 두 나라가 즉시 구조하여 표류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전하고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하여(①, ②), 조선후기(에도시대)의 이른바 표류민 송환체제의 골격은 그대로 이어갔다. 다만 표민경비(해난구조비)는 무상송환이 관례였으나, 조약 체결 후 교류 확대로 표민경비(해난구조비)가 해마다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③, ④), 과거 방식의 고비용(高費用)과 저효율(低效率)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민경비(해난구조비)를 양국이 합의하여 기준과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사후에 그 비용을 정산(精算) 하도록 하며(⑤), 부족분에 대해서는 표민의 본국 정부가 지급하기로 하되, 이것 외에 따로 사례(謝禮) 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⑥). 이로써 과거의 무상송환에서 유상송환(정액상환)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에 쓰시마[對馬]에서 조선으로 표민호송사(漂民護送使)를 파견하거나, 또는 연례송사(年例送使)에 순부(順附) 하던 관행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후반부(⑦~⑫)는 새로운 방식(유상송환)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과 일본을 오가는 우선(郵船)에 태워서 표류민을 송환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 우선(郵船)의 도항 일정에 따라 표착국(漂着國)에 표류민이 체류할 시간도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고 했다(⑦, ⑧). 체류 기간이 길어질 때를 가정하여 표류민에게 땀값 채취와 새끼 꼬기 같은 노역(勞役)을 시키고, 그 임금으로 표민경비(해난구조비)를 갚게 하는 방식은 과거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내용이다(⑨). 표류민의 본국 정부는 부족분을 갚게 하였는데(⑩), 앞에 소개한 ⑥의 내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표민경비(해난구조비)를 초과하여 그 이상 징수하지 못하게 한 것은(⑪) 일본 정부도 유상송환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예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조선 정부는 ‘병자 7월 초6일’(양력 1876.8.24.) 자로 작성된 회답서(回答書)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¹⁴⁾ 그런데 앞의 일본 정부 문서도 작성일이 8월 24일(음력 7.6.)로 서로 같다.¹⁵⁾ 그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 ㉠ 두 나라 표민을 구출하는 데 들어간 경비(經費)를 회계(會計)하여 상환(償還)을 요청하는 것과,
- ㉡ 표민을 체류 중에 품삯을 주고 고용하여 일을 시켜서 상환해야 할 몫을 공제(控除)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하여 돌려주자는 등의 사항이다.
- ㉢ 위의 건에 대하여 잘 알았으며, 귀하의 뜻이 두 나라 인민을 교사(交使)케 함에 있으니, 이토록 세심한 곳까지 모두 생각하여 갚춘 것에 대하여 더욱 감탄하였다. 이에 회신을 하고자 하니, 너그럽게 헤아려 주기 바란다.

먼저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안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14) 이 문서의 작성자는 ‘강수관 의정부 당상 조인희’로 되어 있으며, 수신자는 ‘대일본국 이사관 외무태승 미야모토 고이치 각하’로 되어 있다. 『구한말조약 휘찬, 1876-1945』 상, 121쪽.

15) 양국 문서의 작성일(1876년 음력 7월 6일, 양력 8월 24일)이 동일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양국 실무자가 사전에 협의할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동시에 문서를 교환한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하나는 표민경비(해난구조비)를 계산하여 갚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 정부 안의 ⑤에서 언급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표류민에게 노역을 시켜서라도 표민경비(해난구조비)를 갚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일본 정부 안의 ⑨~㉠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 듯이 보일 뿐,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 정부가 문서에 공식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전통 방식(무상송환)에서 새로운 방식(유상송환)으로 전환하면서 계승할 것과 단절할 것을 언급한 일본 정부 안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1876년(조선 7월 6일, 일본 8월 24일) 작성된 조선과 일본의 외교문서 교환으로 표민경비(해난구조비)를 포함한 양국의 표류민 송환(해난구조)이 새로운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3. ‘정액상환(定額償還)’에서 ‘실비상환(實費償還)’으로 개정(1887~1914년)

이 시기는 표민경비상환법(漂民經費償還法)이 개정된 이듬해인 1887년부터 조선수난구호령(朝鮮水難救護令)이 제정된 1914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표민경비(해난구조비)가 ‘정액상환(定額償還)’에서 ‘실비상환(實費償還)’으로 바뀐 점과 해난구조 제도가 ‘국제조약’의 형태로 통일되는 점이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후 약 10년이 지나는 동안 종래의 방식(무상송환)에서 유상송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지만, 표민경비(해난구조비)의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실비(實費)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비용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조선인들의 표류가 많았던 일본의 표착지(長崎縣, 山口縣 등)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 1일 金 10錢씩’¹⁶⁾ 상환을 받게 된 이후 시기인 1877년 9월 19일 야마구치 현령[山口縣令] 세키구치 다카요시(關口隆吉, 1836~89)는 내무경(內務卿)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1830~78)에게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바 있다.¹⁷⁾ 즉 1877년 4월부터 6월까지 야마구치현 관내로 표착한 조선인 관련 제반 비용으로서 서면(書面)의 금액을 예비금(豫備金) 중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작년(1876년-인용자주) 태정관(太政官) 제110호 달(達)에 따라 지급(至急)으로 (야마구치현에)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 금액의 내역을 보면 ‘금 277엔 56전 5리’ 중에서 조선 정부로부터 ‘금 48엔 60전’을 상환받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금 228엔 96전 5리’가 ‘관비(官費)’로 충당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야마구치현이 내무성에 지급 신청한 것은 총액의 8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것은 일본 정부가 국고(國庫)에서 충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지방’ 또는 ‘지역’의 논리였다고 볼 수 있다.

16) 조선으로 표류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錢 50文씩’이 정액(定額)이었다.

17) 정성일, 위의 논문, 99-100쪽.

위의 야마구치현 주장대로 한다면, 일본 표착지 야마구치현 관내에서 1877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조선인 표류민 관련 표민경비(해난구조비) 중 조선인 표민이 ‘1인 1일 금 10전씩’ 정액(定額)으로 계산하여 부담한 것은 전체의 17.5%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조차 조선 정부로부터 상환받는 표민경비(해난구조비)가 실비(實費) 총액의 2할에 못 미친다는 일본 내부의 비판을 마냥 지나칠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표착 일본 선박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얻을 수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아무튼 1886년 9월 한일 표민선 구로비 상환 협정(韓日漂民船救擄費償還協定)에 관한 왕복 문서가 서로 교환되었다.¹⁸⁾ “1876년에 정한 비액예정(費額豫定) 곧 상환할 금액을 고정시켜 놓은 정액상환(定額償還)의 방법이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새롭게 실비(實費)를 계산하여 상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미 1879년에 일본이 영국과, 그리고 그보다 3년 뒤인 1882년에 조선은 미국과 각각 ‘실비상환(實費償還)’을 골자로 하는 표민경비(해난구조비) 관련 국제협약(國際協約)을 체결한 바 있다. 그 뒤 조선은 영국(1893.11), 독일(1883.11), 이탈리아(1884.6), 러시아(1884.7), 프랑스(1886.6) 등과 차례로 비슷한 수준의 조약을 맺었다. 따라서 조선-일본 간 협정도 이른바 ‘국제표준’에 맞추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⁹⁾

한일 표민선 구로비 상환 협정(韓日漂民船救擄費償還協定) 체결 이후 일본 정부는 후속 조치로서 표민경비상환법(漂民經費償還法)을 개정하였으며, 그것을 1887년 6월 3일 칙령(勅令) 제21호로 공포하였다(『관보』 1887년 6월 6일자). 그 뒤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담아서 ‘표민경비상환법(漂民經費償還法) 중 원주상환수속(原主償還手續)’을 마련한 외무성은 성령(省令) 제2조로 이를 공포하였다.²⁰⁾

그런데 새로 개정된 표민경비상환법의 적용 사례를 보면, ‘불균형’ 또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900년 시마네현[島根県]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와 관련하여, 당시 외무성 관리가 적은 내용을 간추려서 옮기면 아래와 같다.²¹⁾

- 시마네현 관내로 표류한 조선인 표민 29명 관련 비용을 금 820엔 24전 5리로 계산
- 그 중 표민을 호송하는 순사(巡査)의 여비(旅費)만 308엔 11전(전체의 37%)
- 1886년 9월 독판(督辦) 김윤식(金允植)과 다카히라[高平] 대리공사(代理公使)가 합의한 공문서에 따르면, “구호해송(救護解送)의 네 글자 속에는 본디 (표민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차 운임과 기선 운임 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의 관리가 호

18) 일본 문서에는 “1886년(明治 19) 9월 7일 제39호 서한의 왕복으로 협정이 성립되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한 조선의 회답 문서에도 “1886년 9월 7일 협정이 성립”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협정문의 내용을 “본 아문(衙門)이 연해 지방과 세 항구에 훈달(訓達)하여 준행(遵行)하도록 하겠다”고 적고 있다. 정성일, 위의 책, 441-442쪽.

19) 정성일, 같은 책, 445쪽.

20) 정성일, 같은 책, 441-445쪽.

21) 정성일, 같은 책, 385-386쪽.

송을 위해 출장을 가는 여비까지 조선 정부에 상환을 요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로 염치없게 생각된다.”

일본 외무성의 영사(領事)조차도 ‘온당치 못한 일’이라서 ‘염치없게 생각된다’고 적을 정도도, 시마네현에서는 조선 정부에 상환을 요청할 표민경비(海難구조비)를 과도하게 산정한 바 있다. 당시 ‘국제관례’로 보더라도 ‘난민의 본국 정부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전체의 37%나 차지하는 308엔을 책정한 이 사례는 당시 일본 측의 법 적용에서 ‘형평성’과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정반대의 사례도 발생하였다. 1900년 3월 5일 일본의 외무대신(外務大臣)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에게 재부산영사(在釜山領事) 노세 다쓰고로[能勢辰五郎]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²²⁾

- 조선의 관민(官民)은 옛날 관례(慣例)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풍습이 있어서,
- 일본인이 조선 연안에 표착(漂着)하는 일이 한 두 번이라도 발생하면,
- 어떤 경우이든 그 지방관(地方官)이 상당한 정도의 구조(救助)를 하여 구호 관리(救護官吏)까지 붙여서 부산항으로 송환해 오는데도,
- 그 비용(費用) 등은 모두 (조선의) 지방관에서 지불한다.
- 아직까지도(1900년-인용자주) 협약서(協約書)에 기초하여 (조선이) 재부산일본영사관(在釜山日本領事館)을 상대로 그 비용을 청구해 본 적이 없다.

위 문건은 당시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영사가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내용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900년 무렵까지도 조선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표민경비(海難구조비)의 상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영사의 말을 증명할 만한 한국 측 증거를 찾아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일본 영사의 이 말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양측에 모두 존재한다.

예를 들면 조선에서는 앞의 ‘표민경비상환법’이 개정된 1886년 8월 11일(양력 9.7.)에서 한 달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그해 9월 27일 조선 정부는 이 지침을 전라감영(全羅監營)에 하달하였다. 이것을 보면 조선 정부도 새 제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1887년 4월 제주목(濟州牧)이 일본 표류민 관련 표민경비(海難구조비)를 계산하여 적은 ‘회계 성책(會計成冊)’을 근거로 하여 대한제국 정부가 청구한 금액이 일본 외무성 기록에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²³⁾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의 지역마다 지방관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22) 정성일, 같은 책, 445-447쪽.

23) 실제로 1887년(高宗 24, 明治 20) 4월 제주목이 작성한 자료에는 조선 측이 일본의 조난선박 구조와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하여 보고하였으며, 그것에 기초하여 조선 정부가 청구한 비용의 내역이 일본 외무성 기록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添紙] 朝鮮政府ヨリ請求ノ費額(朱書)에는 45개 항목에 걸친 비용의 합계[合錢]를 1,305兩 4錢 6分 5厘로 기재). 붉은색으로 ‘조선 정부가 청구한 비용 금액’이라고 외무성 측이 메모를 남길 정도로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光緒十三年四月日 旌義縣漂到日本人高尾子之吉等三名日供雜費會計成冊」(濟州牧), 『困難船及漂民救助雜件: 日本國之部』 제15권(일본 외무성 外交史料館, 문서번호 3.6.7.1-3)

아무튼 1900년 ‘시마네현의 표민경비(해난구조비) 과다 산정(過多算定)’ 사례와 1900년 재부산일본영사관 보고 자료에 보이는 ‘조선 지방관의 표민경비(해난구조비) 불청구(不請求)’ 사례가 두 극단(極端)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것이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해 주는 흥미로운 자료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III. 1914년 일제의 朝鮮水難救護令 제정

1. 1914년 일제의 조선 해난구조 법제화

1914년(大正 3) 4월 7일 조선총독부는 조선수난구조령(朝鮮水難救護令) 등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수난구조법(1899년 제정)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조선수난구조령과 동령 시행규칙, 동령 취급수속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수난구조법(水難救護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일제는 수난구조법이 있었는데도 따로 조선수난구조령을 제정하였을까? “현행 해사법규(海事法規)가 구한국법령(舊韓國法令)과 통감부령(統監府令)이 양립(兩立)하여 적용(適用)되다 보니 취급상(取扱上)의 부족(不足)한 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은 기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²⁴⁾ 이는 한 마디로 일제가 식민 통치의 편의와 효율성을 중시하여 내놓은 해결책의 하나로 추진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1) 조선수난구조령(朝鮮水難救護令)의 제정²⁵⁾

일제는 조선총독부제령 제12호로 조선수난구조령을 제정하였다. 제정일은 1914년(大正 3) 4월 7일이며, 시행일은 동년 6월 1일이다. 아래에 전문(全文)을 소개하였다.²⁶⁾

24) 1914년(大正) 4월 7일 ‘朝鮮船舶令制令案外六件 右謹テ裁可ヲ仰ク 大正三年四月七日’라 적은 표지와 함께, 조선수난구조령 등 7개 법안의 재가를 내각총리대신 백작 山本權兵衛가 요청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다. 이 자료의 맨 뒤에는 理由가 적혀 있는데, “現行ノ海事法規ハ舊韓國法令と統監府令ト兩立シテ適用セラレ取扱上種々ノ支障アルノミナラス不備不足ノ點亦尠カラサルニ付此ノ際朝鮮船舶令外六件ノ法規ヲ制定統一シテ船舶海員ノ取締ヲ爲スノ必要アルニ依ル”라 되어 있다. 원문은 일본 國立公文書館 데이터베이스 참조.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1945년 광복 이전의 이른바 ‘근대법령(近代法令)’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1914년 일제가 제정한 조선수난구조령(朝鮮水難救護令)이 들어 있어서 이를 참조하였다.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탑재해 놓았을 뿐, 일본어 원문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조선수난구조령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확인하였다.

26) 朝鮮水難救護令明治四十四年法律第三十號第一條及第二條ニ依リ勅裁ヲ得テ茲ニ之ヲ公布ス

大正三年四月七日 朝鮮總督 伯爵 寺內正毅

制令第十二號

朝鮮水難救護令

第一條 水難救護ニ関シテハ本令ニ規定スルモノヲ除クノ外水難救護法ニ依ル但シ同法中市町村長トアルハ警察署長又ハ其ノ職務ヲ行フ者トス

第二條 面長ハ救護ノ職務ニ關シテ警察官吏又ハ其ノ職務ヲ行フ者ヲ助ケ警察官吏又ハ其ノ職務ヲ行フ者現場ニ

제령 제12호

조선수난구호령

제1조 수난구호에 관하여는 이 영이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수난구호법에 의한다. 다만, 동법 중 시정촌장은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2조 면장은 구호사무에 관하여 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도와 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현장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를 대신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에서 보듯이 조선수난구호령은 조항이 모두 2개뿐이다. 언뜻 보면 너무 간단하여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마저 든다. 그런데 동법 제1조에서 “이 영(조선수난구호령-인용자주)이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수난구호법에 의한다.”고 정한 대목에 눈길이 간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난구호법’이 ‘메이지(明治) 32년 법률 제95호’인 일본의 법률을 가리키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1914년 일제가 제정한 조선수난구호령이 일본의 ‘1899년(明治 32) 수난구호법’을 상위법(上位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수난구호법이 적용되는 하위 법령에 해당하기에, 이를 ‘조선수난구호법’이라고 명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선수난구호령’이란 이름이 붙은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행정단위가 ‘본국’인 일본의 그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일본의 수난구호법에 규정된 ‘시정촌(市町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조선수난구호령에 담을 수는 없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수난구호법 제1조는 “조난선박(遭難船舶) 구호 사무(救護事務)는 최초로 사건(事件)을 인지(認知)한 시정촌장(市町村長)이 수행한다.”고 하여,²⁷⁾ 조난을 당한 선박의 구조와 구호의 책임자로 ‘시정촌장’을 지정해 놓았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행정단위가 ‘시정촌(市町村)’은 아니었다. 그래서 조선수난구호령 제1조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동법(일본의 수난구호법-인용자주) 중 시정촌장(市町村長)은 경찰서장(警察署長)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선수난구호령 제2조의 ‘면장(面長)’도 식민지 조선의 행정단위를 고려하여 여기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제가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각 지역에 지사(知事)와 군수(郡守), 면장(面長)이 있었음에도, 굳이 경찰서장을 해난구조의 책임자로 정한 것은 억압

有ラサルトキハ之ニ代リ其ノ職務ヲ執行スヘシ

附則

本令ハ大正三年六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朝鮮總督府官報』號外(大正 3년 4월 7일, 3쪽).

27) 法律 第95號 水難救護法

第一章 遭難船舶

第一條 遭難船舶救護ノ事務ハ最初ニ事件ヲ認知シタル市町村長之ヲ行フ

일본 國立公文書館 데이터베이스 참조.

기구인 경찰을 식민 통치에 활용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2) 조선수난구호령시행규칙(朝鮮水難救護令施行規則)의 제정²⁸⁾

일제는 1914년 5월 31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조선수난구호령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으로 줄임)을 제정하였다. 이 시행규칙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부칙(附則)에 “조선수난구호령 시행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²⁹⁾ 즉 이 시행규칙의 제정일은 5월 31일이지만, 시행일(1914.6.1.)은 조선수난구호령과 동일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을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³⁰⁾

조선총독부령 제83호

조선수난구호령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914년 5월 31일

조선 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다케

시행규칙은 3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조난선박(遭難船舶), 제2장은 표류물과 침몰품(漂流物及沈沒品), 그리고 제3장은 공매(公賣)에 대하여 각각 규정되어 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장 조난선박(遭難船舶)

시행규칙 제1조에서는 “수난구호법 제10조에³¹⁾ 정한 선난보고서(船難報告書)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고 선장(船長)은 여기에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면서 아래의 9가지 기재 사항을 열거하였다.

28) 조선수난구호령시행규칙(朝鮮水難救護令施行規則)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대법령(近代法令)’ 서비스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2021년 12월 현재). 그래서 조선수난구호령시행규칙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조선총독부관보』(號外, 大正 3년 5월 31일)에서 확인하였으며, 필자가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29) 附則

本令ハ朝鮮水難救護令施行ノ日ヨリ之ヲ施行ス。
『朝鮮總督府官報』 號外(大正 3년 5월 31일).

30) 朝鮮總督府令 第83號

朝鮮水難救護令施行規則左ノ通定ム

大正三年五月三十一日

朝鮮總督 伯爵 寺內正毅

『朝鮮總督府官報』 號外(大正 3년 5월 31일).

31) 일본의 수난구호법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선장(船長)은 조난 후 지체없이 선난보고서(船難報告書)를 작성하여 시정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적증서(船舶國籍證書)의 교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선박, 또는 호수, 하천, 항만(湖川港灣)으로만 항행(航行)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시정촌장(市町村長)은 보고서의 사실을 심사하여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장(船長)의 청구에 의하여 인증(認證)을 부여 하여야 한다.

시정촌장은 보고서의 사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내(船內)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선원, 여객(旅客), 기타 배 안에 있는 자를 호출하여 신문(訊問) 할 수 있다.”

- 선박의 종류와 명칭
- 적재량(총 톤수 또는 積石數)
- 선적항(船籍港)
- 선박 소유자의 성명³²⁾ 또는 명칭
- 발선항(發船港), 기항지(寄港地), 도착항 및 조난 장소
- 조난 및 구조(救助)의 전말
- 선박의 손해
- 사상자(死傷者)의 성명
- 멸실(滅失) 또는 훼손(毀損)한 적하(積荷)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기타 하조(荷造)의 종류, 개수(個數), 기호 및 용선자(傭船者) 또는 하송인(荷送人)의 성명 또는 명칭

이것은 전근대 시기의 표류민 조서(調書)에 담긴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다양하고 항목이 더 많아졌다. 조선후기(에도시대)에도 표류민(난민)의 성명을 비롯하여, 연령과 종교, 호패(신분증) 소지 여부 등이 조사 항목에 들어 있었으며, 선박의 크기(長, 幅, 深)와 돛대의 개수(個數) 등 선구(船具)와 함께, 소지품 등을 조사하여 열거하였다. 그런데 1914년 이후는 적재량과 선적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었으며, 선박의 손해 규모와 그 내역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더 상세하게 적게 한 것이 그 이전 시기와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한다.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수난구조법 제14조 제1항의³³⁾ 규정에 의하여 구호 비용(救護費用)의 금액을 주장할 때는 서면(書面) 또는 구두(口頭)로 그 금액과 이를 산출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경찰서장은 각 지역의 관습에³⁴⁾ 따라 정한 임전(賃錢)을 기초로 하여 각인(各人)이 수행한 노무(勞務)의 종류, 시간의 장단, 위험의 정도 및 피해의 대소를 참작하여 노무의 보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역의 관습에 따른 임전(賃錢)은 경찰서장이 미리 정하고 경무부장(警務部長)의 인가를 받아 그 금액을 정률(定率)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아마도 시행규칙 제7조는 동 제6조의 표민경비(해난구조비) 계산에 필요한 인건비(노임) 산정 때, 경찰서장이 그 단가를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행규칙 제1장의 조난선박과 관련해서는 표민경비(해난구조비)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전 시기에도 1876년 이후 유상송환(정액송환) 방식의 채택 후에는 표민경비(해난구조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고 있었으며, 더구나 1886년 그것이 ‘실비상환’으로 변경된 뒤로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서에 담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1914년에 법으로 명문화(明文化) 하여 법적 강제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2) 원문은 氏名임. 이하 같음.

33) 일본의 수난구조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구호비용(救護費用)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정촌장(市町村長)이 지정하는 기간(期間) 내에 그 금액(金額)을 요구하여야 한다.”

34) 원문은 地方習慣上임.

② 제2장 표류물과 침몰품(沈沒品)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표류물 또는 침몰품은 이를 습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引渡)하고 항해 중 습득한 경우에는 그 뒤 가장 처음으로 도착한 지역의 경찰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표류물 또는 침몰품의 관리 책임을 맡은 그 지역의 관할 경찰서장은 물건(표류물, 침몰품)의 내용(물건의 명칭, 수량, 습득 일시와 장소 등)을 신문 등에 게재하여 미리 명시(明示)하여야 했다. 이것에 관한 것이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물건(표류물, 침몰품)의 소유자가 이를 넘겨받고자 할 때는 경찰서장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거쳐서 인도(引渡)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시행규칙 제12조).

③ 제3장 공매(公賣)

경찰서장에게 신고된 물건(표류물, 침몰품)이 소유자를 찾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럴 때는 경찰서장이 “수난구호법 제11조 제1항,³⁵⁾ 제17조 제1항,³⁶⁾ 제28조 제3항³⁷⁾ 및 제30조 제2항³⁸⁾에 규정하는 입찰(入札) 방법으로 공매(公賣)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규칙 제13조). 이와 덧붙여서 “경찰서장이 공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아래 사항을 공고(公告)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두 가지 공고할 사항(㉠ 물건의 종류, 수량과 품질, ㉡ 공매 장소와 일시)을 열거하였다(시행규칙 제14조).

(3) 조선수난구호령취급수속(朝鮮水難救護令取扱手續)의 제정³⁹⁾

35) 일본의 수난구호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시정촌장(市町村長)은 구조하여 건져낸 물건이 아래 열거하는 사항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공매(公賣)하여 그 대금(代金)을 보관 하여야 한다.

1. 물건이 오래 견디기 어려운 경우, 또는 현저하게 그 가격이 낮아질 염려가 있을 때
2. 폭발물, 쉽게 탈 수 있는 물건, 또는 기타 물건으로서 보관상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3. 보관의 비용,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거나, 또는 그 가격에 비하여 상당(相當)하지 않을 때”

36) 일본의 수난구호법 제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선장(船長) 또는 선박 소유자(船舶所有者)가 시정촌장이 정한 기간(期間) 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시정촌장(市町村長)은 보관 물건 또는 담보로 하여 차출한 물건을 공매(公賣)하여 그 대금을 보관 하여야 한다.”

37) 일본의 수난구호법 제28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습득자가 전항(前項)의 기간 내에 물건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는 시정촌장(市町村長)은 그 물건을 공매(公賣)하여 그 대금으로 전항의 비용을 공제(控除)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잔여(殘餘)가 있을 때는 시정촌의 취득으로 한다.”

38) 일본의 수난구호법 제30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전항(前項)의 기간 내에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는 시정촌장(市町村長)은 그 물건을 공매(公賣)하여 그 대금을 가지고 제거, 보관, 공고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지면(支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잔여(殘餘)가 있을 때는 시정촌장의 취득으로 한다.”

39) 조선수난구호령취급수속(朝鮮水難救護令取扱手續)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대법령(近代法令)’ 서비스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2021년 12월 현재). 그래서 조선수난구호령취급수속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조선총독부관보』(號外, 大正 3년 5월 31일)에서 확인하였으며, 필자가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일제는 1914년 5월 3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4호로 조선수난구조령취급수속(이하 ‘취급수속’으로 줄임)을 제정하였다. 그러면서 이 취급수속의 시행일을 6월 1일로 정하였다. 이로써 조선수난구조령과 동 시행규칙, 취급수속 모두 시행일이 1914년 6월 1일로 동일해졌다. 동 취급수속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⁰⁾

조선총독부 훈령 제24호

경찰관서의 장
면 장

조선수난구조령취급수속을 아래와 같이 19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14년 5월 31일 조선 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다케

취급수속은 2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조난선박(遭難船舶), 제2장은 표류물과 침몰품(沈沒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장 조난선박(遭難船舶)

취급수속 제1조에서는 “조난선박을 구호(救護) 할 경우, 사람의 모집, 물건의 징용(徵用), 기타 일반의 처분(處分)에 대해서는 구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한도로 하여 구호 비용(救護費用)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注意)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표민경비(해난구조료)의 ‘실비상환’은 조난선박의 구조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도 구조할 유인(誘因)을 제공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 비용이 과다할 때 생기는 역기능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조문(條文)에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취급수속 제2조에서는 “구호(救護)는 인명(人命)을 우선으로 하여 차례로 우편물(郵便物), 선내 서류(船內書類), 기타 물건(物件)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것은 구조를 할 때 우선순위를 법으로 정한 것인데,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우편물, 세 번째는 배 안의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물건을 구조하도록 명시하였다. 우편물을 인명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순위에 우선 배치한 것이 흥미롭다.

취급수속 제4조에서는 “조난선박이 외국(外國)의 국적(國籍)에 속할 때는 경찰서장은 사건을 인지(認知) 한 뒤 지체없이 경무부장(警務部長)에게 아래 사항을 보고(報告)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경찰서장이 조선총독부 경무국(경무부장)에 보고할 두 가지 사항(㉠ 선박의 국적과 명칭, ㉡ 조난의 사유, 장소와 연월일)을 열거하였다. 아마도 경무국에 보고된 외국 선박에 대한 사항은 외교 경로를 거쳐서 관련 국가에 통보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40) 朝鮮總督府訓令 第24號

警察官署ノ長
面 長

朝鮮水難救護令取扱手續左ノ通定メ大正三年六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大正三年五月三十一日 朝鮮總督 伯爵 寺內正毅

『朝鮮總督府官報』 號外(大正 3년 5월 31일).

취급수속 제6조에서는 “구호를 수행한 경찰서장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구호시말서(救護始末書)를 작성⁴¹⁾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12가지를 열거하였다.

- 조난선박의 종류, 명칭 및 적량(積量)과 함께 외국의 선박일 때는 그 국적
- 선적항(船籍港)
- 선박 소유자의 주소, 성명⁴²⁾ 또는 명칭
- 선장(船長)의 성명과 함께, 바다 관련 기술 면허증(海技免狀)이 있을 때는 그것의 종류와 번호
- 해난(海難)의 사유, 연월(年月), 일시 및 장소
- 구호의 상황
- 구호에 관계한 자의 성명, 노무의 종류, 시간, 수난구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장한 금액(金額) 및 경찰서장이 정한 구호 비용(救護費用), 수난구호법 제12조 각호(各號)⁴³⁾에 열거된 자가 있을 때는 그에 관한 사항
- 징용(徵用)을 한 물건(物件) 및 사용(使用)한 토지(土地)의 종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용 시간, 손상의 유무 및 정도, 수난구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장한 금액(金額), 경찰서장이 정한 구호 비용(救護費用)
- 선원(船員) 및 여객(旅客)의 원수(員數), 사상자(死傷者)의 성명 및 주소
- 구조를 한 물건(物件) 종류 및 수량
- 공매(公賣)를 한 물건(物件)의 종류, 수량 및 공매 대금(公賣代金)
- 물건(物件)의 운반(運搬), 보관(保管), 또는 공매(公賣)에 소요된 비용(費用)

취급수속 제8조에서는 “조난선박이 외국의 국적에 속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수난구호법 제15조 제2항⁴⁴⁾ 및 제3항⁴⁵⁾의 수속(手續)을 하게 하고자 하더라도, 선장(船長),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조선(朝鮮)에 있지 않을 때는 경찰서장은 구호 비용(救護費用)의 금액 및 이를 납부(納付) 하여야 할 기간(期間)을 경무부장(警務部長)에게 제안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경무부장은 전항(前項)의 금액 및 기간을 가장 가까운 지역에 주재(駐在)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관(領事官)에게 통지(通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을 보면 앞의 취급수속 제4조와 마찬가지로, 외국

41) 원문은 調製임. 이하 같음.

42) 원문은 氏名임. 이하 같음.

43) 일본의 수난구호법 제12조 각호는 다음과 같다.

“구호(救護)에 관계한 자는 시정촌장으로부터 구호비용(救護費用)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전항(前項)의 규정은 아래에 열거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구호를 받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그 선박의 선원
2. 고의, 게으름,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난을 일으킨 자
3.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호한 자
4. 구호가 이루어질 때 방해를 하거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
5. 조난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또는 그것의 인도(引渡)를 거절한 자”

44) 일본의 수난구호법 제15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시정촌장(市町村長)은 구호비용(救護費用)의 금액을 선장(船長)에게 고지(告知)하고 기간(期間)을 정하여 납부(納付)하게 하여야 한다.”

45) 일본의 수난구호법 제15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조난선박(遭難船舶)의 소재지(所在地)가 선적항(船籍港)일 때, 또는 선장(船長)이 없을 때는 전항(前項)－제15조 제2항, 인용자주－의 고지는 선박 소유자(船舶所有者)에게 하여야 한다.”

선박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경무국에 보고한 사항, 특히 표민경비(해난구조료)의 금액과 상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외교 경로를 거쳐서 해당 국가에 통보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취급수속 제11조에서는 “경찰서장은 수난구조법 제19조⁴⁶⁾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國庫)에서 구호 비용(救護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支給)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구호비용보급청구서(救護費用補給請求書)에 구호시말서(救護始末書)의 등본(謄本)을 첨부하여 경무부장(警務部長)을 거쳐서 조선 총독(朝鮮總督)에게 제출(提出)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것은 표민경비(해난구조비)를 각 지역이 아닌 중앙(국고)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선총독부 총독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취급수속 제12조에서는 “경찰서장은 구호 사무(救護事務)가 종료하였을 때는 한 달 내에 구호시말서(救護始末書)의 등본을 해당 경무부장(警務部長)에게 제출(提出)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각 지역(경찰서)에서 발생한 표류(해난) 사고에 대한 정보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 집중되도록 법이 갖추어진 셈이다.

② 제2장 표류물과 침몰품(沈沒品)

취급수속 제13조에서는 “경찰서장은 습득자(拾得者)로부터 표류물(漂流物) 또는 침몰품(沈沒品)의 인도(引渡)를 받을 때는 습득 일시, 장소와 함께 물건이 존재하게 된 상황을 신문(訊問)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것은 바다 위 또는 밑에서 건져낸 물건(표류물, 침몰품)이 경찰서장에게 넘겨질 때, 그에 관한 내용(습득 일시와 장소 등)을 조사하여 확인할 책임과 의무를 경찰서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취급수속 제14조에서는 “경찰서장은 표류물 또는 침몰품의 건명서(件名書)를 작성하여 여기에 아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10가지를 열거하였다.

- 물건의 명칭, 수량, 품질, 기타 필요한 표시(表示)
- 습득 일시와 장소
- 물건의 인도(引渡)를 받은 일시
- 습득자의 주소와 성명
- 공고(公告) 방법, 공고 또는 고지(告知)를 한 연월일
- 물건의 평가액(評價額)
- 공고, 보관, 공매(公賣) 또는 평가에 소요된 비용
- 습득자에게 지급하는 몫과 금액
-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 수난구조법 제28조 제3항⁴⁷⁾의 경우 국고(國庫)의 취득액(取得額) 또는 보급 금액(補給金)

46) 일본의 수난구조법 제19조는 다음과 같다.

“선장(船長) 또는 선박 소유자(船舶所有者)가 구호비용(救護費用)을 납부(納付)하지 않은 경우에 제17조에 정하는 수속(手續)을 한 뒤, 시정촌장(市町村長)의 보관(保管)에 관계되는 금액을 가지고 구호비용을 지번(支辨)하고도 잔여(殘餘)가 있을 때는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額)

취급수속 제16조에서는 “수난구호법 제28조 제3항 또는 제30조 제2항⁴⁸⁾의 경우 국고(國庫)의 취득(取得)으로 하여야 할 잔여(殘餘)가 발생하거나, 또는 국고의 보급(補給)을 받아야 하는 부족(不足)을 발생시켰을 때는 경찰서장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표류물 및 침몰품 계산서(漂流物及沈沒品計算書)를 작성하여 경무부장(警務部長)을 거쳐서 조선 총독(朝鮮總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때 기재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4가지 열거하였다.

- 물건의 명칭, 수량 및 품질
- 공매 대금(公賣代金)
- 공고, 보관 및 공매의 비용
- 잔여 또는 부족한 금액

취급수속 제17조에서는 “경찰서장이 아닌 자가 조선수난구호령(朝鮮水難救護令)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 때에는 조선수난구호령시행규칙 제4조의 선난보고서(船難報告書), 동 제8조의 구호비용계산서(救護費用計算書), 동 제11조 및 제14조의 신문지 게재 공고(新聞紙掲載公告)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이 영(조선수난구호령취급수속-인용자주)의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의 서류를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은 정해진 수속(手續)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취급수속 제18조에서는 “경찰서장은 해마다 1회씩 부록 제1호 서식(書式)에 따라서 표류물 및 침몰품 건수표(漂流物及沈沒品件數表)를 작성하여 2월 말까지 경무부장(警務部長)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경무부장은 경찰서장이 제출한 건수표(件數表)를 통계(統計)하여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다시 표류물 및 침몰품 건수표(漂流物及沈沒品件數表)를 작성하며, 그해 3월 말까지 경무총장(警務總長)을 거쳐서 조선 총독(朝鮮總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발생한 표류(해난)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인도된 물건(표류물, 침몰품)을 매년 통일된 양식(부록 1, 2 참조)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조선총독부 총독에게 보고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취급수속 제19조에서는 “경찰서장은 조선수난구호령(朝鮮水難救護令)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公賣) 하거나, 또는 습득자(拾得者)에게 인도(引渡) 하게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건이 관세(關稅)를 납부하지 않은 화물(貨物)일 때는 그 종류와 수

47) 일본의 수난구호법 제28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습득자가 전항(前項)의 기간 내에 물건의 인도(引渡)를 받지 않을 때는 시정촌장(市町村長)은 그 물건을 공매(公賣)하여 그 대금으로 전항의 비용을 공제(控除)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잔여(殘餘)가 있을 때는 시정촌(市町村)의 취득으로 한다.”

48) 일본의 수난구호법 제30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전항(前項)의 기간 내에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는 시정촌장은 그 물건을 공매(公賣)하여 그 대금을 가지고 제거, 보관, 공고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지변(支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잔여(殘餘)가 있을 때는 국고(國庫)의 취득(取得)으로 하고, 부족이 있을 때는 국고에서 이를 보급(補給)한다.”

량 및 공매 또는 인도 장소와 함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인용자주) 기일(期日)을 세관 관리(稅關官吏), 세관 관리가 현장에 있지 않을 때는 수세 관리(收稅官吏)에게 통지(通知)하고, 또한 세관 수속을 마치지 않은 물건임을 입찰자(入札者) 또는 습득자(拾得者)에게 고지(告知)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부록 제1호 서식(書式)				
표류물 침몰품 건수표				(何年分)
종별		표류물	침몰품	합계
취급 건수	전년의 越高			
	본년의 受高			
	익년의 越高			
물건 가격	전년의 越高			
	본년의 受高			
	익년의 越高			
所有者에게 引渡한 건수				
拾得者에게 引渡한 건수				
수난구호법 제28조 제3항 또는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公賣한 건수				
拾得者에게 支給한 分一金額				
공고, 보관, 평가 및 取除 公賣價格				
국고의 取得으로 된 금액				
국고에서 補給한 금액				

부록 제2호 서식(書式)				
조난선박 구호 취급표				(何年分)
	被救護船數	救護費	公賣代金	국고보조금
汽船				
噸數帆船				
石數帆船				
계				

비고 구호비란 수난구호법 제13조에 규정한 비용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취급수속의 부록으로 제시된 양식 두 가지가 제1호 서식(표류물 침몰품 건수)과 제2호 서식(조난선박 구호 취급표)이다.⁴⁹⁾ 각 지역의 경찰서장은 매년 2월 말

49) 이 밖에도 ‘해난과 그 밖의 사고를 조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해 놓은 海難其他事故取調手續이 조선총독부 훈령 제25호로 1914년 5월 31일 제정되어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朝鮮總督府官報』

까지 조선총독부 경무부장에게, 그리고 경무부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총독에게, 해마다 1회씩 이 서식에 맞추어서 표류(해난사고)와 관련된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조선수난구호령취급수속 제18조). 이 밖에도 상위 법령인 일본의 수난구호법(1899년 제정)과 조선수난구호령(1914년 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선난보고서(船難報告書)와 구호비용계산서(救護費用計算書) 등이 각지에서 작성되어(조선수난구호령취급수속 제17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서장을 통해 경무부장에게 보고되도록 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조선수난구호령(朝鮮水難救護令)의 적용 사례(1938년)

1914년 6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조선수난구호령(朝鮮水難救護令)과 조선수난구호령시행규칙(朝鮮水難救護令施行規則), 그리고 조선수난구호령취급수속(朝鮮水難救護令取扱手續)을 시행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그 뒤 이 법령(法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이를 밝힐 만한 자료가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도 없었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에서 찾아낸 『해사관계서류(海事關係書類)』(1939년)를 바탕으로 하여, 1938년도 ‘표류물 침몰품 건수표(漂流物沈沒品件數表)’⁵⁰⁾와 ‘조난선박 구호 취급표(遭難船舶救護取扱表)’⁵¹⁾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수난구호령취급수속의 부록 제1호 서식 <표류물 침몰품 건수표>에 따라 각도가 경무국에 보고한 내용을 정리한 총괄표가 <표 1>이다.

(제1호 서식)

<표 1> 漂流物 沈沒品 件數 총괄표(1938년)

종 별		표류물		침몰품		합계	
취급 건수	전년의 越高	627		30		657	
	본년의 受高	1,051		35		1,086	
	익년의 越高	859		28		887	
물건 가격(円)	전년의 越高	28,002円	51	2,294円	34	30,296円	85
	본년의 受高	144,617円	25	4,727円	10	218,819円	35
	익년의 越高	118,896円	20	24,292円	60	143,187円	80
所有者에게 引渡한 건수		362		9		371	

號外(大正 3년 5월 31일)을 참조.

50) 「漂流物取扱品件數表」는 『昭和十四年 海事關係書類 警務課』(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문건의 하나이다. 각 도가 작성한 서식은 ‘동 취급수속 부록의 제1호 서식’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道別로 미세한 차이도 보이며 작성 내용에서도 다른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51) 「遭難船舶救護取扱表」는 『昭和十四年 海事關係書類 警務課』(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목록 중 ‘47 遞信局宛 遭難船舶救護取扱表’로 되어 있는 문건이다. 이 자료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무과에서 각 보가 보고한 자료를 취합한 것을 경무국장이 체신국장 앞으로 보낸 것이다. ‘(昭和) 14.4.14.’이라는 연월일이 찍힌 도장에 ‘發送濟’라 새겨진 것을 보면, 1939년 4월 14일 경무국에서 (체신국 앞으로) 발송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조선수난구호령취급수속 제8조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송부(送付)한다.”고 적혀 있는데, 서식은 ‘동 취급수속 부록의 제2호 서식’과 동일하다.

拾得者에게 引渡한 건수	457	28	485
수난구조법 제28조 제3항 또는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公賣한 건수			
拾得者에게 支給한 分一金額(円)	9,378円 26전	332円 25전	9,710円 51전
공고, 보관, 평가 및 제거, 公賣 價格(円)	54円		54円
국고의 取得으로 된 금액(円)			
국고에서 補給한 금액(円)			

주: 빈칸은 '해당사항 없음' 또는 '해당 값이 없음'을 뜻함.

자료: 「漂流物沈没品件數表」, 『昭和十四年度 海事關係書類 警務局』(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자가 작성.

〈표 2〉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표류물과 침몰품을 도별(道別)로 집계한 것이다. 13개 도(道) 중에서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다. 취급건수로 보면 전라남도(16건), 전라북도(12건), 평안북도(12건)가 많은 편이었으며, 이와 반대로 충청남도(1건), 경상북도(1건), 황해도(2건)가 적은 편에 속했다. 물건 가격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라남도(24,666円)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뒤를 전라북도(3,550円)가 차지하였다. 그리고 1938년의 경우는 전 지역에서 공고, 보관, 평가, 제거와 공매(公賣)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한 건수는 전혀 없었으며, 국고에서 보충하여 지급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킨 사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단 公賣代金은 평안북도에서 512円이 발생, 〈표 4〉 참조).

(제1호 서식)

〈표 2〉 道別 漂流物 沈没品 件數表(1938년)

종 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취급건수	전년의 越高	9		6	1	1	2	2	1	2	1	3	2
	본년의 受高		1	3	9		4		2	5	4	4	3
	익년의 越高	1		3	6		3		1	5	3	3	3
물건가	전년의 越高(円)	447 34전		1,050	200	245	13	33	30	160	21	55	40
격(円)	본년의 受高(円)		170	1,250	2,246		122		131	332	149	171	155
	익년의 越高(円)	70		1,250	22,220		52		25	460	49	11	155
							60전			50전			
所有者에게 引渡한 건수					2		1		2	1	1	1	1
拾得者에게 引渡한 건수	8		1	6	2	1	2	2		1	1	3	1
수난구조법 제28조 제3항 또는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公賣한 건수													
拾得者에게 支給한 分一金額(円)					15	245	20		35	1	15		1
										25전			
공고, 보관, 평가 및 제거, 公賣 價格(円)													
국고의 取得으로 된 금액(円)													
국고에서 補給한 금액(円)													

주: 빈칸은 '해당사항 없음' 또는 '해당 값이 없음'을 뜻함.

자료: 〈표 1〉과 같음.

다음으로 조선수난구호령취급수속의 부록 제2호 서식 〈조난선박 구호 취급표〉에 따라 각 도가 경무국에 보고한 ‘조난선박 구조 건수(遭難船舶救助件數)’를 도별(道別)로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1938년의 경우 전남의 조난선박 구조 건수가 전체 126척 중 66척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선박의 종류별로는 기선(31척, 24.6%)보다는 범선(95척, 85.4%)이 더 많았다. 그리고 범선 중에서는 톤을 기준으로 하는 범선(噸數帆船, 43척 34.1%)보다는 석을 단위로 하는 범선(石數帆船, 52척 41.3%)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호 서식)

〈표 3〉 道別 遭難船舶 救助件數 현황(1938년)

연번	道名	단위	汽船	帆船		계
				噸數帆船	石數帆船	
1	경기	척			1	1
		%			0.8	0.8
2	충북					0
3	충남					0
4	전북					0
5	전남	척	23	5	38	66
		%	18.3	4.0	30.2	52.4
6	경북	척		1	2	3
		%		0.8	1.6	2.4
7	경남					0
8	황해					0
9	평남					0
10	평북	척	1	3	7	11
		%	0.8	2.4	5.6	8.8
11	강원	척		5	3	8
		%		4.0	2.4	6.4
12	함남					0
13	함북	척	7	29	1	37
		%	5.6	23.0	0.8	29.4
합계		척	31	43	52	126
		%	24.6	34.1	41.3	100.0

주: 빈칸은 ‘해당사항 없음’을 뜻함.

자료: 『47 遭難船舶救助取扱表ニ関スル件』, 『昭和十四年度 海軍關係書類 警務局』(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자가 작성.

〈표 4〉는 1938년 전체 126척 중에서 ‘조난선박 구호비(遭難船舶救護費)’의 내역을 도별(道別)로 집계한 것이다. 그런데 13개 도(道) 중에서 7개 도(① 충북, ② 충남, ③ 전북, ④ 경남, ⑤ 황해, ⑥ 평남, ⑦ 함남)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전남(747円)과 평북(131円)의 구호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이었다. 공매대금(公賣代金)과 관련된 사항은 평안북도만 1건 있었다. 즉 석수범선(石數帆船)에 해당

하는 512엔이 그것이다.

(제2호 서식)

〈표 4〉 道別 遭難船舶 救護費 현황(1938년)

道名	종류	被救護船數	救護費		公賣代金		國庫補給金	비고
		(隻)	(円)	(錢)	(円)	(錢)	(円)	
경기	汽船							
	帆船	噸數帆船						
		石數帆船	1					
	계	1						
충북	汽船							수난구조령취급수속 제18조, "해당사항 없음"
	帆船	噸數帆船						
		石數帆船						
	계							
충남	汽船							"해당사항 없음"
	帆船	噸數帆船						
		石數帆船						
	계							
전북	汽船							"해당사항 없음"
	帆船	噸數帆船						
		石數帆船						
	계							
전남	汽船	23	140					
	帆船	噸數帆船	5	253				
		石數帆船	38	354				
	계	66	747					
경북	汽船							
	帆船	噸數帆船	1	5				
		石數帆船	2	20				
	계	3	25					
경남	汽船							"해당사항 없음"
	帆船	噸數帆船						
		石數帆船						
	계							
황해	汽船							"해당사항 없음"
	帆船	噸數帆船						
		石數帆船						
	계							
평남	汽船							"해당사항 없음"
	帆船	噸數帆船						
		石數帆船						
	계							
평북	汽船	1						
	帆船	噸數帆船	3					
		石數帆船	7	131	15	512		
	계	11	131	15	512			
강원	汽船							
	帆船	噸數帆船	5					
		石數帆船	3					
	계	8						
함남	汽船							수난구조령취급수속 제18조, "해당 없음"
	噸數帆船							
	石數帆船							
	계							

함북	汽船	7					
	帆船	噸數帆船	29	53			
		石數帆船	1				
	계		37	53			
함남	汽船		31	140			
	帆船	噸數帆船	43	311			
		石數帆船	52	505	15	512	
	계		126	956	15	512	

주: 빈칸은 '해당사항 없음' 또는 '해당 값이 없음'을 뜻함.
자료: <표 3>과 같음.

위에서 보듯이 1914년 조선수난구호령 등이 제정되어(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그 뒤로 계속해서 시행되었다. 1938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선수난구호령취급수속 제17조, 제18조에 의거하여, 표류(해난) 사고 처리 후 각 지역의 경찰서장은 그 결과를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보고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1945년 광복(光復) 이후에도 법 정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1961년 10월까지도 이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표류(해난) 사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IV. 1961년 한국의 水難救護法 제정

1.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의 제정 경과

대한민국 법제처 법률정보센터에서 1961년 11월 1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수난구호법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 제761호로 제정된 수난구호법의 부칙을 보면,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조선수난구호령은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 수난구호법과 시행과 조선수난구호령 폐지가 동시에 일어난 셈이다. 즉 1961년 11월 1일부터 대한민국 법률 제761호로 제정된 수난구호법을 시행함과 동시에, 일제가 1914년 4월 7일 제정하여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던 조선수난구호령을 대한민국 정부가 폐지한 것이다.⁵²⁾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1959년 9월 「수난구호법(안)」을 국회에 제출⁵³⁾

52) 수난구호법(법률 제761호, 1961.11.1.) 부칙 제3항에는 “본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처분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종결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고 정하였다. 이것은 1961년 11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그 전까지 처분이 완료되지 않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령인 ‘조선수난구호령’을 그대로 그 처분이 종결될 때까지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3)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 (안)」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 표지에는 ‘차관회의 제183호’ ‘의안번호 제214호’ 등 자료번호가 붙어 있으며, 제출자는 ‘법제실장’ 그리고 제출일자는 4292년 9월 3일로 적혀 있다(4292년은 1959년). 이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참조.

정부는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법안은 조선수난구호령(단기 4247.4, 제령 제12호)에 의거 현행되고 있는 수난구호법(단기 4232.3, 법률 제95호)을 현하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정리 성안 한 것임”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1914년 제령 제12호로 제정된 조선수난구호령과 1899년 제정된 일본 법률 제95호인 수난구호법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미이다.⁵⁴⁾

② 1960년 4월 「수난구호법(안)」을 국회에서 심사

「제35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5호(국회사무처, 1960.4.15.)에 따르면, “단기 4293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법률안[수난구호법안]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4월 13일부로 정부로부터 … 〈수난구호법안〉 …이 제안되었습니다. 단기 4293년(1960)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홍진기」 민의원의장 리기봉 귀하”라고 한 것을 보면, 이승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1960년 4월 15일 국회 임시회의에서 다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수난구조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 심사 보고(審査報告)케 하겠습니다.”(1960.4.15.)라고 적은 것에서, 이 법률안이 국회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속기록 내용에 근거하여 다시 요약해 보면, 1960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수난구호법안이 의결되었고, 그것이 동년 4월 13일 국회에 제안되어 4월 15일 국회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 뒤 이 법안의 심사가 진행되었을 터이다. 그런데 나흘 뒤에 일어난 4·19 혁명으로 수난구호법안의 심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③ 1961년 2월 「水難救護法(案)」을 국회에 제출⁵⁵⁾

정부는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本法案은 朝鮮水難救護令(檀紀 4247年 制令 第12號)에 依하여 依用되고 있는 水難救護法(檀紀 4232年, 法律 第95號)을 現實情에 適合하도록 整理成案한 것임”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1914년 조선수난구호령(제령 제12호)과 1899년 일본의 수난구호법(법률 제95호)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뜻인데, 2년 전 국회에

54)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 (안)」을 제출하면서 참고 사항으로 현행법과 비교한 내용을 간추려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조난선박에 대한 업무분담 원칙
 - ㉠ 수난구호업무는 관할 경찰서장이 주관함
 - ㉡ 해무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필요한 때에 협력을 요구함
 - ㉢ 인적동원과 공용징수는 경찰서장이 함
 - ㉣ 사후 구호비용, 물품보관, 공매, 대금회수 등은 시·읍·면장이 함
2. 표류물, 침몰품 등에 대해서는 편의를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본법에 포함시키되, 시·읍·면장이 이를 처리하게 함

55) 「水難救護法(案)」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 표지에는 ‘의안번호 제121호’가 붙어 있으며, 제출자는 ‘국무원 사무처장’ 그리고 제출일자도 4294년 2월 14일로 적혀 있다(4294년은 1961년). 이 문서는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여 작성하였다(2년 전인 1959년 9월 3일 제출된 자료는 한글로 작성,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참조.

제출된 법안의 제안 이유와 일치한다.⁵⁶⁾ 별도로 ‘수난구호법안 제안 이유서’가 붙어 있는데, 그 내용도 위의 제안 이유와 내용이 동일하다.⁵⁷⁾

다만 1959년과 1961년 제출 법안 사이에 차이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조항의 숫자가 2개 차이가 난다(1959년에 제출한 법안은 본문 40개, 1960년 제출 법안은 38개). 1959년 법안은 부칙마다 제○조와 같이 조항 숫자를 별도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부칙의 순서도 차이가 있었다(1959년 법안은 폐지 법령을 가장 앞에, 시행 기일을 맨 나중에 두었으나, 1961년 법안에서는 맨 앞에 시행일, 그 다음으로 경과규정, 폐지법령의 순으로 배치).

④ 1961년 10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62호(1961.10.1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발언이 적혀 있다.

- 조시형 의원 : 제안이유 설명. 구법정리(舊法整理)임. 법안골자 설명.
- 이주일 의원 : 이의 없으면 통과시킴. 단 구호 받는 절차는 각령으로 정할 것.
(박원빈 위원, 치안국장 외 3명 퇴장)

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 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잘 알기는 어렵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1년 10월 17일 수난구호법안의 심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조시형 의원이 ‘정리해야 할 구법(舊法)’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것이 1914년 일제가 제정한 조선수난구호령과 1899년 일본의 수난구호법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수난구호법」이 196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었다. 1966년 2월에는 수난구호법의 일부가 개정되기도 하였다.⁵⁸⁾

2.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의 주요 내용

〈표 5〉는 1961년 제정된 한국의 수난구호법을 그 이전의 법령과 비교한 것이다. 대

56) 「水難救護法(案)」을 제출하면서 중요 골자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조난선박에 대한 업무분담 원칙
 - ㉠ 수난구호업무는 관할 경찰서장이 주관함
 - ㉡ 해무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필요한 때에 협력을 요구함
 - ㉢ 인적동원과 공용징수는 경찰서장이 함
 - ㉣ 사후 구호비용, 물품보관, 공매, 대금회수 등은 사·읍·면장이 함
2. 표류물, 침몰품 등에 대해서는 편의를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본법에 포함시키되, 사·읍·면장이 이를 처리하게 함

57) “현행 水難救護法은 朝鮮水難救護令에 의하여 依用되고 있는 바 이는 단기 4232년에 제정된 日政法令으로서 시급히 新法으로 代置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現實情에 適合하도록 整理하여 本法案으로서 提案하는 바입니다.”

58) 1966년 수난구호법의 일부 개정의 핵심은 정부 기구가 신설된 것을 반영하여(해양경찰청, 해양경찰대 등) 수난구호업무(水難救護業務)의 전담 기관 등을 조정하여 정하는 것이었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관보』 제 4280호(1966.2.23.) 참조.

한민국 정부가 1959년과 196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법령[日政法令]’ 즉 1899년 일본 수난구조법과 1914년 조선수난구조령을 적용해 오던 것을 시급히 ‘정리’하고, 그것을 현 실정(現實情)에 적합(適合)하도록 신법(新法)으로 대치(代置)하기 위함이라고 수난구조법안의 제안 이유를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표 5>에서 보듯이 큰 틀에서는 1961년 한국의 수난구조법이 일제 강점기의 법령 체계를 계승한 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제1장 총칙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즉 제2장(조난선박), 제3장(표류물), 제4장(벌칙)과 부칙은 일본의 수난구조법 체계를 계승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서로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다.

오히려 일본은 메이지[明治] 시대부터 ‘시정촌장(市町村長)’에게 표류(해난) 사고의 처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지만, 1914년 조선수난구조령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경찰서장(警察署長)에게 그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맡긴 점이 두 나라 수난구조법 체계에서 가장 큰 차이이다. 그런데 1961년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1914년 조선수난구조령의 체계가, 심지어는 1899년 일본의 수난구조법 체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표 5> 한국과 일본의 水難救護法 비교

No	(한국) 수난구조법 (1961년) ⁵⁹⁾	(일본) 수난구조법 (1889년) ⁶⁰⁾	조선수난구조령시행규칙 (1914년) ⁶¹⁾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선박,人命, 물건		
3	제2조(정의) 조난선박, 표류물, 침몰품		
4	제3조(조약과의 관계) 외국선박에未 적용		
5	제4조(해군함정 기타 국유선박에의 준용)		
6	제2장 조난선박	제1장 조난선박	
7	제5조(구호업무집행자) 경찰서장, 구청장·시장·군수	제1조 구호업무집행자	
8	제6조(조난선박발견의 보고)	제2조 조난선박 발견자	
9	제7조(조난의 인지와 조치)	제3조 조난의 인지와 처분	
10	제8조(구호를 위한 징용과 사용)	제6조 물건 등 징용, 사용	
11	제9조(구청장, 시장, 군수에 대한 인계)		
12	제10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제9조 선박, 물건의 보관	
13	제11조(구출된 조난자의 보호)		
14	제12조(선난전말보고서)	제10조 선난보고서	(제1장 조난선박) 제1~4조 선난보고서
15	제13조(보관이 부적당한 물건의 공매)	제11조 공매, 공매대금	(제3장 공매) 제13조 공매 방법(입찰) 제14조 공매의 공고
16	제14조(조난자보호의 비용)	제16조 구호비용의 납부	
17	제15조(구호비용의 지급과 제외)	제12조 구호비용의 지급	
18	제16조(구호비용)	제13조 구호비용의 범위	
19	제17조(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14조 구호비용의 신청	(제1장 조난선박) 제5조 구호비용 신청기간 제6조 신청방법(서면, 구두) 제8조 관청소유선박 구호비용

20	제18조(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제15조 구호비용의 고지	(제1장 조난선박) 제7조 구호비용 산정(노무)
21	제19조(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권)		(제1장 조난선박) 제9조 구호비용 산정(열람)
22	제20조(구호비용의 납부와 보관금 기타 물품의 인도)	제16조 보관금 등의 인도	
23	제21조(구호비용의 불납과 보관물품의 공매)	제17조 구호비용 불납과 보관물품의 공매	
24	제22조(선장등의 공매참관권)		(제3장 공매) 제15조 공매에 입회할 권리
25	제23조(구호비용의 지변)	제18조 구호비용의 지변	
26	제24조(구호비용의 국고지급)	제30조 국고의 취득, 보급	
27	제25조(자진구호종사자에 대한 규정)	제20조 자진 구호 종사자	
28	제26조(결산과 전말의 통보)		
29	제27조(선장대리에 대한 규정)	제21조 선장 대리인	
30	제3장 표류물	제2장 표류물과 침몰품	
31	제28조(표류물과 침몰품의 습득, 인도, 보수)	제24조 표류물과 침몰품의 습득, 인도, 보수	(제2장 표류물과 침몰품) 제10조 표류물, 침몰품 인도
32	제29조(인도받은 물건의 보관과 공고)	제25조 인도받은 물건의 보관, 공고, 고지	(제2장 표류물과 침몰품) 제11조 인도받은 물건 공고
33	제30조(보관이 부적당한 물건의 공매규정의 준용)	제26조 공매규정의 준용(표류물, 침몰품)	
34	제31조(소유자의 소정금액납부의 무와 습득자에 대한 보수)	제27조 소유자의 납부의무와 습득자에 대한 보수 지급	(제2장 표류물과 침몰품) 제12조 소유자의 물건인도 신청 시 소명 의무
35	제32조(소유자가 물건의 인도청구를 포기한 때의 조치)	제28조 소유자의 물건인도청구 포기 시 습득자에게 고지	
36	제33조(표류물 또는 침몰품의 제거와 인도)	제29조 표류물, 침몰품 제거와 인도	
37	제34조(물건의 인도, 공매비용에 관한 조치)	제30조 물건의 인도, 제반 비용 납부와 지변(支弁)	
38	제4장 벌칙	제3장 벌칙	
39	제35조(벌칙) 5만원 이하 벌금	제31조 50圓 이하 벌금	
40	제36조(동전) 징역 6월, 20만원	제32조 禁錮 1~6월, 20圓 이하	
42	제37조(동전) 형법 제360조	제35조 형법 제385조 등 규정	
42	제38조(동전) 20만원 이하 벌금	제34조 重禁錮 11일~6월, 30~300圓 벌금	
43	부칙	부칙	부칙
44	① 공포일=시행일	제36조 시행일	시행일
45	② 조선수난구호령 폐지	제37조 종전 법령의 폐지	
46	③ 처분중 사건은 종전 법령	제38조 처분중 사건 종전 법령	
출전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일본 국립공문서관	조선총독부 관보

주: 빈칸은 '관련 내용 없음'을 의미.

59) 각 조 제목이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음.

60) 각 조 제목이 없음.

61) 각 조 제목이 없음.

V. 맺음말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난구조법이 개정되어 오늘의 ‘수상구조법’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현행 수난구조법(수상구조법)의 연원(淵源), 즉 뿌리가 조선후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61년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 동안의 한·일 간 표류민 송환(해난구조) 체제와 맞닿아 있었음을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舊韓末條約 彙纂, 1876-1945』 상(입법참고자료 v.18),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
- 『昭和十四年 海事關係書類 警務課』(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 『困難船及漂民救助雜件: 朝鮮國ノ部』 제1권(일본 外務省 外交史料館, 문서번호 3.6.7.1-10)
- 『困難船及漂民救助雜件: 日本國之部』 제15권(일본 外務省 外交史料館, 문서번호 3.6.7.1-3)
- 『朝鮮外交事務書』(한국일본문제연구회 편, 성진문화사 영인본), 1971.
- 『대한민국관보』
- 『朝鮮總督府官報』

-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 정성일, 「표류민 송환체제를 통해서 본 근현대 한일관계: 제도사적 접근(1868-1914)」, 『한일관계사연구』 17, 한일관계사학회, 2002.
- 정성일, 「근대 조선과 일본의 해난구조제도와 국제관계」, 『동북아역사논총』 28,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 정연형, 「수난구호법과 해난구조법에 대한 소고-구조료를 중심으로-」, 『해양한국』 22,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75.
- 池內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 일본 國立公文書館 데이터베이스.

【토론문 5】

「한·일간 표류민 송환과 해난구조의 법제화(1860~1960년대)」 에 대한 토론문

현명철(서울대학교)

◎ 본 논문의 의의

해난과 관련된 한국의 현행법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의 연원을 법제사적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 발표. 발표자는 표류민 송환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훌륭한 논문을 많이 발표. 점차 표류민 송환에서 해난구조 제도로 인식(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본 발표도 그러한 관심 확대의 결과로 보이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기존의 표류민 송환에 대한 연구와 해난구조의 법제화를 연결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즉, 한일간 표류민 송환, 일본의 수난구호법(1899), 총독부의 조선수난구호령(1914)을 61년의 수난구호법과 연속선 상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

◎ 토론자의 한계

Ⅱ장에 한하여...

◎ 질의 및 제언

1. 주체(주어)가 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즉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들을 일본이 돌려보낸 분석 보다, 전근대사회에서 조선에 표착한 청국, 일본인들을 조선이 어떻게 돌려보냈는지, 또한 내국인에 대한 수난 구조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

→ 즉, 전근대에서 내국인에 대한 수난 구호와 청국, 일본인에 대한 수난 구조(외국 공사관이 설치되기 전)의 특질을 보고, 공사관이 설치된 이후 내·외국인 수난 구호 변화에 주의하여 기술하는 것이 논지에 더욱 타당하지 않을까.

: 전통적 수난 구조 :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문관지>등에 규정이 있으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각 진을 건너가거나 왕래하는 배가 파선(破船)되었는데 다른 배에 탄 사람이 즉시 건져내어 구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선주(船主)와 진부(津夫)를 모두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별장(別將)은 무거운 쪽으로 처벌해서 곤장을 친다.

<동래부계록> 왜관 선창에서 어민의 배가 뒤집혀 왜인들이 구조하였을 때, 동래부사가 音物과 單翰을 보내어 致謝함(69.02),

<동> 72.12에는 왜관에 억류하였기에 항의(관지는 우리나라 땅이며 우리 백성이 우

리땅에 표류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야 한다) → 송환된 남해표민과 함께 도주
 : (이후 선창에서 소통사에게 표류민 인계함. 혼도의 입관도 감사편지도 사례도 없음)
 : 이를 보면 국내에서 파선(수난)이 발생하였을 때 지방관이 이들을 구조하여 구휼하고 본적지로 보내는 규정이 있다고 생각됨.

2. 무상송환(無償送還)이라는 표현의 문제(2쪽)

전통적으로 쓰시마가 표류민을 송환하였을 때, 조선은 후하게 접대하였다. 즉 표류민 송환은 인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쓰시마로서는 큰 이득이 되는 일이었다. 전통적 송환을 무상송환이라고 부르면 독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

료미 47석7두, 료태 9석12두, 연수미 1석4두, 도해량미2석, 駕船즉가미 40석 등) 그리고 감사편지 등. (전통사회에서도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 그렇다면 II-1의 갈등(혹은 무상송환)은 서계가 없어지고 영래차왜가 금지된 이후에 발생하는 일시적 외교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4쪽의 강진 표류민의 예)

: 히로츠의 보고(진5호) : “과거 표민차선인 경우, 조선정부가 가선료라 칭하여 쌀 30俵, 혼도가 12俵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표민영래차왜가 없고 혼도도 입관하지 않아서 조선측이 모른척 합니다. 선 수리비용과 借船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래서 5쪽 밑에서 8행.

‘이로써 …유상송환으로 전환되고 대신에 …순부하던 관행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은 순서의 오류이므로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된다면 훨씬 좋아질 것이라 제안.

→ 1872년 9월 이후 일본은 표민송환 서계와 영래차왜를 폐지하였다. 이에 조선은 접대를 하지 않았다. 표민 송환은 말 그대로 대가 없는 일방적 송환이 되었고 표민송환비용을 우려하는 일본 외무성 내부의 비판도 강해졌다. 73년의 갈등은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은 조선으로서도 불편한 일이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로 표민 송환 경비 부담이 점차 근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3. 조일수호조규 이후 표민 송환의 변화가 어떠하였는지 언급해주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① 조선 표류민 : 일본에 조선 영사관이 없었기에, ① 표류민이 스스로 선박을 수리하고 귀환. ② 표류민이 선박을 소각하고 비선을 임대하여 귀환. ③ 일본정부가 나가사키에서 우편선 혹은 상선에 의뢰하여 송환. : 해관에서 직접 표류민을 인수하여 (영사관 관여 없음)

- ② 일본 표류민 : 조일수호조규6관, 부록1관에서 보이듯 수호조규는 표류민 구호가 중요한 내용. 법제상으로는 현재의 수상구조법(2016)과 거의 동일

부록1관 : 각 항구에 주재하는 일본국 인민과 관리관은 조선국 연해 지방에서 일본국 선박이 파선되어 긴급해지면 지방관에게 알리고 해당지역으로 연로를 거쳐 갈 수 있다.

수상구조법 제22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 ①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조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구조의 주체가 일본 관리관처럼 기술. 실제 사례에서 주체는 조선이며 변화는 미약. 표류선이 영사관에 연락하지 못하여 영사관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표류민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 : → 관례대로 조선에서 구조하여 선박을 수리하여 출항하거나, 수군이 호송하여 왜관(영사관)에 인계하고 송환업무를 종결.

〈차이〉1872년 9월 이전 : 부산진을 통해 우암포(혹은 왜관)에 머물게 하면서 의식을 제공하고 서계를 기다려 도해량미와 의자목을 지급하여 송환

1872-76 : 왜관에 인계하고, 도해량미와 의자목을 지급하여 송환업무를 종결.

76년 이후 : 왜관(영사)에 인계하고 송환업무를 종결.

- ◎ 총평 : 시야가 넓은 매우 좋은 발표라 생각. 지치지 않고 발전된 연구를 발표하는 발표자에게 경의를 표함. 다만, 수난구조법의 극히 일부가 외국인 구조에 해당하듯, 표류민 송환과 수난구조법은 집합의 크기가 다르므로 평면적으로 연결하면 비판이 생길 수 있음. 이를 고려하시면 더 완성도와 기여도가 높은 논문이 될 것이라 사료 됨. 〈끝〉

여 백

제2부

【제6발표】

광복 후 한일 간 독도 논쟁의 전개 양상 분석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
- I. 머리말
 - II. 광복 후 독도 논쟁의 발생
 - 1. 1947년 일본 측의 도발과 한국의 대응
 - 2. 1948년 독도폭격사건
 - 3. 맥아더 라인 확대와 한국 측의 대응
 - 4. 1951년 대일강화조약 체결과 일본의 도발
 - III. 한국의 선제적 대응과 일본의 도발 강화
 - 1. 평화선 선언
 - 2.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과 제2차 독도폭격사건
 - IV. 한일 양국의 견해 대립과 물리적 충돌
 - 1. 일본의 침범행위
 - 2. 왕복 외교문서를 통한 한일 정부간 견해 대립
 - 3. 한국산악회의 독도 답사와 독도 영토표지 설치
 - 4. 일본의 자위권 발언과 한국의 독도자위대 결성
 - 5. 한국의 실효적 독도 영유
 - 6. 일본의 국제재판 회부 제의와 한국 경비대의 독도 상주
 - V. 맺음말

【제6발표】

광복 후 한일 간 독도 논쟁의 전개 양상 분석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한일간 독도 논쟁은 광복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광복 후 독도 논쟁은 독도 관련 사항의 초기 논쟁으로써 독도 논쟁을 보는 시각을 비롯하여 독도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사회적 논쟁의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광복 후와 현재의 독도 관련 사항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도 있고 상이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광복 후 독도 논쟁의 전개 양상에 관한 분석은 오늘날의 독도 관련 사항을 이해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한다.

광복 직후 한일간 독도를 둘러싼 논쟁은 1947년 극동위원회의 대일정책 발표를 즈음하여 시작되었으며, 1952년 평화선 선언 이후 한일간 외교문제로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독도 논쟁은 행태 면에서 주장의 대립뿐만 아니라 총격사건 등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행위자 면에서는 한일 양국간 갈등뿐만 아니라, 독도폭격사건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규정 등 제3국의 행위에 의한 문제도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광복 후 독도 관련 논쟁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1947년 이후 1954년까지 독도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기간을 1954년까지 정한 것은 한국의 독도경비대가 독도에 상주하여 일본의 물리적 침범에 상시 대응이 가능하여짐으로 독도 관련 사항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II. 광복 후 독도 논쟁의 발생

1. 1947년 일본 측의 도발과 한국의 대응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1947년 4월 극동위원회의 대일정책 발표를 즈음하여 표면화되었다. 그 시기 미 국무부에서는 1947년 3월 19일자 대일강화조약 초안의 개요와 조약의 전문, 영토규정 관련 문서를 도쿄에 있는 미국 측 대사인 조지 애치슨(George Atcheson, Jr.)에게도 전달되었다.¹⁾ 이 초안 제4조에는 일본이 한

국과 한국 주변의 모든 작은 도서들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²⁾ 한국의 작은 섬들에 포함되는 도서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시작되었다.

1947년 6월 20일 『대구시보』 기사를 보면, 그해 4월 일본 돗토리현(鳥取県)의 사카이미나토(境港)에 살고 있는 한 일본 어민이 독도를 자신의 어장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독도에서 조업을 하던 울릉도 어선 한 척에 대해 기총소사를 가했다는 것이다.³⁾ 그런데 이때 총격사건이 비행기의 폭격이었다는 증언도 있었다.⁴⁾ 일본 어민에 의한 기총사격인지, 비행기에 의한 기총사격인지 분명치 않으나, 1947년 4월 일본인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것과 당시 독도에 있는 우리 어민들을 향해 폭탄 투하든 기총소사든 총격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일본 측의 독도 도발에 대해 1947년 7월 울릉도 도민들이 경상북도를 거쳐서 군정당국에 진정을 했다는 기사가 국내신문에 실려 있다.⁵⁾ 울릉도 도민들이 나서서 정부에 진정을 할 정도였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7년 8월에는 독도에 일본 경찰, 의사 등이 섞인 일본인 7, 8명 이상이 독도를 침범하였다는 보도도 있다.⁶⁾ 한편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홍보자료(일본의 부속도서 시리즈)를 제작하여 연합국에 배포하였다.⁷⁾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남조선과도정부에서는 1947년 8월 민정장관(民政長官, 안재홍)을 위원장으로 하여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搜索委員會)⁸⁾를 조직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⁹⁾ 수색위원회는 8월 4일 오전 10시 중앙청 민정장관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¹⁰⁾ 수색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밝히는 것

- 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자료[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 - 2002] Records Relating to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1945 - 1951 [Entry A1 1230] Drafts by Ruth Bacon(1 of 6): 자료 4쪽; 정병준, 2010,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405~406쪽 참고.
- 2) 1947년 3월 19일 초안 제4조 원문: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Utsuryo) Island and Liancourt rock(Takeshim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자료[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 - 2002] Records Relating to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1945 - 1951 [Entry A1 1230] Drafts by Ruth Bacon(1 of 6): 자료 21쪽.
- 3) 『대구시보』, 1947년 6월 20일, 2면, “왜적 일인의 얼빠진 수작, 울릉도 근해의 소도를 자기네 섬이라고 어구로 소유”; 한규호 “독도사건 현지보고, 참극의 독도”, 『신천지』 제3권 제6호(1948년 7월)
- 4) 울릉도 관계자들은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사건이 일어났을 때 1947년 4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규호 “독도사건 현지보고, 참극의 독도”, 『신천지』 제3권 제6호(1948년 7월); 『서울신문』, 1948년 6월 12일, 2면, “동해에 살인 비기 출현, 어선을 폭격, 11척 침몰 9명 사상”; 『한성일보』, 1948년 6월 12일, 2면, “소속 불명 비기(飛機) 어선 습격, 11척 침몰 24명 사상”
- 5) 『동아일보』, 1947년 7월 23일, 2면, “판도에 야욕의 촉수, 못 버리는 일인의 침략성, 울릉도 근해 독도문제 제언”
- 6) 『한성일보』, 1947년 8월 13일, 2면, “근해 침구의 일어선, 맥아더선 수정도 건의”
- 7) 정병준, 앞의 책, 331~350쪽 참고.
- 8) 『대구시보』, 1947년 8월 17일, 2면, “독도조사단, 16일 등정”에서는 ‘교섭위원회(交渉委員會)’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9) 1947년 8월 3일, 『동아일보』, 4면, “독도문제 중대화, 수색위원회 조직코자?? 협의, 우리의 국토 추(秋) 일본과장 담”

이었다. 수색위원회에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맥아더 사령부에까지 보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과도정부에서는 국사관장 신석호, 외무처 일본과장 추인봉 등 4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원을 울릉도와 독도로 파견하였다. 조선산악회(朝鮮山岳會)에서도 대규모 울릉도 학술조사대(대장 송석하)를 파견하였다.¹¹⁾ 이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에 참가한 이들은 학술조사대원 70여명과 과도정부의 중앙 당국에서 파견한 조사원(4명), 경상북도 공무원(2명), 경찰청 직원(4명)까지 합하면 80여 명이나 되었다. 학술조사에는 과도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 학술조사대에 공무원, 국립 기관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조사단은 군정청의 주선으로 해안경비대에서 제공한 해안경비선(대전호)을 타고 이동하였다.¹²⁾

독도 현지 조사는 8월 20일에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울릉도의 도사(島司), 서장(署長) 등을 포함하여 72명이 대전호(150톤 12노트) 등에 나누어 타고 독도로 갔다.¹³⁾ 독도에서 6시간 정도 체류하며 독도를 측량하고 분야별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는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표목을 세웠다. 그날 일본인들의 독도 내왕은 없었다고 한다.¹⁴⁾

2. 1948년 독도폭격사건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폭격사건이 일어났다. 미 공군의 폭격연습에 의해 강원도와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어한 우리 어민 14명이 사망하고 최소 6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미 군당국에서 독도 현지로 조사단을 파견하고 손해배상도 하였지만, 사건의 진상은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여론은 더욱 비등하였고, 국내외 언론보도는 6월 11일 첫 보도가 있는 후 7월 말까지 최소 480건에 달하였다.¹⁵⁾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고,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독도폭격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나서, 1950년 6월 8일에는 독도 현지에서 독도조난어민위령비 제막식과 위령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사건으로 희생된 14명의 어민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경상북도 지사, 해군관계

10) 『동아일보』, 1947년 8월 5일, 2면, “독도는 우리 판도, 역사적 증거 문헌을 발견, 수색회사 맥 사령에 보고”

11) 『영남일보』, 1947년 8월 17일, 3면, “독도시찰대, 금일 출발”

12) 『영남일보』, 1947년 8월 19일, 2면, “울릉도학술단 조사 수행기(1), 동백꽃 피는 바닷가에서 도민의 해양 비약을 기원”; 『자유신문』, 1947년 8월 21일, 2면, “문제 많은 독도도 탐험”; 『한성일보』, 1947년 9월 24일, 2면, “울릉도 학술조사대 보고기(2), 홍종인”

13) 『대구시보』, 1947년 8월 22일, 2면, “독도를 탐사”

14) 『부녀일보』, 1947년 8월 23일, 2면, “독도는 해산물의 보고, 그러나 사람 살 수 없는 곳”; 『조선일보』, 1947년 8월 23일, 2면, “울릉도 학술답사대 독도 답사 의외! 해구 발견”; 『영남일보』, 1947년 8월 24일, 2면, “독도서 해구(海狗) 3두를 포획”

15) 이 사건에 대해서는 홍성근 편, 2020, 『광복 후 독도와 언론 1: 1948년 독도폭격사건』,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자, 희생자 유족 및 울릉도 주민 등 7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였다. 이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국민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3. 맥아더 라인 확대와 한국 측의 대응

광복 직후 독도는 1945년 9월 맥아더 라인의 설정과 1946년 6월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SCAPIN-1033호)에 의해 일본 어선들이 독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더욱이 1947년 1월 SCAPIN-677호에 의해 일본의 통치권이 독도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1947년 4월 일본 어민의 독도 침범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어선들이 맥아더 라인을 무시하고 독도나 우리 연안으로 넘어와 어로 활동을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맥아더라인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특히 1949년 주일한국대표부에 훈령을 축소된 맥아더 라인을 원상 복구할 것과 일본 어선이 우리 어장에 침입할 경우에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연합국총사령부와 교섭할 것을 지시하는 등¹⁶⁾ 맥아더라인의 확대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였다.

맥아더 라인은 1945년 9월 설정된 이래, 1945년 11월 30일(제1차 맥아더 라인)과 1946년 6월 22일(SCAPIN 1033호, 제2차 맥아더 라인), 1949년 9월 19일(SCAPIN 2046호, 제3차 맥아더 라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인지, 맥아더 라인에 있어서 태평양 쪽 라인에는 변동이 있었으나, 한국 쪽 라인에는 변동이 없었다. 물론 독도는 여전히 맥아더 라인 밖에 놓여 있어 일본 어선이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제3차 맥아더 라인 확장을 끝으로 맥아더 라인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둔 시점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폐지되었다.

4. 1951년 대일강화조약 체결과 일본의 도발

1951년 7월부터 9월 간에 국내 신문에는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1951년 5월 3일 미국과 영국은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제1차 합동초안을 만들어 관계국가에 회람하여 의견을 듣고, 6월 14일 제2차 영미 합동초안, 7월 3일 제3차 합동초안을 만들어 7월 12일자로 언론에도 배부하였다.¹⁷⁾

7월 3일자 대일강화조약 초안의 제2조 a항에는 일본이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해야 할 한국의 섬이 기술되어 있는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열거하고 있다.¹⁸⁾

16) 『경향신문』, 1949년 9월 23일, 1면, “정부 당면 시책, 33의원에 답변, 맥아더 라인 변경할 시에는 한국 안전을 불침해”

17)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자료(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 - 2002 Subject files, 1950-1953[Entry A1 1252], Japan Subject Files, 1947 - 1956 [Entry A1 1220] 494. Dulles Black Book(Japanese Peace Treaty Papers): 자료 137쪽; 정병준, 앞의 책, 546쪽.

여기에는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7월 19일 미국 측에 보낸 서한에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와 파랑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대일강화조약에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8월 10일 미 국무부 극동 차관보 딘 리스크는 양유찬 주미대사 앞으로 서한(일명 리스크 서한)을 보내어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리스크 서한은 국내적으로도 공개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공개되지 않았다.¹⁹⁾

1951년 9월 8일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즈음하여, 일본 신문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이 게재되었고,²⁰⁾ 우리 신문에서도 이를 반박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내용은 역사적 문헌이나 거리상으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피력하였다.²¹⁾ 그리고 일본의 1905년 독도 영토편입은 러일 전쟁이라는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한국의 영토를 일방적으로 침탈한 행위라고 하였다.

Ⅲ. 한국의 선제적 대응과 일본의 도발 강화

1. 평화선 선언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4월 25일 맥아더 라인이 철폐되었다. 맥아더 라인이 있을 때는 일본 어선들이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맥아더 라인이 철폐되자 일본 어선들이 독도 근해로 조업을 하러 올 것이 예상되었다. 그간 한국 정부에서는 대일강화조약에 맥아더 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어업권역을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로서는 맥아더 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한국 정부는 그 일환으로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즉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맥아더 라인을 대신하여 한국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1952년 1월 20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28일에는 주일한국 대표부를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평화선 선언이 ‘항해 자유의 원칙과 공해에서의 수자원 개발·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며, ‘독도를 평화선 내에 포함시킨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18) 1951년 7월 3일 대일강화조약 초안 제2조 a항: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자료[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 - 2002] Subject files, 1950-1953[Entry A1 1252], Japan Subject Files, 1947 - 1956 [Entry A1 1220] 494. Dulles Black Book(Japanese Peace Treaty Papers): 자료 108쪽].

19) 정병준, 앞의 책, 775~781쪽 참고.

20) 『朝日新聞』, 1951년 9월 1일(東京/朝刊), p. 1, “竹島は日本領, 外務省の見解”

21) 『민주신보』, 1951년 9월 1일, 2면, “명백히 된 독도 귀속, 15세기 말엽 한인이 발견, 성종 2년 군역 피한 사람 수색으로 발견, 아(我) 정부 문헌을 양 대사에게 송부”

하였다.²²⁾

한국 정부에서는 평화선 선언에 대한 일본의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허정 국무총리 서리는 1월 30일 중앙청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평화선 선언의 정당성에 대해 발언하였다.²³⁾

2.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과 제2차 독도폭격사건

한국산악회에서는 1947년에 이어 1952년 두 번째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조사단은 1952년 9월 12일 부산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으로 연기가 되어 9월 17일 출발하였다.²⁴⁾ 9월 17일 10시 조사단 일행은 부산항에서 교통부 소속 선박인 진남호(鎭南號, 305톤)를 타고 울릉도로 향하였다.²⁵⁾ 조사단이 18일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15일 11시경 독도에서 폭격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²⁶⁾

당시 독도는 미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일본이 1952년 7월 26일 미국을 유도하여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하였던 것이다.²⁷⁾ 그런데 한국 정부나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독도학술조사단은 정부에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9월 22일 독도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조사단을 태운 선박이 오전 11시경 독도 부근 2km 해상으로 접근했을 때 갑자기 4대의 비행기가 나타나서 해상에 폭탄을 투하하였다. 당시 폭격은 1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조사단은 이날에도 독도에 입도하지 못하고 밤 12시 40분경 울릉도로 귀환하였다.

조사단은 24일 해군의 도움을 받아 독도 입도를 다시 시도하였다. 그런데 조사단을 태운 선박이 오전 9시 30분 독도 4킬로 지점까지 접근하였는데, 비행기가 독도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세 번째 폭격이 있는 9월 24일 독도 근해에는 해녀 21명을 태운 광영호와 조사단을 태운 진남호가 있었다. 비행기가 이 선박들을 본체만체하며 독도에 폭탄을 투하하였다. 조사단의 요청으로 우리 해군과 공군 당국에서 미 제5공군과 UN 측에 연락하여 안전한 항로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결국 조사단 일행은 독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울릉도만 조사하고 9월 28일 부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²⁸⁾

1953년 2월 27일 한국 국방부는 ‘향후 독도에서 폭격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와 UN군 당국이 합의한 바이며, 미 극동공군사령관인 웨이랜드(Otto

22) 『동아일보』, 1952년 1월 30일, 2면, “인해(隣海) 주권선언에 일(日) 정식 항의 가중! 독도의 일본 영토를 주장”

23) 『경향신문』, 1952년 2월 1일, 1면, “국회와 협조로, 허(許) 서리 기자회견 담”

24) 『조선일보』, 1952년 9월 18일, 2면, “17일 출발,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반”

25) 『경향신문』, 1952년 9월 18일, 2면,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 17일 출발”

26) 『동아일보』, 1952년 9월 21일, 2면, “독도 또 폭격 소동, 불안과 공포에 싸인 도민(島民)들”

27) 홍성근, 2003, 「독도폭격사건의 국제법적 쟁점 분석」, 『독도연구총서 10: 한국의 독도 영유권 연구사』, 독도연구보전협회, 398~403쪽 참조.

28) 『조선일보』, 1952년 9월 30일, 1면, “목적 못 이루고, 독도 학술조사단 28일 무위 귀환”

Paul Weyland) 장군도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내용을 보장해주었다고 했다.²⁹⁾ 2월 28일 일본 오카자키(岡崎勝男) 외무상은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미국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반박하며, 대일강화조약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⁰⁾

어쨌든 1953년 3월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독도가 폭격연습지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은 이 사실을 5월 관보에 고시하였다.³¹⁾ 일본이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했을 때는 만 하루만에 관보에 지정 고시를 하였지만, 해제할 때는 2개월이나 지나서 해제 고시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독도를 폭격연습지에서 해제하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최대한 뒤늦게 고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IV. 한일 양국의 견해 대립과 물리적 충돌

1. 일본의 침범행위

1953년 5월 독도가 폭격연습지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실이 고시된 후 일본인들이 독도 상륙을 시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1953년 5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수산시험장 소속 선박인 시마네호가 독도에 와서 한국인들의 어로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³²⁾ 그리고 일본이 한국측에 한국인들의 독도 어로활동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이에 한국이 반박을 하였다.³³⁾

일본의 항의와 한국의 답변이 오가는 사이, 6월 27일 일본의 경찰, 법무부 직원 등 관리 30명이 경비선 2척(오키호, 구쓰류호)에 나누어 타고 와서 독도에 상륙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그들은 독도에 있던 우리 어민 6명에게 퇴거를 명령하고 “시마네현(島根県) 온지군(穩地郡) 오개촌(五箇村) 죽도(竹島)”라는 팻말까지 세우고 갔다.³⁴⁾ 한국산악회와 어민회에서는 일본 측의 독도 도발을 비판하며 행정 당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³⁵⁾

29) 『동아일보』, 1953년 2월 28일, 2면, “독도 어민 공포 일소- 공폭 연습 중지를 미군서 보장”; 『경향신문』, 1953년 3월 1일, 1면, “독도는 한국의 것! 미수(美遂) 주권 인정”; 『조선일보』, 1953년 3월 1일, 2면, “보장된 독도 근역의 어로, 미군 당국서 불폭격 통고”

30) 『경향신문』, 1953년 3월 2일, 1면, “대(對) 독도 야욕 미식(未熄), 일본 또 소유를 주장”; 일본 국회 회의록: 第15回国会 衆議院 外務委員会 第21号 昭和28年2月28日.

31) 홍성근, 2015, 「평화선 선언과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에 대한 법·정책적 이해」, 『독도연구』 제18호 182~183쪽 참고.

32) 외무부 정무국, 1955, 『독도문제개론』, 52~53쪽.

33) 『동아일보』, 1953년 6월 29일, 1면, “한국 어부 불법 체포, 일(日), 독도 영유 계속 주장”

34) 『동아일보』, 1953년 7월 3일, 2면, “침략의 상투(常套) 수단 노골, 일(日)의 독도 침범에 국내 여론 비등”; 외무부 정무국, 앞의 책, 59~60쪽

35) 『동아일보』, 1953년 7월 3일, 2면, “역사적 제 증거 뚜렷, 일본의 영토란 만부당, 산악회 성명”; 『동아일보』, 1953년 7월 3일, 2면, “어민 납치는 불법행위,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 절실, 어민회 성명”

국회에서도 6월 27일 일본의 독도 침범사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를 벌였다.³⁶⁾ 국회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7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독도침해 사건에 관한 건의안’이 의결되었다.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움직였다. 1953년 7월 11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7월 8일 해군 군함 1척을 독도로 파견하였다.³⁷⁾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오가던 7월 12일 독도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다. 7월 12일 독도에 있던 한국 경비대가 독도를 침범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해쿠라호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이다. 그중 2발이 순시선에 명중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사건 후에도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어졌고,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측의 독도 침범에 단호히 대응할 것과, 우리 해군은 영토를 방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³⁸⁾

2. 왕복 외교문서를 통한 한일 정부간 견해 대립

일본 정부는 1953년 7월 13일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견해를 보내왔다. 그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간 논쟁이 1965년까지 진행되었다. 일본 정부는 1953년, 1954년, 1956년, 1962년 모두 4차례 견해를 보내왔으며, 한국 정부는 1953년, 1954년, 1959년 3차례 견해를 보내고 마지막인 제4차때(1965.12.17.)는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지 않고 “일본이 제기한 일체의 주장은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내용”만 구술서에 담아 일본측에 보내었다.³⁹⁾

1953년과 54년에 한일 양국 정부가 주고 받은 내용을 보면, 세종실록지리지, 은주시청합기 등 한일 양국의 고문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문제, 1905년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의 타당성 문제, SCAPIN-677호와 대일강화조약 영토규정 등에 관한 논의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그 논쟁은 오늘날의 내용과 유사하나 그 뒤에 발굴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태정관 지령,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3. 한국산악회의 독도 답사와 독도 영토표지 설치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1953년 10월초 한국산악회에서 전년도

36) 제16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제19호(단기 4286년 7월 8일(월) 상오 10시), 5~13쪽; 『동아일보』, 1953년 7월 8일, 2면, “국회서 처리 방안 논의, 일 정부의 독도 침점(侵占)사건”

37) 『조선일보』, 1953년 7월 11일, 2면, “독도에 군함 급파, 일인 침범 사실을 조사”; 『경향신문』, 1953년 7월 11일, 2면, “군함 보내어 조사, 일인의 독도 침범 사건”; 『평화신문』, 1953년 7월 11일, 2면, “드디어 실행행사 단행 호(呼), 해군 함정 8일 출동, 일인 독도 상륙사건을 조사”

38) 『조선일보』, 1953년 7월 16일, 2면, “독도는 단호 방위, 손 국방부 장관 담”; 『조선일보』, 1953년 9월 12일, 2면, “독도에 일(日) 어선 2백 척, 추방 위해 함정을 파견”; 『조선일보』, 1953년 9월 12일, 2면, “철저히 추방할 터’ 손원일(孫元一) 장관 강경한 태도”

39) 한국 정부의 마지막 제4차 견해는 1965년 12월 17일 한일기본관계조약 등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 조약이 발효한 날 송부함.

(1952년)에 이어 다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⁴⁰⁾ 학술조사단은 10월 13일 독도에 입도하려고 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입도하지 못했다.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10월 15일 드디어 독도에 입도할 수 있었다.

조사단은 독도를 측량하고 독도 관련 각종 사항을 기록하는 외에, 독도의 동도에 영토 표식일 세웠다. 원래 1952년에 세우려고 했으나 폭격으로 세우지 못하고 울릉도 경찰서에 1년 동안 보관해두었다가 세우게 된 것이다. 한국산악회의 영토표식은 동도 해변에 있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는데, 정면에는 한글로 ‘독도’, 한자로 ‘獨島’, 그리고 불어로 ‘Liancourt’라고 새겼다. 그리고 뒤에는 ‘한국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 Aug. 8, 1952’이라고 쓰고 측면에는 세운 날짜를 써넣었다.

한국산악회 학술조사단이 독도를 다녀가고 1주일 여가 지나고 일본 순시선의 선원들이 독도에 상륙하였다. 그때 산꼭대기와 중턱에 다수 설치되어 있던 한국 측 영토 표식을 철거하고 ‘도근현(島根縣) 은지군(隱地郡) 오개촌(五個村)’이라고 기재한 일본의 영토 표목을 세웠다.

그러한 소식을 접하자 1953년 10월말 우리 정부의 내무부 장관은 경상북도 지사에게 일본 측에서 철거한 한국령 표식을 다시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⁴¹⁾ 그리고 11월에는 일본 오카자키 외상이 자유당 총무회에서 한국이 독도를 침범했다고 하며,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해 미국 측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 발언도 기사화되었다.⁴²⁾

1954년 1월 경상북도 당국은 1953년 10월 일본이 제거한 한국령 영토표지를 다시 세우기 위해 관계 직원들을 독도로 파견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돌아와야만 했다.⁴³⁾ 그 후 1954년 5월에 가서야 독도에 한국령 영토표지를 세우게 되었다. 5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해양경찰대에서 대장 이하 50여 명의 대원이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가 한국령임을 새겼다고 한다.⁴⁴⁾ 이때 독도에 새긴 영토표지는 독도의 바위에 새겨놓은 것으로 1954년 1월 경상북도에서 세우고자 했던 영토표석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⁴⁵⁾

4. 일본의 자위권 발언과 한국의 독도자위대 결성

1954년 3월 일본 정부의 사토 다쓰오(佐藤達夫) 법제국 장관이 3월 15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그는 일본이 “독도(竹島)에 대한 한국의 침략이나 일본 어선에 대한 공격을 구축하는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던 것이다.⁴⁶⁾ 국내 신문에서는 사토 장관의 발언이 침탈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난하였

40) 『동아일보』, 1953년 10월 3일, 2면, “독도 등 답사, 대한산악회서”

41) 『조선일보』, 1953년 10월 31일, 2면, “독도에 다시 우리 표식. 백(白) 내무장관, 경북지사에 명령”

42) 『동아일보』, 1953년 11월 15일, 1면, “‘한국이 독도 침략 운운’, 일(日) 정부, 미(美)에 구원 요청”; 『자유신문』, 1953년 11월 16일, 1면, “출어문제 미(美)와 협의, 일 외상, 독도문제도 언급”

43) 『조선일보』, 1954년 1월 20일, 4면, “우리나라 표식을 다시 건립. 20일, 독도에 경북도 직원을 파견”; 『조선일보』, 1954년 1월 25일, 2면, “포항으로 무위귀환, 독도 영토표식 건립대”

44) 『조선일보』, 1954년 6월 2일, 2면, “일함, 독도에 기충소사, 영토표식 말소가 목적?”

45) 정병준, 앞의 논문(2021), 438~439쪽 참고.

46) 『동아일보』, 1954년 3월 17일, 1면, “독도 방위에 자위권, 일본 법제국 장관이 언명”; 『조선일보』, 1954

다.⁴⁷⁾

1953년 이래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으로 또 빈번하게 일어났다. 1954년 들어서는 도쿄(東京)에 거주하는 일본인 등 3명이 독도의 인광채굴 출원을 하고 일본 정부에서 허가했다는 소식이 국내 신문을 통해 전해졌다.⁴⁸⁾

이 시기는 6·25전쟁으로 한국의 국가적 상황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다. 그러한 가운데 울릉도 도민 1만 5천들이 자치적으로 독도를 방위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진정서가 내무부에 제출되었다.⁴⁹⁾ 울릉도 주민들은 일본인들의 독도 침범으로 독도 조업이 어렵게 되어 생활난을 겪고 있고, 더욱이 6월부터는 미역 채취가 시작되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등대 가설, 무선시설 및 감시초 설치, 해안경비정 보급 등 3개 사항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장흥(金長興) 치안국장은 “이제까지도 독도를 해안경찰대에서 경비해왔고 국가적인 견지에서 한층 더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4월 25일 울릉도 도민 1만 5천명이 도민궐기대회를 갖고 자발적으로 일본의 독도 침범을 방위하기 위해 독도자위대를 결성하기로 결의를 하였다.⁵⁰⁾ 이 자리에서 독도방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독도 방위 대책도 제시되었다. 그 대책이란 독도에 등대와 감시초를 세운 다음, 매주 교대로 울릉도 청장년 50명을 소집하여 그중 20명을 독도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고, 무선사도 1명씩 교대로 근무케 하여 울릉도와 경비선에 각각 상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울릉도민 대표는 정부에 독도자위대 조직에 협조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⁵¹⁾ 이에 1954년 5월 6일 『조선일보』에는 5월 3일 백두진(白斗鎭) 국무총리가 울릉도 도민들의 독도자위대 조직이야말로 훌륭하고 뜻깊은 것이라고 하며, 내무부 장관에게 독도자위대 조직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실렸다.⁵²⁾

울릉도 주민들이 6·25전쟁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일본의 독도 침범에 맞서 독도 방위 대책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독도 경비에 나선 것이다.

1954년 5월 23일에는 일본기를 게양한 무장 경비선이 독도 근해에 왔었고, 그 다음날 24일에는 비행기가 나타나서 한국령 영토표지를 향해 약 300발의 총탄을 쏘고 일본 시모노세키(下関) 방향으로 날아갔다.⁵³⁾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경비선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일본 소속이라고 강하게 추정하고 있었다.

년 3월 17일, 1면, “‘독도에 자위권’ 일본, 무력행사를 호언”; 第19回国会 衆議院 外務委員会 第17号 昭和29年3月15日.

47) 『경향신문』, 1954년 3월 17일, 1면, “여적(餘滴)”

48) 『경향신문』, 1954년 4월 2일, 2면, “독도에 새로운 측수, 일본 권위지도에도 한국 영토라고 명시, 인광 채굴권 허가, 일 매일지 그 기만성을 야유”; 『경향신문』, 1954년 4월 3일, 2면, “독도 보호해주오, 울릉도민 당국에 진정”

49) 『경향신문』, 1954년 4월 3일, 2면, “독도 보호해주오, 울릉도민 당국에 진정”

50) 『동아일보』, 1954년 5월 2일, 3면, “‘독도를 수호하자’, 울릉도민회서 자위대 결성 결의”

51) 『조선일보』, 1954년 5월 6일, 2면, “훌륭한 조직이다. 백두진(白斗鎭) 총리, 독도자위대에 협조지시”

52) 『조선일보』, 위의 기사.

53) 『조선일보』, 1954년 6월 12일, 2면 “독도에 조사대 급파. 내무부, 독도사건 경위를 발표”

5. 한국의 실효적 독도 영유

평화선이 선포된 지 약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평화선을 침범하고 독도 도발도 계속하였다. 이러한 시국에 민의원 소속 국회의원들이 독도 시찰을 하게 되었다.⁵⁴⁾ 국회의원들은 김상돈(金相敦), 염우량(廉友良), 김동욱(金東郁) 의원이었다. 시찰위원단은 국회의원과 촬영반, 보도반으로 구성되었는데, 7월 24일 오후 2시 해양 경비정 화성호(火星號)를 타고 부산항을 떠나 7월 25일 독도에 도착하였다. 민의원 시찰위원단은 4시간 정도 시찰을 마치고 25일 오후 3시 독도를 떠나 부산으로 향했다.

독도를 다녀온 김상돈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독도에 시설이나 등대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⁵⁵⁾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등대를 설치하면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독도에 등대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1954년 4월과 5월에 울릉도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이기도 했다.⁵⁶⁾ 이러한 요구사항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통부에서 8월 10일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같은 날 정오에 점등을 하였다.⁵⁷⁾ 한국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로마 교황청의 각 외교대표들에게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다는 것을 통고하였다.⁵⁸⁾

경찰 당국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막기 위해 독도에 감시초와 독도 경비를 전담할 선박 구입 및 인원 배치 등을 통해 독도 경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독도의 감시초는 1954년 8월 28일 완공을 하고 기념식을 가졌다.⁵⁹⁾ 8월 27일 오후 3시에는 독도와 울릉도간 무선시설을 완비하였다.⁶⁰⁾

일본 정부는 한국이 등대와 영토표지를 설치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를 제기하였다.⁶¹⁾ 8월 23일 일본 순시선(오키호)이 독도로 접근하자 독도경비대에서 발포를 하였다.⁶²⁾ 이에 대해 일본에서 독도경비대의 발포 사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의 항의를 일축하며, 독도 경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다고 한다.⁶³⁾

54) 『조선일보』, 1954년 7월 26일, 3면, “24일 현지로 출발, 독도시찰위원단”; 『조선일보』, 1954년 7월 28일, 2면, “독도시찰위원단, 기념표식 새겨놓고 귀항”; 『동아일보』, 1954년 7월 29일, 2면, “절해의 섬 독도를 찾아서, 어장 보도(寶島)에 등대 설치 긴요, 남대문 연상되는 무수한 수문”; 『조선일보』, 1954년 7월 29일, 2면, “풍파 거센 독도, 민의원 시찰단과 동선하고, 암석에 기록된 시찰 표식, 무심한 갈매기의 외로운 표정”. 당시 독도시찰위원단의 독도 시찰 모습을 담은 영상이 2019년 8월 13일 TV뉴스를 통해 공개되었다. JTBC 뉴스(2019년 8월 13일) “6·25 직후 ‘독도’ 담긴 가장 오래된 영상…첫 공개”

55) 제19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26호(단기 4287년 8월 6일(금) 상오 10시), 14쪽.

56) 『경향신문』, 1954년 4월 3일, 2면, “독도 보호해주고, 울릉도민 당국에 진정”; 『조선일보』, 1954년 5월 3일, 3면, “우리 영토를 수호, 독도의 자위대를 결성”

57) 『경향신문』, 1954년 8월 13일, 2면, “독도에 등대 완성, 우리 영역표식에”

58) 『조선일보』, 1954년 8월 24일, 2면, “독도의 등대 설치, 외교사절단에 통고”

59) 「독도 경비초사 및 표식 제막 기념(1954년 8월 28일)」 사진 참조.

60) 『조선일보』, 1954년 8월 30일

61) 『동아일보』, 1954년 9월 3일, 1면, “일(日) 항의를 일축, 김 공사 독도문제에”

62) 『동아일보』, 1954년 8월 29일, 1면, “독도서 국군이 발포, 일 가소로운 항의”

9월 9일 『동아일보』에서는 ‘채신부가 15일부터 독도의 풍경을 묘사한 우표 3종((10환, 5환, 2환)을 발매할 것이라고 했다.⁶⁴⁾ 독도 우표를 발매하게 된 동기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경고를 보내고 동시에 기타 외국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재인식시키자는 데 있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에서는 독도 우표를 붙인 우편물을 반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⁶⁵⁾

6. 일본의 국제재판 회부 제의와 한국 경비대의 독도 상주

1954년 9월 24일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한일간 독도 관련 사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였다.⁶⁶⁾ 그리고 9월 25일 11시 30분 일본 외무차관이 김용식(金溶植) 주일공사와 외무성에서 만나 독도문제에 관하여 영토권 분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의했다.⁶⁷⁾ 이에 대해 김용식 공사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한국의 영토가 틀림이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9월 27일 주일한국대표부를 통해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고, 28일 외무부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논박하였다.⁶⁸⁾

외무부의 발표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독도를 일제 침략의 최초 희생물’이라고 본 것과,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국을 재침하려는 의도의 발로’라고 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기본적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독도 관련 사항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자, 일본의 오카자키(岡崎) 외상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⁶⁹⁾

1954년 8월 등대 및 감시초 설치 이후에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접근 기도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를 시찰하고 경비대를 위문하기 위해 1954년 11월 경상북도 관계자들로 구성된 독도시찰위문단이 독도를 방문하였다. 경상북도 독도시찰위문단은 경상북도의회 정재원(鄭載元) 의장과 의원 7명, 그리고 김종원 경북 경찰국장을 비롯한 43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다.⁷⁰⁾

독도시찰위문단이 독도를 다녀간 뒤, 독도에 접근하려던 일본 순시선 2척이 독도에 있던 한국 해안포의 사격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독도의 해안포는 포탄 5개를 발사하였으나 일본 순시선은 하등의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⁷¹⁾ 일본 순시선은 정기적으

63) 『경향신문』, 1954년 9월 1일, 2면, “3천만 환의 예산, 독도에 경비대를 파견”

64) 『동아일보』, 1954년 9월 9일, 2면, “독도 우표 발매, 내(來) 15일부터”

65) 『경향신문』, 1954년 11월 22일, 2면, “해괴한 일 정부의 처사, 독도 우표 붙인 우편물 반송 결정”

66) 『경향신문』, 1954년 9월 26일, 1면, “독도문제를 국제(國裁)에 제소, 일(日) 내각서 결정”; 『조선일보』, 1954년 9월 27일, 1면, “일 김 공사에 제의, 독도문제의 국제 제소”

67) 『조선일보』, 1954년 9월 27일, 1면, “일(日), 김 공사에 제의, 독도문제의 국제(國裁) 제소”; 1954년 9월 25일자 일본 측 구술서(『독도문제, 1954』(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6)).

68) 『동아일보』, 1954년 10월 30일, 1면, “한국 측 정식 거절, 일(日)의 독도문제 국제재(國際裁) 제소”

69) 『동아일보』, 1954년 12월 8일, 1면, “독도문제 유엔 제소, 강기(岡崎) 일 외상 또 망언”

70) 『경향신문』, 1954년 11월 16일, 2면, “독도 시찰위문단, 대구서 현지로 향발”

71) 『동아일보』, 1954년 11월 24일, 1면, “한국 해안포 사격, 독도 접근한 일선(日船)에”

로 독도에 접근하였고 한국의 경비대는 독도 경비를 계속 이어나갔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945년 광복 후 1954년까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논쟁의 전개 양상과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1947년 극동위원회의 대일정책 발표를 즈음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일본은 부속도서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미 국무부 등에 배포하였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초안 작업 등 전후 연합국이 일본의 영토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독도 도발을 감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여 미 군정하였지만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를 조직하고 공무원들을 독도 현지에 파견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밝히는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조선산악회에서도 학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인원의 조사단을 파견하여 독도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3) 1948년 독도폭격사건에 의한 한국 어민들의 희생은 1947년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에 이어 독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국민적 관심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켰다. 한편 독도는 한국 어민들의 소중한 어장으로서 경제적 측면도 국민들 사이에서 부각되었다. 일본은 맥아더라인의 변경을 요구했고 한국에서는 독도와 한국 인접 수역에 대한 일본의 침범에 대응하여 맥아더라인의 확대를 경계하며 사수를 외쳤다. 맥아더라인은 3차례 확대되었지만 한국 쪽 수역 특히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4) 1951년 대일강화조약 최종 초안 작성과정에서 한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할 것과 맥아더라인을 대신하는 어업구역의 설정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한국은 자구책 마련이 필요했고 1952년 1월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평화선 선언에 반발하였고, 이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방안으로 일본은 미국을 유인하여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지정되도록 하였다. 일본은 독도 관련 사항에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여 독도 영유권에 관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5) 6.25전쟁 중이었지만 1952년 한국산악회에서는 다시 독도학술조사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조사단이 독도에 입도하려고 할때마다 독도에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인 폭격이 연이어 일어났다. 조사단은 독도에 입도하지 못했지만, 한국 측의 항의로 독도가 미공군의 폭격연습지에서 제외되었다. 1953년 3월 독도를 폭격연습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일본 정부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것은 2개월이 지난 5월에 가서였다. 그후 일본 측에서는 독도에 대한 물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6) 일본 순시선 등 관공선이 독도의 영해를 침범하고 선원들이 독도에 상륙하여 일본

령 표목을 세웠다. 이어 한국측에서 이를 제거하고 한국령 영토표석을 세웠다. 일본의 도발과 한국의 대응이 이어졌다. 그 과정 중에 총격사건도 일어났다. 1953년 10월 한국산악회에서는 제3차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한국령 영토표석을 세웠다. 그 직후 일본 측에서 독도에 상륙하여 한국령 영토표석을 제거하고 일본령 표목을 세웠다.

7) 일본측의 물리적 도발은 1954년에도 계속되었다. 독도를 어장으로 이용하던 울릉도 주민들에게 일본 측의 독도 침범은 생업이 걸린 문제였다. 독도에서 조업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울릉도 도민들은 썰기대회를 열어 자발적으로 독도방위대책을 세우고 독도자위대를 조직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독도경비대의 독도 상주로 이어졌고, 일본의 도발에 상시 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54년 8월 한국은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경비대가 거주할 수 있는 감시초와 무선시설을 완비하게 되었다.

8) 독도경비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일본 순시선이 독도에 접근할 경우, 총격을 가하여 쫓아내었다. 물리적 침범이 어렵게 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또는 유엔 회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9) 1953년 5월 이후 독도 현지에서 물리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한편, 한일 정부간에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견해를 담은 외교문서를 주고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독도영유권에 관한 학술적 쟁점 사항이 드러났다. 한일 양국의 고문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문제, 1905년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의 타당성 문제, 1945년 이후 SCAPIN-677호 및 대일강화조약의 영토규정 등 쟁점 사항은 오늘날의 주장 대립과 비슷하다. 다만 그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태정관 지령 등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은주시청합기 등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논지가 달라진 측면도 있다.

10) 1953년 이후 논쟁 과정 중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토 편입조치와 관련지어 보았다. 즉 독도는 일제의 한국 침략의 최초 희생물이며,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국을 재침하려는 의도의 발로라고 보았다. 이러한 한국 측의 입장은 일본의 독도 도발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11) 한편 미국은 1947년 폭격연습지 지정, 1948년 독도폭격사건, 1949년 맥아더라인의 확대, 1951년 대일강화조약 체결, 1952년 폭격연습지 지정 등의 시기에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한일 양측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때로는 무책임하고 때로는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12) 광복 후 국제적으로 맥아더 라인과 SCAPIN-677호에 따라 한국의 독도 관할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도발과 한국의 대응이 이어졌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순시선의 독도 침범,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 등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한국의 대응은 한국산악회 독도학술조사, 독도자위대(또는 독도의용수비대) 조직 등 민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토론문 6】

「광복 후 한일 간 독도 논쟁의 전개 양상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수희(독도재단)

본 발표는 광복후 한일간 독도 논쟁의 전개 양상을 1947년 극동위원회의 대일정책 발표부터 시작하여 1954년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기까지 7년간의 독도 논쟁(분쟁)의 전개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이 시기 한일간의 치열한 독도논쟁과 대결로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어 경비대가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고 독도에서 미군 폭격기 폭격 사건이 일어나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하자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관리가 시작하였다.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국은 등대 및 감시초를 설치하고 우편을 발간하는 등 독도 영유를 위한 경비를 강화하였다.

현재 독도연구는 독도영유권 강화연구에 치중한 면이 많지만 영유권 강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근거 자료 확보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발표는 해방후 한·일·미의 복잡한 국제적 정치상황 속에서 한·일간의 독도분쟁을 신문이나 1차 자료를 인용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독도를 영유하기까지의 과정을 발생, 대립, 영유 확립 과정을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발생 시기.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의 폭력과 탐욕으로 취득한 지역에서 축출한다’고 규정, 무조건 항복한 일본과 1945년 포츠담 선언을 체결하였다. 연합국최고사령관은 1946년 1월 SCAPIN 677호를 통해 통치상, 행정상 분리하는 영역에서 독도를 일본영역에서 배제하였고 1945년 맥아더라인 설정(SCAPIN-1033호)에서 일본 어선들의 독도접근을 금지하였다. 1948년 대일강화조약 초안과 영토 규정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 열거되자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시작되었다.

1947년 6월 20일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에 살고 있는 일본어민이 독도가 자신의 어장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울릉도 어선에 기총사격을 하였고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연합국에 배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1947년 수색위원회를 조직해 대규모 학술조사단을 파견하였고 미군 독도폭격 훈련으로 독도어민이 1948년 14명이 사망하고 최소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480여건의 보도가 발생, 독도어장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알려졌고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의 발

효를 앞두고 4월 25일 맥아더라인이 철폐되자 한국정부는 맥아더라인을 대체할 자구책으로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둘째, 대립 시기. 1953년 일본 시마네현 수산시험장 침범, 일본 경비선 상륙, 팻말 설치등으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시기이다. 한국 국방부는 해군을 파견하였고 국회는 독도침해 사건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1953년 7월 12일 총격사건, 1954년 5월 23일 일본의 무장 경비선 출몰, 24일정체 불명의 비행기가 나타나서 한국령 영토 표지를 향해 약 300발의 총탄을 쏘았다. 울릉도 주민은 일본인들의 침범에 항의해 1만 5천명이 도민결기대회를 열고 독도자위대를 결성하였다. 한국정부는 1954년에는 독도 등대를 가설하고 무선시설, 감시초를 설치하였다.

셋째, 영유 확립 시기. 1953년 한일 정부간 왕복외교문서가 교환되어 정부가 논쟁이 진행되었다. ‘왜 자국의 영토인가’에 대해 한일양국은 3~4번에 걸쳐 정부견해를 주고받았다. 이 논쟁에서 양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는데 한국은 ‘독도의 옛 명칭은 우산도이며 독도의 명칭은 독섬에서 유래한다’. ‘울릉도 어민은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였고 독도는 울릉도에서 가깝다’고 고유영토설을 주장하였다.

한국외교부는 1954년 9월 24일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을 통해 한일간 독도 관련 사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독도를 일제 침략의 최초 희생물’,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국을 재침하려는 의도의 발로’라고 하였다.

〈몇 가지 질문〉

- (1) 머리말 ‘광복후 현재의 독도 관련 사항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도 있고 상이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상이한 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2) 독도의용수비대 설립 및 활동 시기는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20일까지 3년 8개월간 일본에 맞서 지킨 순수 민간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의 설립시기와 활동 사항등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당시 보도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록에는 수비대 설립이 1954년 4월~5월 사이로 보도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설립 시기와 활동 등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3) 제1차 미군 독도폭격사건은 울진에서 출발한 미역채취어민들이 대부분 희생되었다. 정부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난어민위령비를 건립하였다. 조난(선체의 파손이나 식량의 결핍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인하여 구조가 필요한 상태)위령비

가 건립되는 과정과 조난비로 명명된 이유를 알고 싶다.

- (4) 일본외무성은 대일강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이익을 포기한다”의 내용을 근거로 한국의 영토에서 독도에 대한 규정이 빠진 것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조약 체결직전 미국무성 딘러스크 차관보가 한국측에 독도는 일본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서신을 보냈기 때문이다. 지금 러스크서한은 비밀서한으로 미국측의 주장이며 이후 미국이 러스크 서한 내용을 부정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 러스크 서한과 관련된 20과 21주 내용에서 당시 한일양국은 러스크서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양국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여 백